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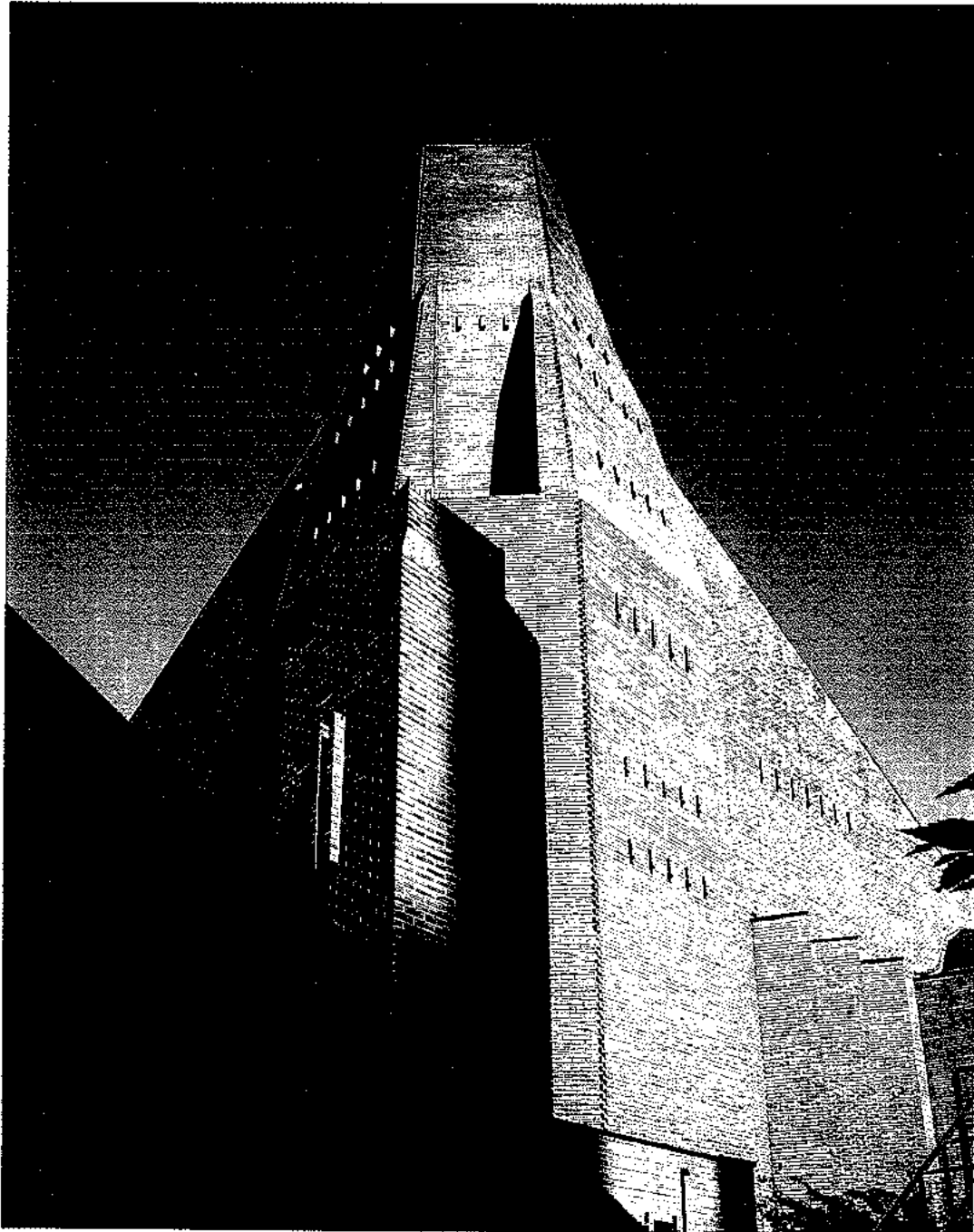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4월호
당권 288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사)라-28
196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1)급인가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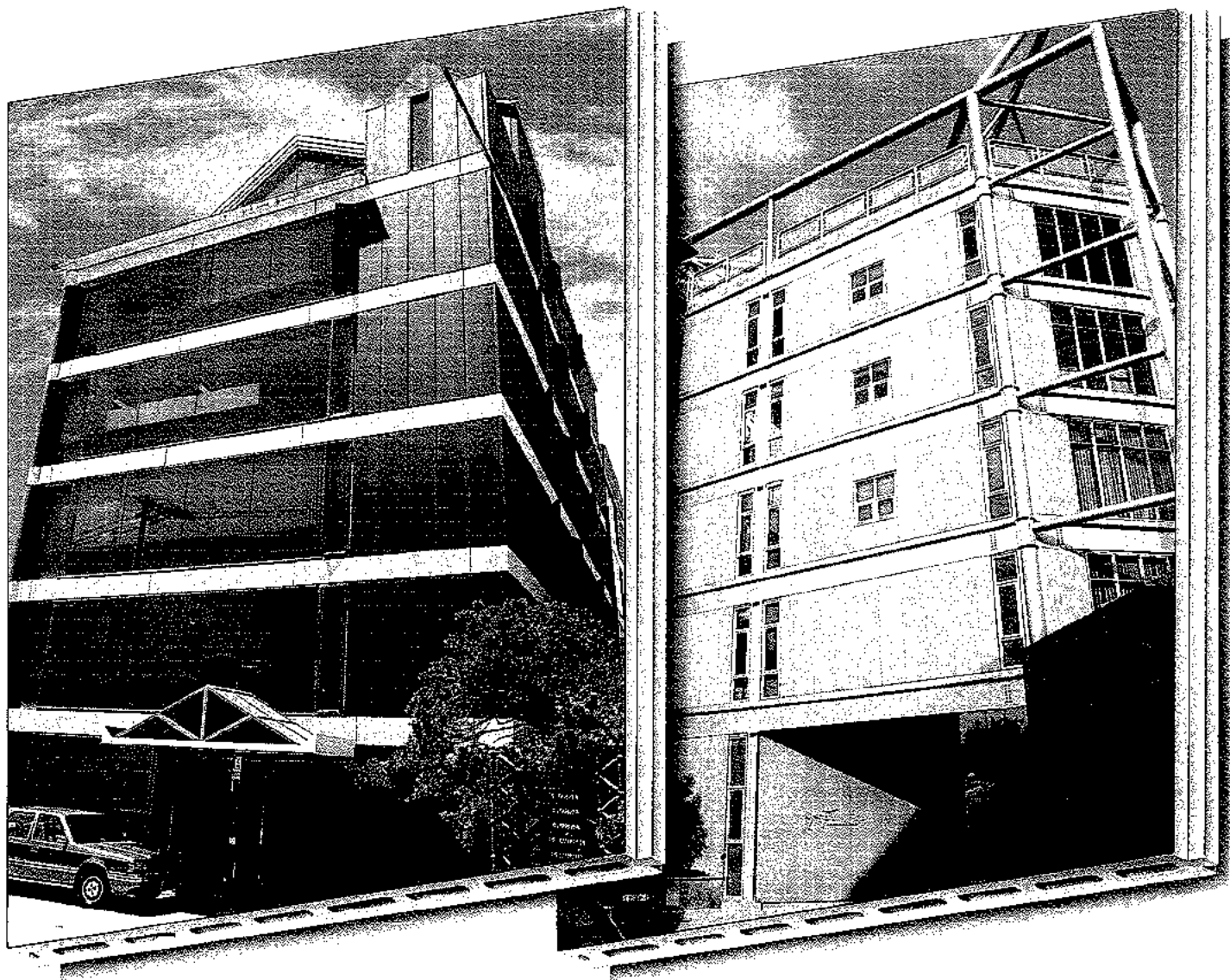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pril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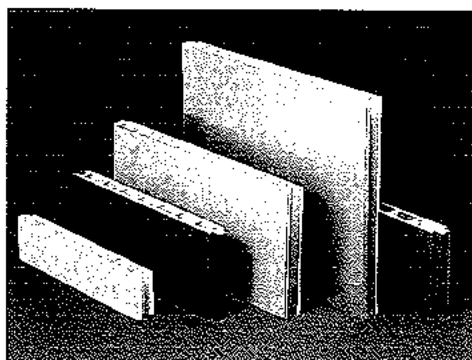


4

APRIL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움,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본워커힐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 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재동 신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 STAGE & STUDIO
-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 DESIGN & ENGINEERING
- ◆ MANUFACTURE
-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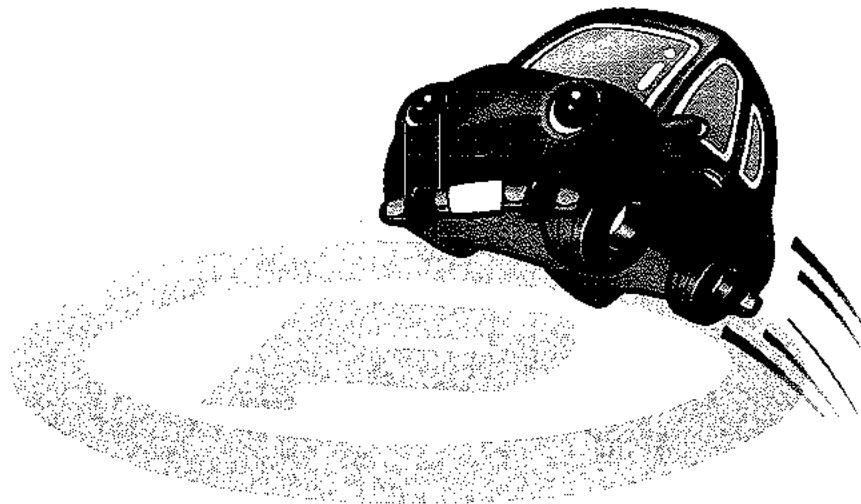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森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신속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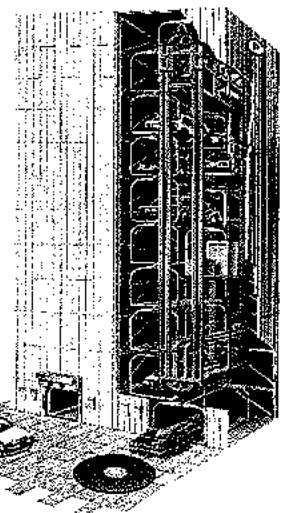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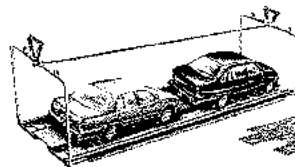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962년 설립된 이래로 국내 굴레를 뚫고 해외로 진출하여, 현재는 10여개국에 10여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62년 설립된 이래로 국내 굴레를 뚫고 해외로 진출하여, 현재는 10여개국에 10여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62년 설립된 이래로 국내 굴레를 뚫고 해외로 진출하여, 현재는 10여개국에 10여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중형'을 비롯하여, '대형중형', '대형중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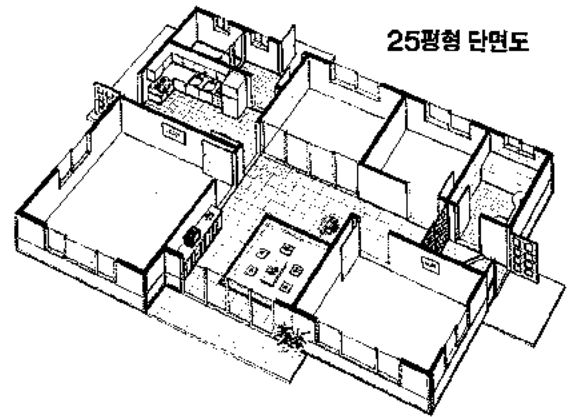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인슈그린하우스
INSU GREEN HOUSE

농촌의 주거공간 — 인슈 그린하우스가 바꿉니다.

힘든 논·밭일 끝내서면
높은 부엌 문지방 오르내리시면서 허리 한 번
펴보시지 못하시고 나이드신 고향의 어머니!
'내사, 고향이 좋다' 시는 어머니는 편리한 도시생활도
싫다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이제 그 푸르른 고향, 좋은 터전 위에 전원주택
인슈그린 하우스가 생깁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효성이 자극한 사람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집 —
인슈그린 하우스!



25평형 단면도

첨단 신 건축자재로 시공되는
인슈 그린하우스의 특징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인슈파넬 시스템과
다년간 축적된 연합인슈의 노하우로 실현되는 전원주택—
공정제작을 통한 품질 고급화, 시공 단순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건축공법에 비해 25~30% 저렴하게
시공됩니다.

탁월한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열소재 폴리우레탄 폼(PUR)과 1급
불연제 그라스울을 사용하는 전원주택—
구조성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방음, 방수, 방진 기능으로
부터 냉·난방비의 절감효과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택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능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로부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연합인슈,
대명건설—
에프터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고, 생활도 편해지니
퇴직후에 저도 여기서 살고 싶군요!"



"영농생활은 물론이고
집안일 하시기도 편하시겠어요!"



"화장실이 깨끗한 욕실과 함께 있어
이제 우리집처럼 편해요!"

20평형 전용면적 : 65.6㎡ (19.88평)

23평형 전용면적 : 76.2㎡ (23.1평)

25-A평형 전용면적 : 84.24㎡ (25.53평)

25-B평형 전용면적 : 81.69㎡ (24.76평)

한국의 전통 양식을 기초로하여
영농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됩니다.

욕실과 세면 시설이 주택 입구에 설치
되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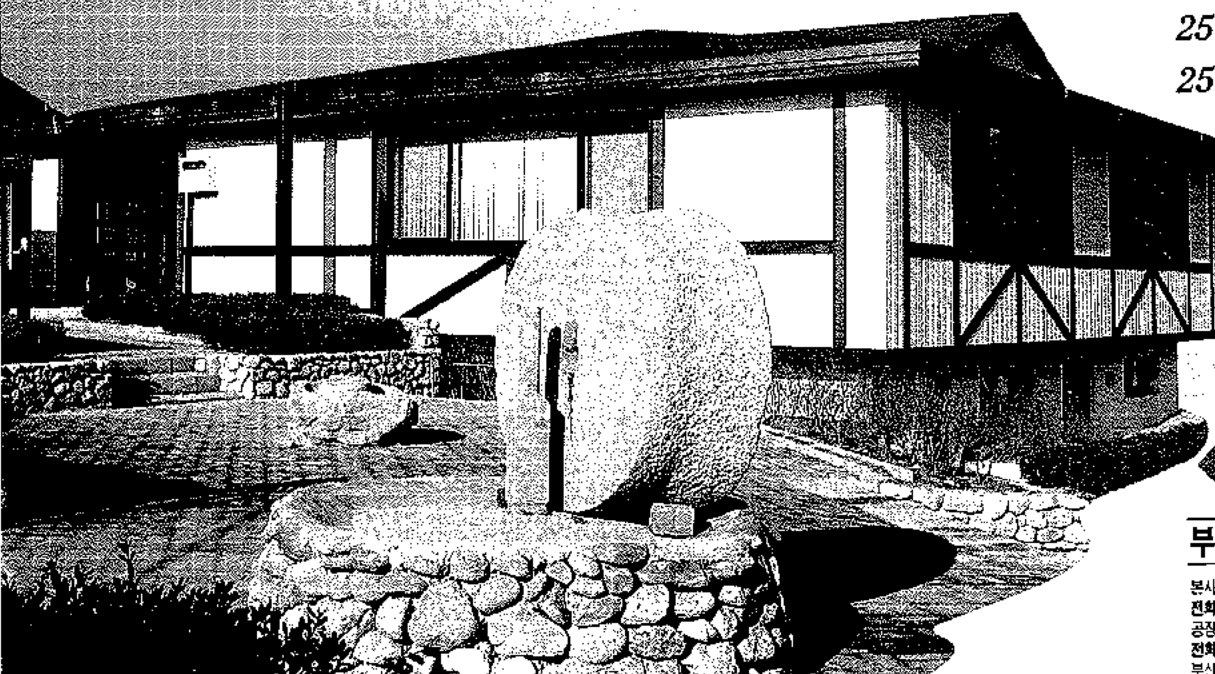
노부모님들을 위한 방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주식회사 대명건설

부 설 기 술 연 구 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전화 : (대) (02) 555-8891, FAX : 553-1651
공방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전화 : (02) 745-06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부산사무소 : (051) 816-7701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대구사무소 : (053) 86-2202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 작업 시간 단축

중산지구 아파트(1960세대, 780세대, 980세대)
실제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실제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 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매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 기둥)과 철골집합상세등

◎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경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 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상문화기능
원성현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인을 위한 건축전용 CAD S/W
과거 MAIN FRAME 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사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XENIX O/S 사용으로 MULTITASKING 가능
화면 MENU 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루시도등 완벽한 3-D 기능과
시간별 평원지원등으로 완벽한 운영 CHECK 기능 보유(일조권)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입력에 의한 기술누수방지
2D, 3D 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등 SYMBOL 지원
16만 팔라세움 및 신속한 팔라변화
컴퓨터에 의한 대교재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서통 이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 421-2856 • (주)빌리언시스템: 325-1023 •

건축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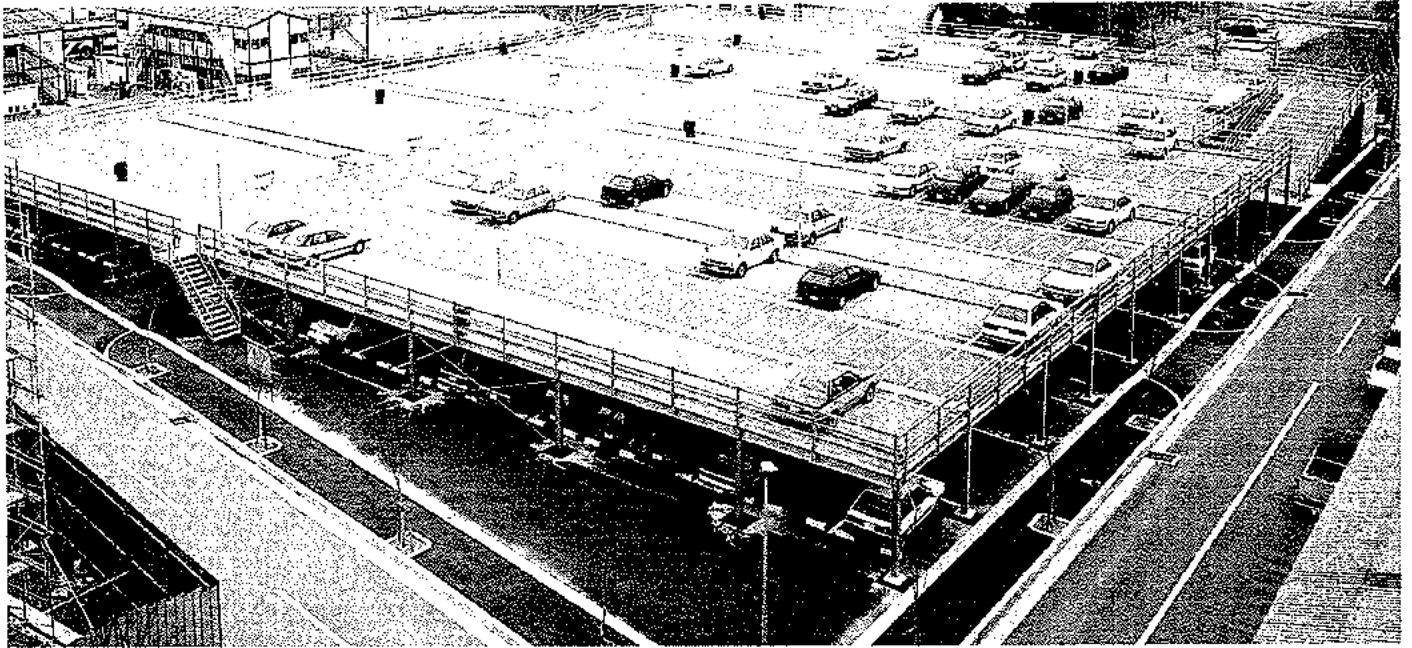


동국통상주식회사 (기전사업부)

(日本：明興金屬株式會社 기술제휴)

자주식입체주차장

한정된 土地를 유효하게 활용할수 있는 1층 2단식 입체주차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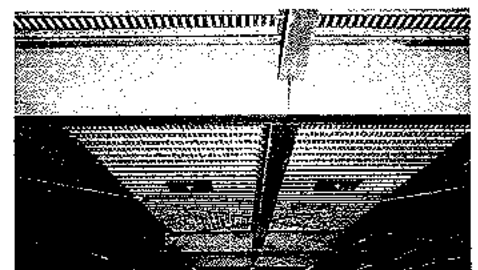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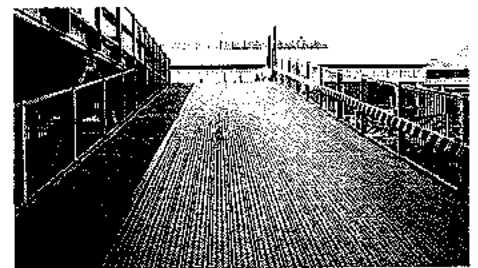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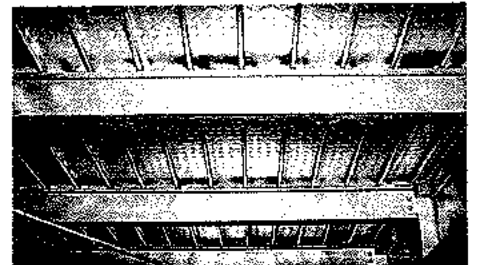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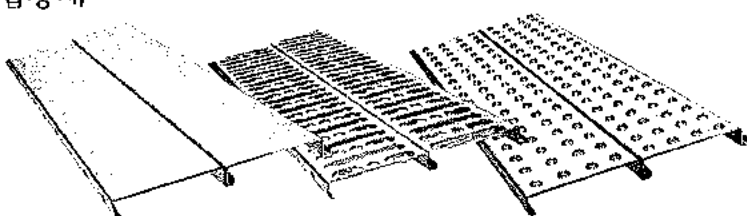
- 건설코스트 약 1/2로 최대의 효과
-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치 않음
- 용융도금으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미관이 수려함
- 주차가 간편하여 주차능력이 2 배이상
- 공작물로써 견뢰을 산정시 제외됨
- 어떠한 지형도 설계가능
- 100% 안전 및 완벽한 A/S보장

적용

- 백화점 ● 병원 ● 철도역 ● 공항 ● 아파트
- 오피스텔 ● 음식점 ● 기타 교통유발 예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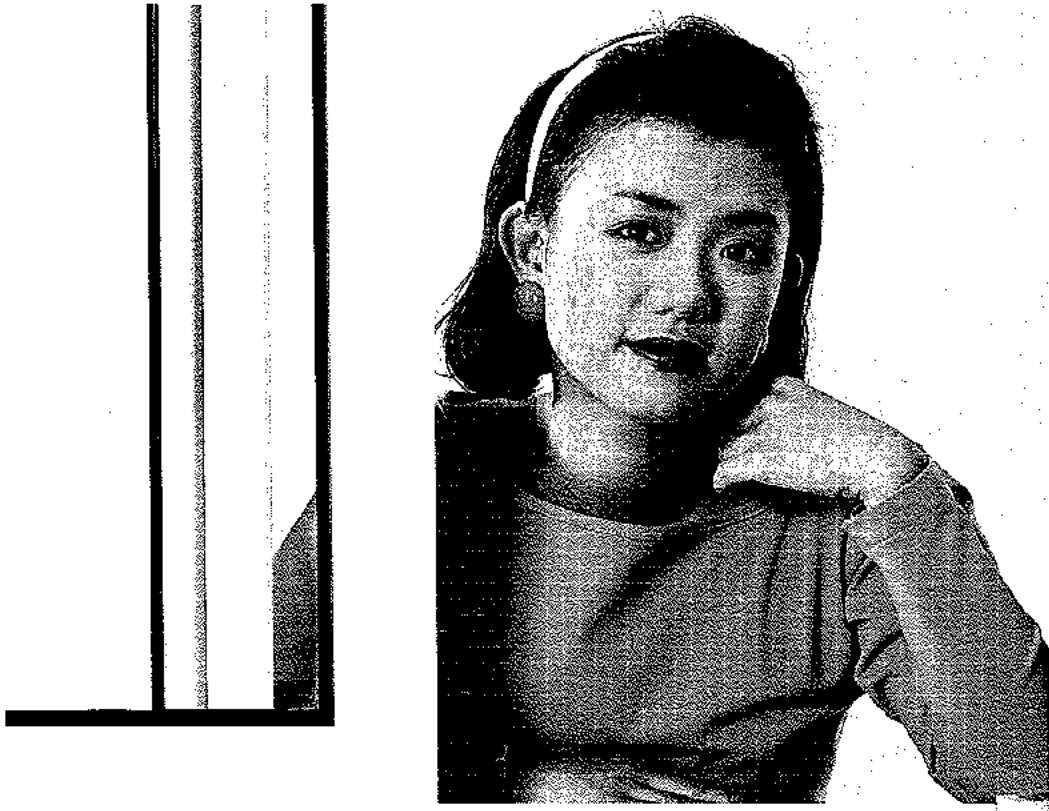
영업품목

- 자주식 주차장설계 · 시공 · A/S
- 주차장 바닥재 및 창고용 바닥재판매
- 건축용 DECK PLATE 판매
- 대형 H-BEAM 및 칼라C형강재
- 기타수입강재



동국통상기전사업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B/D 4층
 직통 (02)704-6507~9
 FAX. 719-4757



조립·설치가 간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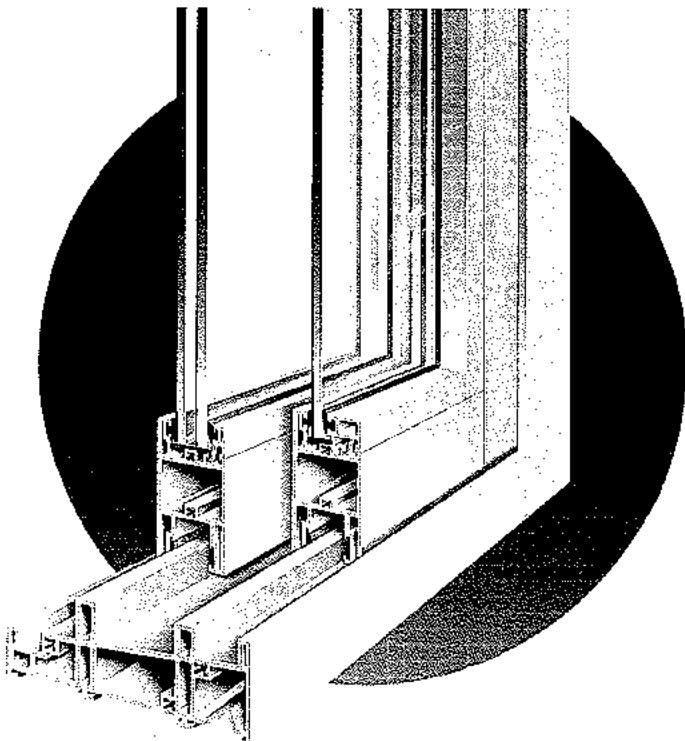
벽산크린샤시는 (주)벽산화성의 자체기술과 일본최초의 PVC SASH 제조사인 대신공업(주)와의 기술 제휴로 개발한 고품질의 창호재로서 기존 용접식 창호가 제작상 특성으로 구입, 설치가 곤란한 점을 완전개선한 조립식 창호로서 특별한 장비없이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하며, 단열성, 기밀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우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며 어느 지역, 어느곳에도 사용이 가능한 가장 진보된 창호입니다.

벽산크린샤시의 특성

- 방음효과가 큼니다. ■ 결로현상을 방지합니다.
- 개폐가 유연합니다. ■ 내한충격성이 우수합니다.
- 색상이 미려합니다. ■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단열·방음 조립식 플라스틱 창문

벽산 크린샤시



귀사개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증

본인들은 품질경영연구소
기관인원집사소에서보증함.

한국화학시험검사소
TEL 634-0034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후램 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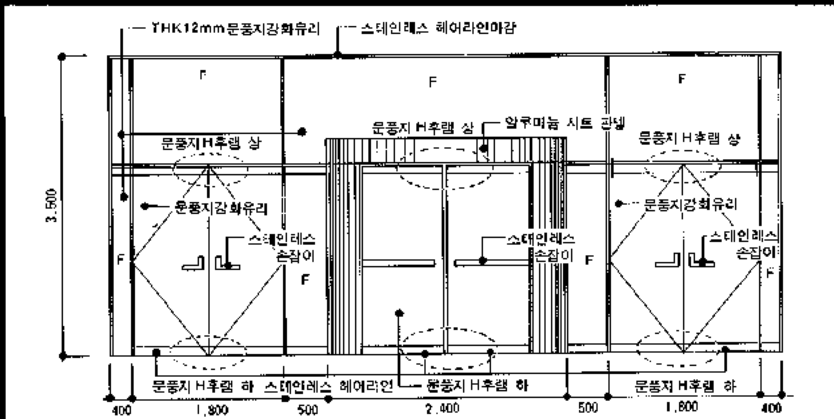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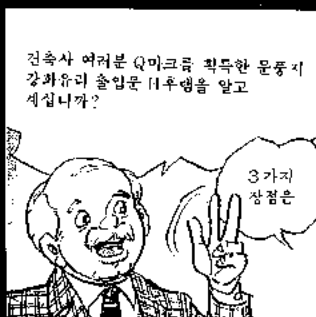


방풍 설치

- 냉·온방열차단
- 방진음
- 방수명반영구적

(예)

스테인레스 스틸 여닫이로 Fix



**“문풍지 H후램
은 열손실
100% 보장”**

← B제품은 여기에서
열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성 광 산업

본사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TEL : (051) 302-1100 ~ 2
FAX :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포여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 (02) 574-9 3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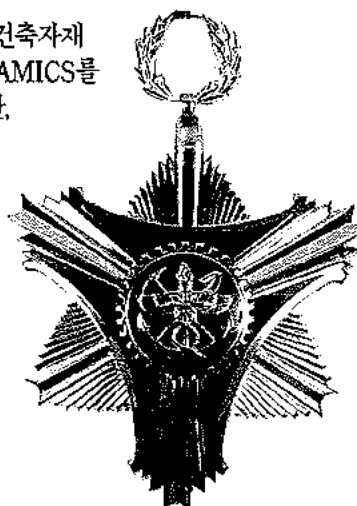


시거츠 내이장재 결석 BIO-HAPPY STONE—

기적처럼 그 기승과 면세로 치국이 문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제품 제조전문업체로 국가 중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 해온지 30년—
'91년 우수KS업체대상수상에 이어 '92년 제 18회 전국 품질관리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 수준의 각종 염기성 내화물, 국내 최초의 신건축자재
소결석 BIO-HAPPY STONE, 신소재 FINE CERAMICS를
고려청자를 빚는 장인정신으로 최고급 제품을 생산,
21세기 최고기업으로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2년 은탑산업훈장수상

BIO-HAPPY STONE의 3가지 지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9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운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9가지 색상 외 주문생산 가능)

2. 뛰어난 가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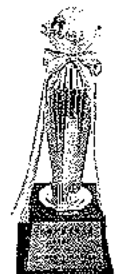
1,200℃이상에서 소결(微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선택의 다양함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600mm×25,
600×900mm×25로 언제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창조합니다.



'92년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은상수상



'91년 우수KS업체 대상수상



'91년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동상수상

BIO-HAPPY STONE 직판장 및 전국 각 대리점

본사 : 전제사업부 TEL(0562)81-2051~3 / 서울지판장 TEL(02)516-7772~4 FAX 516-7775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 육산실업 : TEL(02)540-1637~9
FAX 540-1640 / 대구지역 : 삼호특수 : TEL(053)755-9994, 742-1576 FAX 751-5884, 우성상사 : TEL(053)582-5750~1 FAX 582-5751 / 광주지역 :
성신금속(주) : TEL(062)524-7151~3 FAX 524-7154, (주)창원건설 : TEL(062)222-1224, 265-9008 FAX 265-1951 / 울산지역 : 삼화상사 :
(0522)43-7068~9 FAX 43-7069 / 마산지역 : 중앙건설(0551)92-3335~6 FAX 55-5700 / 포항지역 : 동강상사 : TEL(0562)81-2220, 81-7482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차례/1993년 4월호 통권 제288호

칼럼	우리 건축계에도 첨단정치가 필요하다?/金鎮愛	14
특별기고	건축사법 개정시안 유감/申文燮	16
회원작품	잠실교회/禹時庸	18
	한국은행 포항지점/金基雄	24
	스포츠 시티/(주)정림건축	28
	전건축사옥/全在根	32
	슈페리어 빌딩/姜聲益	36
	동양공업 전문대학 도서관 및 연구동/尹泰雄	40
	석전장/金億孜	44
	논현동 한우리 빌라/宋光燮	48
개혁작품	천주교 오금동교회/朴在煥	52
스케치	대구 N-빌딩/承孝相	54
특집	분당 신도시 주택 설계 전시회	
	분당 신도시 건설과 주택 전람회의 의의/安建燦	57
	신주거 문화의 시금석/朴研心	61
	「한국의 주거문화 1994」에 대하여/金仁喆	67
기 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李昌男	74
현상설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76
	한국통신 전주정보통신센터	84
	한국통신 제주전화국	87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90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개정령	10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개정령	108
통 계	1993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0
협회소식		112

發行人:李永熙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員長:朴昌浩

委員: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億孜, 姜建熙

編輯·取材 出版事業部 / 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大韓建築士協會

住所: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170

電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錄: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李鳳秀/正文社

Publisher: Lee, Young-He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Park, Chang-Ho

Member: Kim, Moon-Kyu/Kim, In-Cheol

Oh, Won-Keun/Kim, Sang-Kyeong/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l(Cheong 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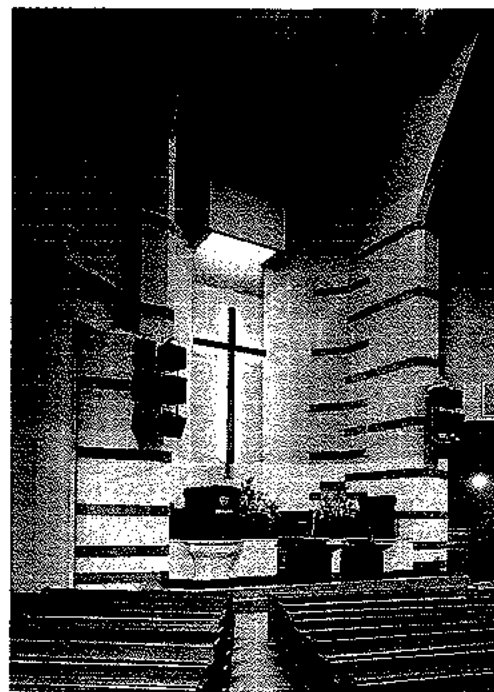
建 築 士



4

표지사진: 잠실교회
(설계/우시용)

COLUMN	What we need in the Architecture Profession is HI-POLITICS! / Kim, Jin-Ai	14
FEATURE	Regrettableness of the Architects Law Revised Bill Plan / Shin, Moon-Sub	16
WORKS	Jamshil Presbyterian Church / Wooh, Shi-Yong	18
	Pohang Branch of the Bank of Korea / Kim, Ki-Woong	24
	Sports City / Junglim Architecture & Engineers	28
	Jön's Architectural House / Jön, Jae-Gün	32
	Superior Building / Kang, Sung-Ik	36
	Dong Yang Technical College Library and Research Building / Yun, Tae-Woong	40
	Seok Chun Jang / Kim, Kyung-Ja	44
	Nonhyeon—Dong Hanuri Villa / Song, Kwang-Sub	48
PROCESS WORKS	Ohgum—dong Catholic Church / Park, Jae-Hwan	52
SKETCH	Taegu N's Building / Seung, Hchloh-Sang	54
ISSUE	Boon dang New Town Housing Design Exhibition Significance of Boondang New Town Housing Exhibition / An, Kun-Hyuk	57
	A Touch of New Housing Culture / Park, Yeon-Shim	61
	Korean Housing Culture in 1994 / Kim, In-Cheurl	67
FEATURE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 Lee, Chang-Nam	74
COMPETITION	Kyeongbu Rapid-Transit Railroad Cheonan Station	76
	Korea Telecom Cheonju Information Center	84
	Korea Telecom Cheju Telephone Office	87
LAW'S & OR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90
STATISTICS		110
KIRA NEWS		11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시조구서초동 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희동 169-25, 333-6411 ·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 81, 634-2143 · 강동분회 / 강동구성내동 317-4, 484-6840 ·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 상동분회 / 상동구구미동 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선동 101-7, 923-6313 · 종로분회 / 종로구수정동 46-18, 735-0905 · 마포분회 / 마포구상암동 275-1, 336-5057 ·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 중구부도2가 49-11, 279-1415 ·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가 129-22, 712-7647 ·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 1623-1, 586-7707 · 은평분회 / 은평구녹번동 79-32, 352-6720 ·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 206-6, 815-3026 ·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 1049-79, 992-8076 ·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 1027-9, 646-7172 · 중랑분회 / 중랑구면목동 166-46, 923-6123 · 성북분회 / 성북구삼선5가 410, 923-4401 · 구로분회 / 구로구구로동 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 진구 법천동 847-18, 28(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백어동 371-8, (053)753-6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 558-1, (032) 437-3381~4(FAX) 437-3385 (한국종합빌딩 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동 694-10, (062)521-0025~6(FAX) 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동구대충동 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7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7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 523-5, (0343)49-2098 ·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664-1554 ·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미평동 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 / 의정부시의정동 182, (0361)2-1083 · 송탄분회 / 송탄시서정동 343-22, (0333)4-6153 · 고양분회 / 고양시관문동 38로 16로트, (0344)63-8902 · 구리분회 / 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 이천시이천읍죽리 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 광명시철산동 464-7, 682-2875 · 안산분회 / 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북동 39-5, (0361)54-2442 ·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 60-54, (0371)42-4287 · 강릉분회 / 강릉시상대동 6-14, (0391)2-2262 ·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 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 / 삼척시양양동 55-43, (0397)2-3106 ·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월1리 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3가 187-3, (0421)56-2752, 53-7342 · 충주분회 / 충주시영진동 673-1, (0441)847-3062 · 제천분회 / 제천시제천동 8-8, (0443)43-6253 ·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 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동구대충동 452-2, (042)256-4088 · 천안분회 / 천안시문화동 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0451)32-2755 ·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 703-1, (0463)2-2217 · 대천분회 / 대천시대천동 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동 635-5(대북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 / 이리시남동 1가 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 군산시산남동 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 남원시하정동 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회정동 783-23(추진회관) (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 1, (0631)43-3348 · 순천분회 / 순천시장전동 51-11(0661)33-2457 · 여수분회 / 여수시관문동 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 339-1, (053)742-8317~4 · 포항분회 / 포항시죽도동 43-8, (0562)44-6029 · 경주분회 / 경주시동원동 801-4, (0561)2-4710 · 구미분회 / 구미시송성동 34-3, (0546)51-1537~8 · 김천분회 / 김천시남산동 24-2, (0547)434-2541 ·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 157-4, (0571)54-5703 · 영주분회 / 영주시하방3동 341-12, (0572)33-9922 · 점촌분회 / 점촌시중앙동 280-3, (0561)53-6677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 36-7, (0582)32-5868 · 경산분회 / 경산시중앙동 859-5, (053)812-6721 · 달성분회 / 달성군화원읍내리 28-5, (053)634-6336 · 영천분회 / 영천시장광동 26-10, (0563)34-8258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73-47, (0551)46-4530~1 · 용산분회 / 용산시남구산정동 585-6, (0522)74-8836 · 진주분회 / 진주시본성동 7-20, (0561)41-6403 · 통영분회 / 통영시서호동 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 / 김해시부민동 611-1, (0525)35-5692 ·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 392-1, (0527)355-4848 · 가창분회 / 가창군가창읍중앙리 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 467-19, (0523)84-3450 · 거제분회 / 거제군신원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중앙동 91-6, (066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 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포동 290-6, (061)62-2233

우리 건축계에도 침단정치가 필요하다!

What we need in the Architecture Profession is HI—POLITICS!

金鎮愛/도시건축 PD, 서울포럼대표

Designed by Kim, Jin-Ai

정치, 좋은 정치, 침단정치

도대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사회생활이란 없다. 우리나라 특유의 덕목으로 치는 정치적 순수성이란 가실 순진함 내지는 위장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순수성(또는 명분) 밑에는 어감없이 필연적으로 실리성이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명분이 강조되면 실리는 숨어버리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 실리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분이란 물론 '실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실존이란 역시 생존보다 실제적 어필이 약하다. 그래서 순수함이 도덕적 덕목으로 요구되는 우리사회에서 실리찾기란 쉽게도 제2의 시장(市場)을 형성하게 되는 모양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명분과 실리의 고리를 맺어주는 기술이다. '좋은' 정치란 명분세우기도 살리고 실리찾기도 살리는 묘기이다. '침단정치'란 무엇일까? 혼탁한 정치와 순진한 정치로 물들여진 사회를 기기묘묘하게 뛰어넘게 하는 도(道)라 하면 어떨까?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결코 쉽지않은 이상을 이루려면 정치가 있어야 하고 좋은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난마와도 같이 얼킨 사회를 풀어 헤쳐나가는 침단정치가 있어야 한다. 순수함과 혼탁함이 미로와도 같이 얼켜있는 세태를 극복하는데 있어 어찌 신기에 가까운 도가 필요하지 않으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치열한 생존게임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필연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건축상황

그러면 우리 건축계는 어떠한가? 나라가 변하는 만큼 그 한부분을 점하는 건축산업 역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변화일까?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만큼 우리 건축계는 쇄신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건축산업의 상황변화는 타산업의 상황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쟁'이란 것이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상품을 팔아야 하는 타산업에 비해 피부에 와 닿는 급박감은 덜하지만 건축을 포함한 서비스산업계의 시장개방, 이에 따른 전면경쟁상황은 수년내에 진한 강도로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은 나라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냉혹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뚜렷한 지향목표를 내걸고 있는 반면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암중모색에 있다 하면, 우리 건축계는 어떨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쟁점으로 제기된 이년여전과 국제시장개방의 진행수준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이나 우리 건축계는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가고 있을 보다 복합적이고 시장도 다양한 산업계에서 어찌 그 내부에 여러 이익집단이 세분되지 않을 수 있으랴. 다만 문제삼을 것은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생산적이나 하는 것일 것이다. 소송적이거나 소비적인 갈등이 아니라 대승적이고 생산적인 갈등이 된다는 내분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음에...

문제소지는 여러 곳에 있다. 도대체 건축실무와 질을 결정하는 건축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은 놔두고 하필이면 왜 건축사법 개정과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이 결부되어야 하는지도 의아한 일이다. 건축사무소의 규모와 형태, 운영방식이 경쟁력 제고에 전혀 영향변수가 안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이 민간운영의 형태를 규정하고자 함은 아직도 전시대의 공급관리적 발상이며, 실타래처럼 엉킨 건축관련 법의 험한 내용에 대한 개선은 비켜둔 채 손쉬운 타깃을 겨냥하는 안일함이며, 엄정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키워야 진정한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단기적 대응방식이다.

건축계 내의 여러 이익집단들, 공공의 개입에 의한 제도변화에 명확한 이익을 예견하는 집단, 명확히 불이익을 예견하는 집단, 불확실성 속에 유보와 방관을 고수하는 집단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소구점을 찾는 것이냐 일 것이다.

소구점을 찾는 침단정치

그래서 우리 건축계는 침단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명분을 살리고 실리를 찾으려면서 소비적 갈등을 지양하고 현실적 제약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침단정치가...

명분은 분명하다.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이. 여기에 건축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건축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공히 공공, 민간 공유의 경제성 확보, 또한 건축기술혁신촉진을 통한 자율적 경쟁력 배양이 보태어 진다면 대외명분은 보다 실천적인 지향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리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건축계내 각 이익집단의 기득권 유지, 또는 기득권 선점욕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넓어진 만큼 정치의식도 변하는 협회, 소송적 이익집단의 취합단체가 아니라 대승적 이익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만들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협회, 공공부문에 대해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협회로서의 첨단상이 필요하다. 변화란 안정을 위협하지만 그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 도전을 우리 건축계 모두 의식하고 있는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는 냉정한 국제시장, 첨단정치란 이러한 도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건축계의 내적단합을 촉발하는 기회로 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

순진무구한 발상이며, 이익집단의 개별적 실리확보 욕구는 전제되어야 바깥하다. 다만 단기적인 실리확보 차원을 뛰어넘어 집합체로서의 건축계의 대국적인 실리확보 차원으로 분쟁을 승화시킬 수 있다면 명분에 합당한 실리찾기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건축계의 첨단정치란 명분에 대한 실천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실리에 대한 현실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소구점이란 다양한 명분과 다양한 실리를 각자 만족시키려 하는 절충적인 취합에서 찾아질 수 없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의 소구점이란 상황변화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발상의 대전환 필요성을 각기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

건축계의 첨단정치란 건축계의 내부적 갈등시각을 해방시켜 대사회적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일, 국내시장의 분할선점 시각을 지양하고 국제시장의 확대시각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 말하자면, 건축계 내부의 갈등을 극복할 만한 공동의 적(敵)을 만들어 화합의 소구점을 찾는다고 할까?

국제경쟁력의 실체란 ?

그 공동의 적, 또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공통쟁점은 역시 '국제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시장 견제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이권적 해석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엄정한 객관화단계로 도입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오직 우위만이 이기는 냉혹한 시장경쟁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더이상 존재치 않고 균형적 배분도 작용하지 않는 첨단시장으로의 도입이 그것이다. 철두철미한 경제는 리(利)가 지배하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지배하는 무서운 시장.

이러한 객관화된 시장, 경제논리가 철저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위를 결정하는 첨단 시장경쟁이기에 더욱 첨단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첨단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외교, 홍보, 네트워킹, 마케팅, 정보처리 등 첨단정치 감각이 가미된 고도의 기술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건축계, 건축정책부서 그리고 국가산업경제 정책부서는 건축산업의 고부가가치적 발전잠재력,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역시 총력전을 시사한다. 건축계 일각의 대표주자 보호육성이 아니라 건축산업 특유의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한 바탕위에 전개되는 '건축계' 육성, 건축사무소의 형식개선이 아니라 기존 건축실무관련법과 제도에서 건축기술혁신을 제약하는 공급관리적 요소를 과감하게 수요관리적 제도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릇갖추기가 아닌 내용갖추기를 추진하는 일, 건축기술혁신을 위해 공공부문이 공공으로서 주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 등...

또한 국제경쟁력의 실체가 계량적 기술우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 연계될 때 기술우위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의식도 필요하며, 어차피 개방될 국제시장에서 국내건축계의 맹목적인 보호가 아니라 세련된 방식의 보호가 홍보전략에 대한 건축산업이란 근본적으로 종합, 복합적인 성격이어서 더구나 첨단시장에서는 엔지니어링 설계기술력뿐 아니라 디자인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사실, 이들의 조인트 활동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국제시장을 예의 주목하여 국제적 건축네트워킹과 국제건축인사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공공지원도 필요하며, 국제시장의 마케팅이란 결코 한 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도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부분은 모조록 하나의 돌로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첨단시장의 생리를 전제한 첨단정치를 전개해야 한다. 민간부분의 시공기술력, 엔지니어링 기술력, 디자인 기술력, 프로그램 기획력, 마케팅 전략 구사능력이 상호연계되며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필요사안에 따라 국가적인 자본지원, 외교, 홍보를 유효적절하게 선택적으로 구사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협회는 공히 이익집단으로서 건축계의 명분과 실리의 고리를 이어주면서, 협회내부집단의 갈등요소를 숙지하고 명분을 구체화하는 민간첨단정치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넓어진 만큼 정치의식도 변하는 협회, 소송적 이익집단의 취합단체가 아니라 대승적 이익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만들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협회, 공공부문에 대해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협회로서의 첨단상이 필요하다.

변화란 안정을 위협하지만 그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 도전을 우리 건축계 모두 의식하고 있는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는 냉정한 국제시장, 첨단정치란 이러한 도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건축계의 내적단합을 촉발하는 기회로 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건축사법 개정시안 유감

Regrettableness of the Architects Law Revised Bill plan

申文燮/대명건축사사무소

by Shin, Moon-Sub

신한국 창조와 자율과 개방의 시대에 우리에게 밀려든 건축사법 개정시안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시안작성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고 몇몇 대형사무소의 건축사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것같다. 금번 제시된 시안에서도

건축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건축행정의 잡음과 마찰이 일소 될 수 있는 개선책 제시는 미흡한 것같다. 제시된 개정시안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줄견이나마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신한국 창조와 자율과 개방의 시대에 우리에게 밀려든 건축사법 개정시안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시안작성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고 몇몇 대형사무소의 건축사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것같다. 금번 제시된 시안에서도 건축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건축행정의 잡음과 마찰이 일소 될 수 있는 개선책 제시는 미흡한 것같다. 제시된 개정시안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줄견이나마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건축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원중의 하나가 사무소 형태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5장 제23조(등록)의 개정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건축사들이 요구했던 법개정의 방향은 단독과 종합사무소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사무소 형태를 단일구조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안 제5장 제23조(건축사무소 등록) 및 제23조 3(설계, 감리법인)에서는 건축사무소와 설계, 감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무소 형태는 아니다.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사무소 형태만의 차이로 업무의 차이를 두고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에 위배될 것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안의 제23조와 제 23조 3에 사무소등록 및 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사법이라는 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한 사무소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또 다른 형태의 사무소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무소의 차등을 의미한 것이며, 이를 음미해보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무소 영업의 구역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의 영업구역이 구별 되도록 유도하는 것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나만의 기우일까?

또 설계, 감리 법인 사무소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적 지사망을 통하여 대형 법인 사무소가 전국의 일(작품)을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법인 대표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건축 설계, 감리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돈많은 재벌에 종속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건축 설계, 감리 행위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학교에서 건축을 배울 때 들은 “건축은 종합예술이며, 창작 행위이다”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창조적 창작 활동을 자유로이 행하여야 할 건축사가 비건축인에게 고용되어 간섭을 받는다면 좋은 건축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으며 건축발전은 있겠는지?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의 탄생은 설계하는 건축가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어느 사무소의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축가 누구의 작품이라고 건축사에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한국건축사에 기록될만한 건축물의 설계도 초기에는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가 누가 설계하였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역사성을 띄게 되면서는 건축가 ○○○의

작품이라고 회자되게 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U.R에 의한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 사무소의 탄생을 유도하는 것 같으나 대형 사무소가 당국에서 유도 한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 사무소가 있게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이 아니고 일(작품)거리인 것이다. 일이 많고 크면 이를 소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사무소는 자연히 대형화 되는 것이 자유경제에서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며 억지로 의형상 대형 사무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그 사무소는 부실화되고 영세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 개정 당시 단독 사무소와 종합사무소의 이중구조 형태를 도입할 때도 당국에서는 사무소 대형화의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무소의 형태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 취지대로 대형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 건축사법 제23조는 사무소의 형태구분을 없애고 단일사무소 형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인 사무소는 현행과 같이 필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떨는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 하는 평가의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자격 취득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 이후 건축 행위에 따른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그 자격을 취소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자격취득한 후 갑자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격시험에 교양과 인격까지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시안 제11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서는 여러가지 자격 취소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제1항의 경우야 당연한 일이나 제2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형벌에 대하여는 해당 형벌판결당시 해당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기타의 조항들은 의무조항 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융통성을 확보하면서 자격의 취소가 아닌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자 관리를 위한 국가기술 자격법에서도 부정행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만의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는 임의조항으로 융통성을 주고 있으며,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업법 등 영업행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영업 주체인 법인의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가벼운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건축사법에서 자격 취소요건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타인의 재산을 나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서양인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나 동양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을 위한 재화가 되지 못하고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 커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축물이 건축되는 건축행위는 건축사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다. 자본가인 건축주,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 공사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공자 등 삼인의 공동 노력으로 한 건축물이 탄생된다. 개정시안 제 19조2항(손해배상책임)은 건축사는 설계, 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타법령(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에서는 행위자의 잘못에 대한 명문의 배상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건축물이 건축되는데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시키는 것은 시공자이다. 감리자는 행위자인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가 잘잘못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감리에 대한 잘잘못은 그 한계 설정이 참으로 애매하다.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을 사항들이 시공자의 불성실한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까지도 설계, 감리자가 져야 하는 것인지? 또다른 분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 즉 건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시공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을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부분적인 시공상태 등을 감리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닐는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기술자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 상주도록 한 것은 기술을 집약하여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에서 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오인도 미리 점검하여 건물의 근본적인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법에 시공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는 데도 분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처리되고 있으며, 설계의 잘못이나 감리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의 손해에 대하여도 민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사법에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축사간, 시공자와 건축사간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된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법 제 23조3항에서도 권한뿐 아니라 책임까지를 강조하고 있고 모든 건축사들은 자기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안 제 22조(설계도서의 신고) 제2항에서는 건축사 협회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 목적 또는 특수 지역의 설계에 대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부분적으로 심사할 수는 있으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심사를 하여야 하도록 한 것은 건축사를 불신하는 조항이며, 사법 제23조3항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서 검토는 불가피하게 행하게 되므로 이중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자칫 옥상옥의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건축사협회의 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사법 제34조(임원)의 규정은 80년대 초반부터 개정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4개의 직할사가 생기는 등

행정구역이 15개 시, 도로 변경되고 회원의 수도 80년 1,888명에서 93년 4,06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5~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를 가질 수도 있고 각 지역의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지 못하여 각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된다. 현재 협회 이사회 운영에서도 법이나 정관에도 없는 참여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금번 사법개정시 이사의 숫자를 늘려 각 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이사를 골고루 참여시키고 명실상부한 회원의 대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부회장 제도의 개선이다. 건축사 협회가 건축사들의 직능 단체인 관제로 행정력이 마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뛰어난 부회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비 상근 건축사 부회장이 필요하다.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 직능단체의 장을 비건축사가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의 검증을 위해서도 건축사 부회장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회장, 부회장의 취임을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시안을 바꾸었으면 한다. 회장의 취임 승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앞의 문제 말고도 많은 조항에서도 다소의 문제들이 발견된다. 시안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에서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주의에 따르지 않을 때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즉시"라는 시간이 얼마인지? 공사시정이 그렇게 즉시즉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공사중지 또는 계시공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아니되는지? 또 제25조(무등록 업무의 금지)에 단서는 왜 두었는지 사무소 등록(가입)을 하지 않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14조(응시자격)단서를 그대로 존속시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계속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기타 별칙 조항 등 많은 손질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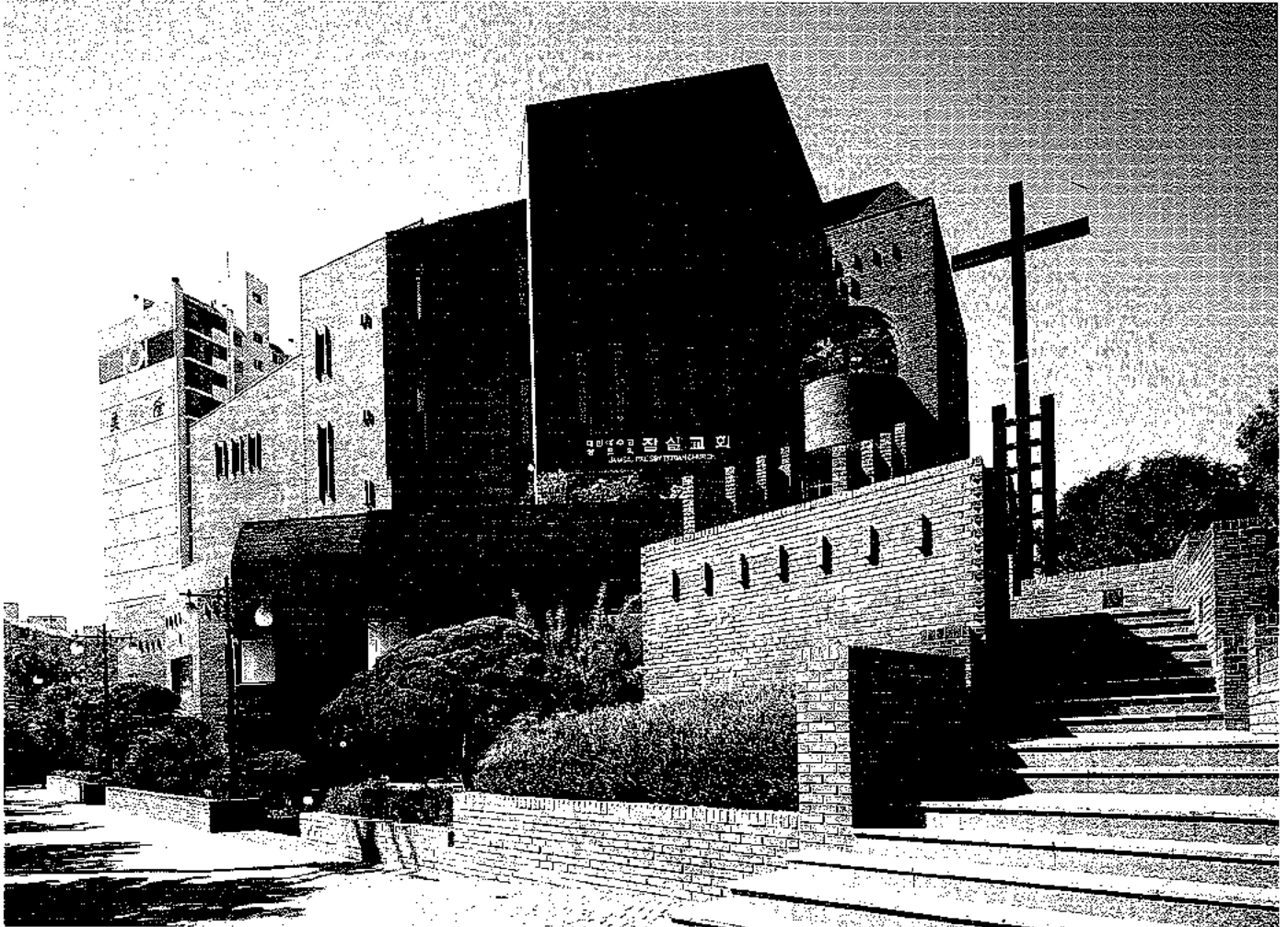
끝으로 제1조의 건축사법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만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니 뒷맛이 씁쓸함은 나만의 생각일까?

잠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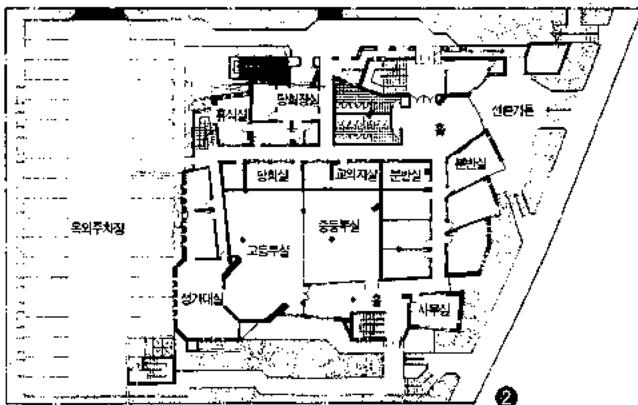
Jamshil Presbyterian Church

禹時庸/종합건축사 사무소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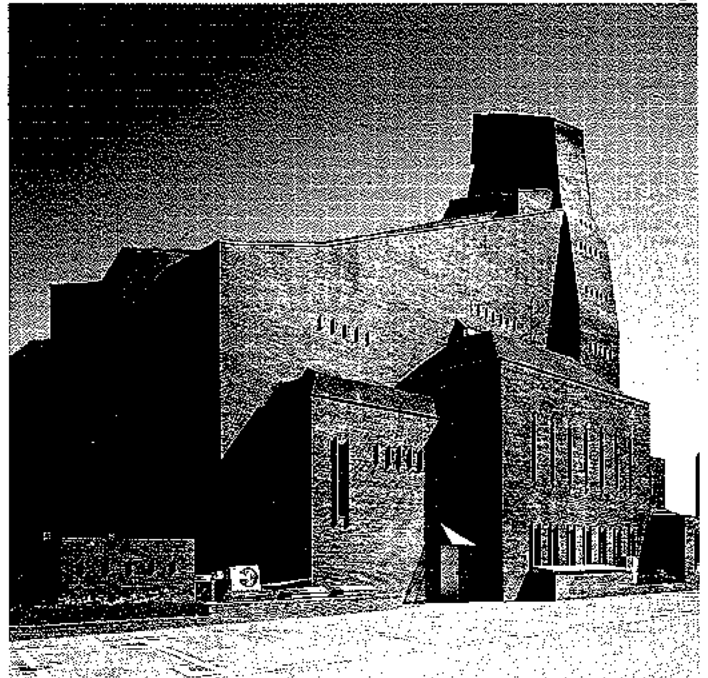
Designed by Woooh, Shi-Yong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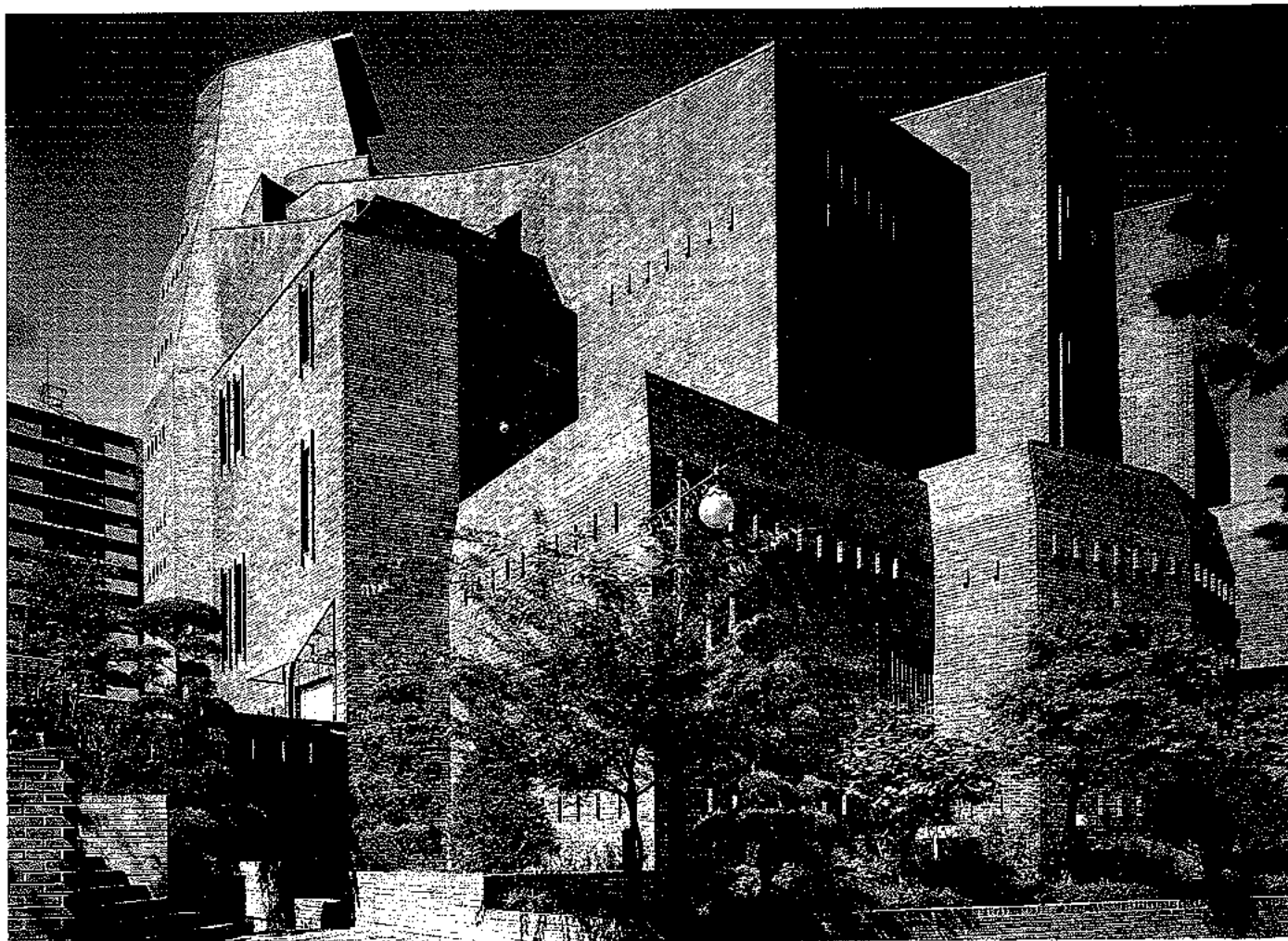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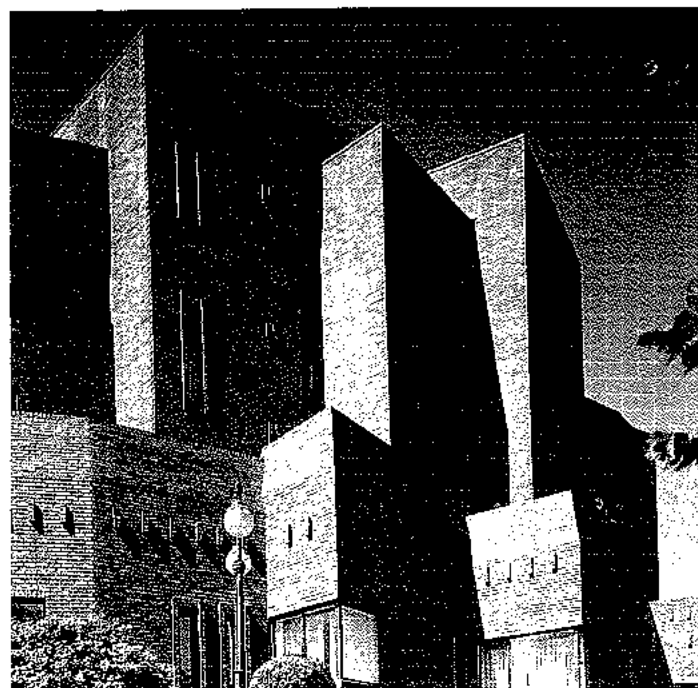
③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대지면적 / 3,584㎡
 건축면적 / 1,363.89㎡
 연면적 / 4,924.3㎡
 건폐율 / 3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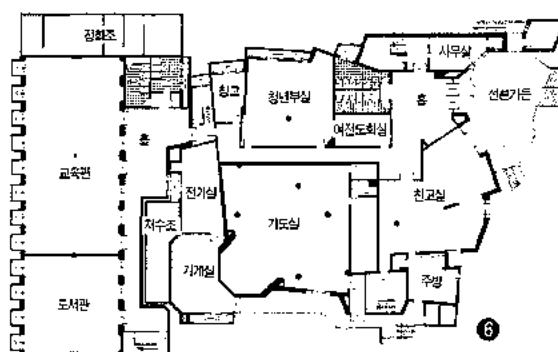
용적률 / 87.91%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붉은 벽돌, 칼라아스팔트 싱글, 화강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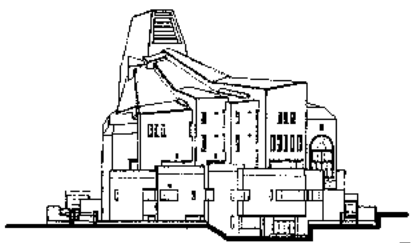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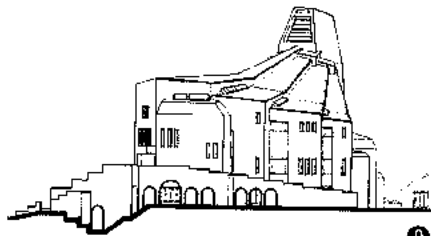
- ① 음악 전경
- ② 1층 평면도
- ③ 북측입면상세
- ④ 동측입면상세
- ⑤ 외벽상세
- ⑥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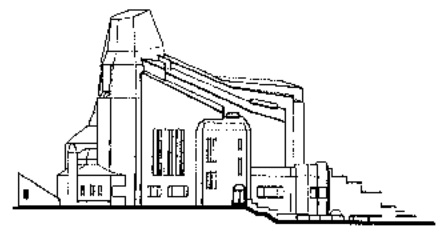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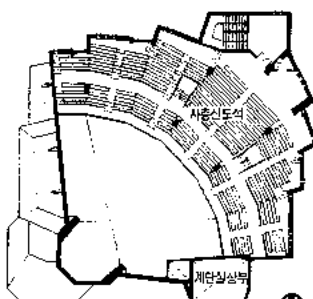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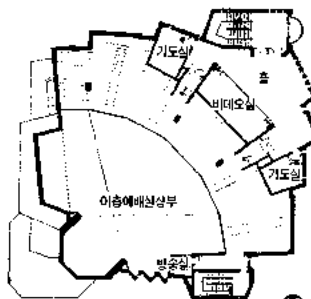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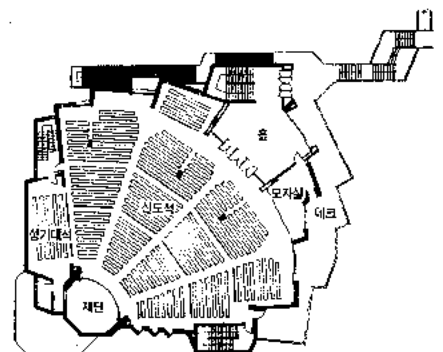
4F, 4층도 4th Floor Plan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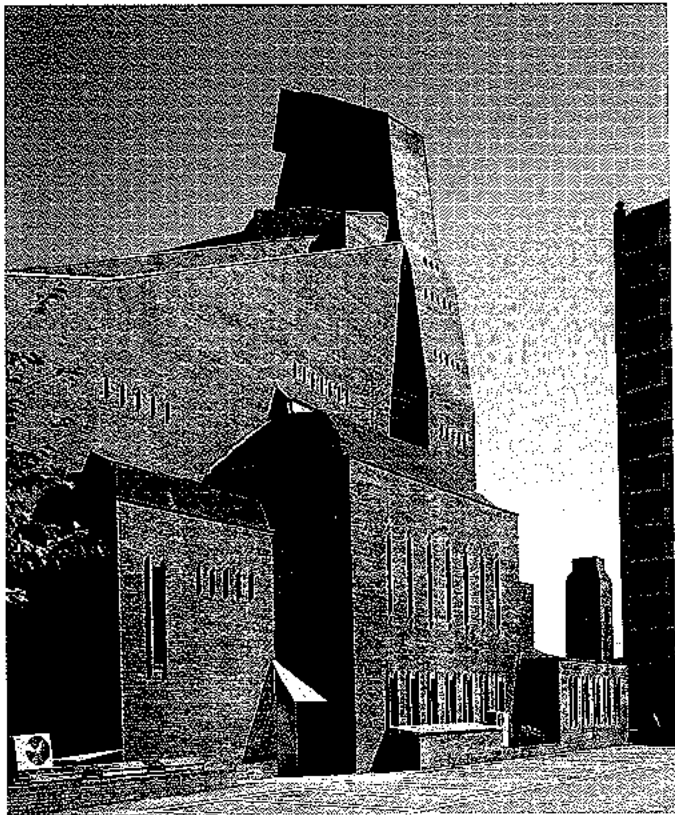
3F, 3층도 3rd Floor Pla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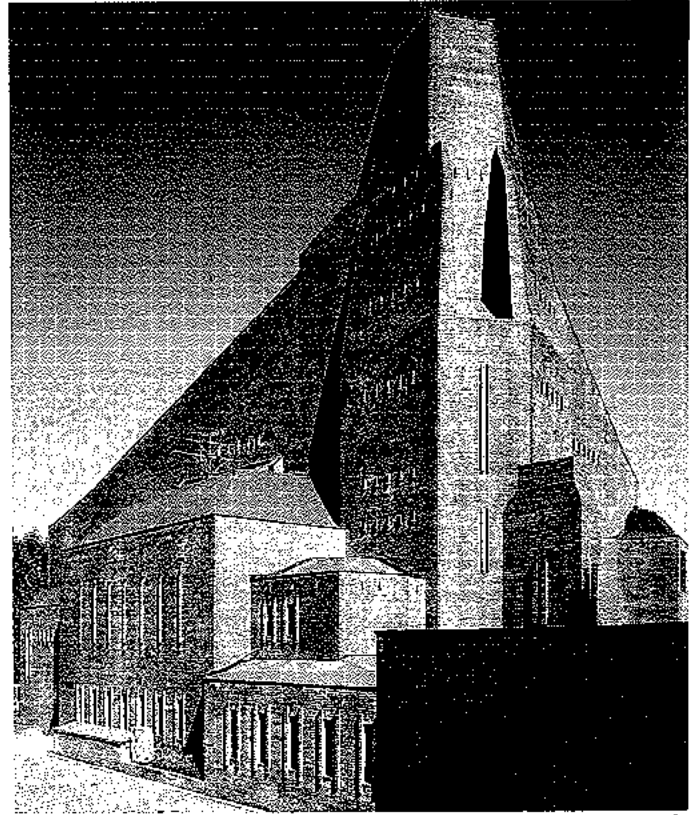


2F, 2층도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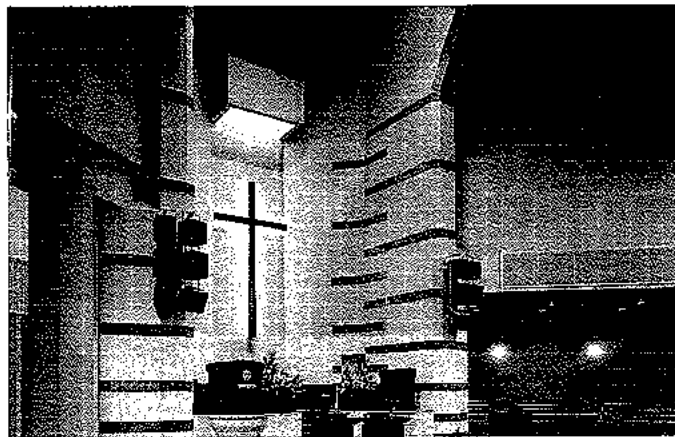
13



14



15



16



17

- ⑦ 제대측에서 본 예배당 내부전경
- ⑧ 동측 입면도
- ⑨ 북측 입면도
- ⑩ 남측 입면도
- ⑪ 4층 평면도
- ⑫ 3층 평면도
- ⑬ 2층 평면도
- ⑭ 북측입면 외벽상세
- ⑮ 배면전경
- ⑯ 제대측 내부전경
- ⑰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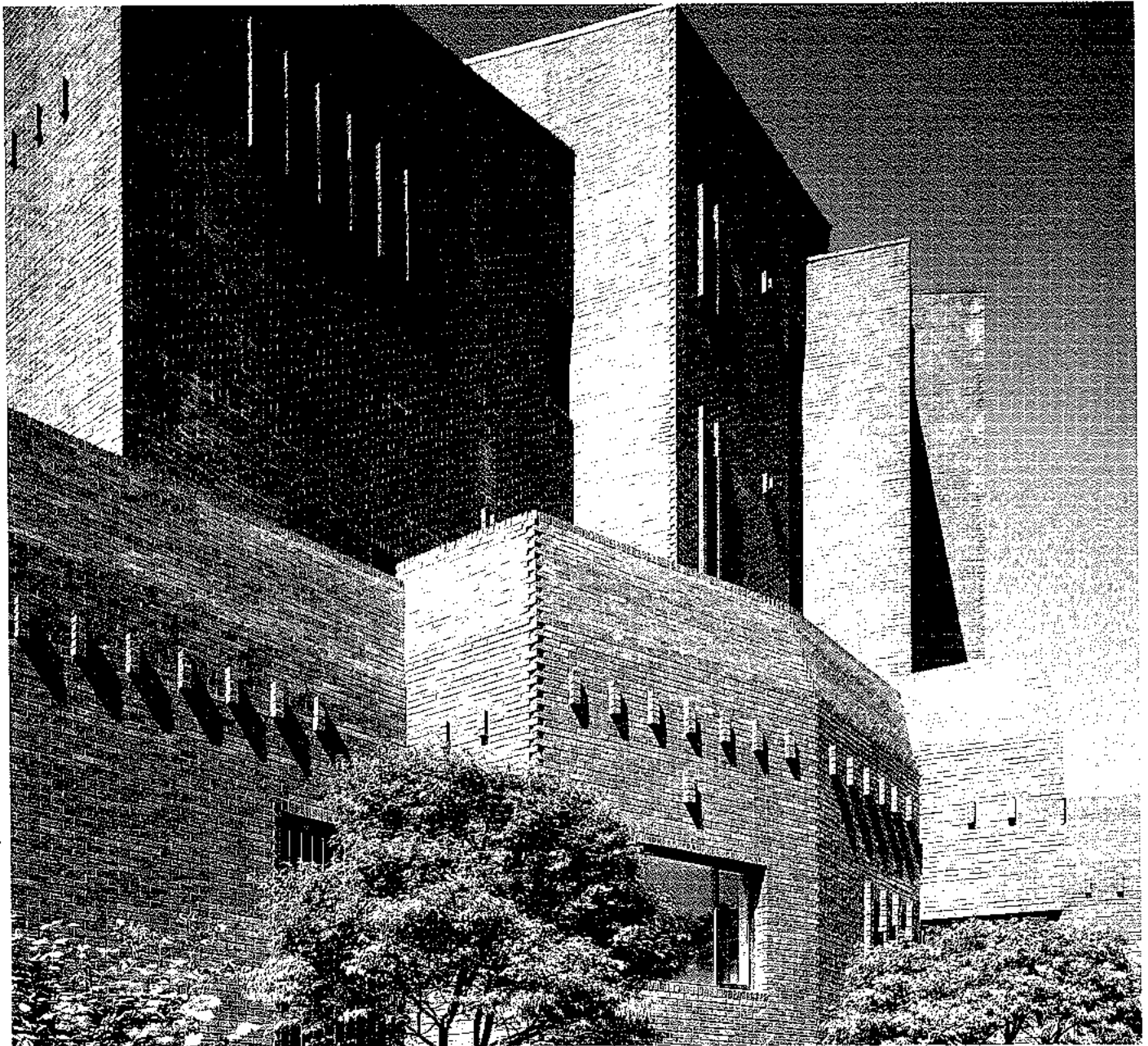
현대교회는 교회 교유의 예배기능 뿐만 아니라 친교기능, 그리고 신의 뜻에 따른 전도와 공익을 위한 사회적 기능의 종합으로 만들어 지는 모든 만남의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상승된다. 따라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기도하는 생활속에 부여해 주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의 시설로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종교가 갖는 전도와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는 환경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것은 종교건축 본연의 특성인 상징성 그 자체로 신도, 비신도를 가리지 않고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은 그 외형에 있어서나 내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한 위압감을 주는 크기 보다는 주위 환경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지는 30m 도로가 연결되는 정상에 위치하고 대지의 남서측은 고층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동측은 근린공원이, 북측은 민자당 연수원이 위치하여

도로에서의 대지에 대한 전망과 대지에서의 조망성은 아주 좋은 편이다. 건물의 배치시 건물을 30m 도로쪽으로 위치시켜 교회의 주 진입 공간을 두고, 아파트 단지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건축면적을 최소화함으로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능을 수용하고 또한 이들을 수용한 복합체로서의 표현으로 부정형의 벽과 서로 높이가 다른 경사 지붕, 도로 전면에서 1층 부분의 기단 처리 등으로 단일 매스로 처리할 때의 거대함과 단순함을 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내부 공간도 외부의 부정형의 벽과 지붕이 이루는 변화된 공간이 단조로움을 덜어 주고 있다. 전체적인 공간은 외부공간, 매개공간, 주공간으로 구분된다. 선린가든과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매개공간으로 하여, 자연의 선린가든을 통하여 지하층과 1층의 교육 및 친교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교회 건축물에서 본당의 출입구는 내부세계와 속세인 외부를 분리, 연결시켜 주는 곳으로서 단순한 계단이기 보다는 예배당을 올라가는 교인

들에게 한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신과 가까워 지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주요한 공간으로 보았다. 내적 기능으로 표현되는 요소들인 예배당, 교육, 친교의 기능들은 외부 조형에서 표현되도록 했으며 여러 기능들이 이루는 복합성을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의 진입층을 구분하고 이것을 전체 볼륨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친교의 부분은 예배당의 기단부로 안식되게끔 기능상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전통적인 장축형의 예배당 평면 형태는 구교나 신교에서나 모두 실제적이고 심리적으로 확실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세속화 이후 긴 회중석은 현대 교회에서는 부적합하며, 특히 교회가 대형화 되어가는 현실에서는 정방형과 중앙 집중형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흐름에 따라 잠실교회의 예배공간은 강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의 2층 구조로서 강단 상부의 채광창을 축으로 부채꼴의 평면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설교 중심의 개신교에서 성직자와 신도가 하나가 되는 신앙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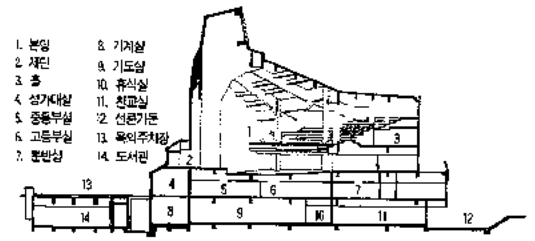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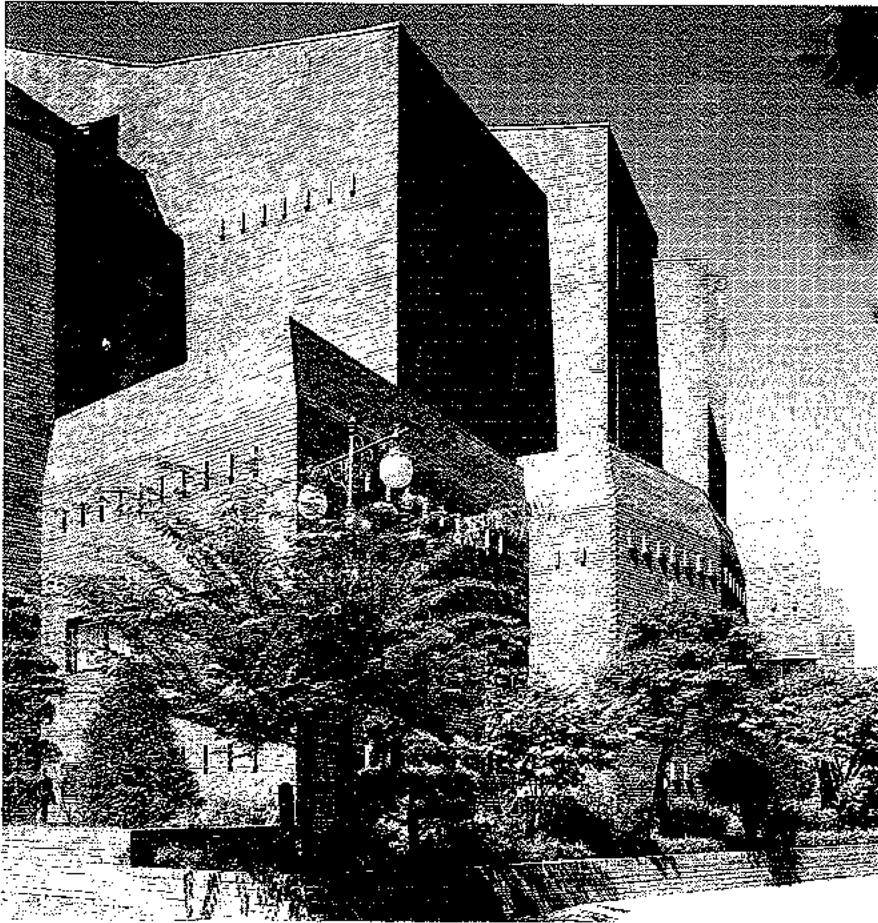
18

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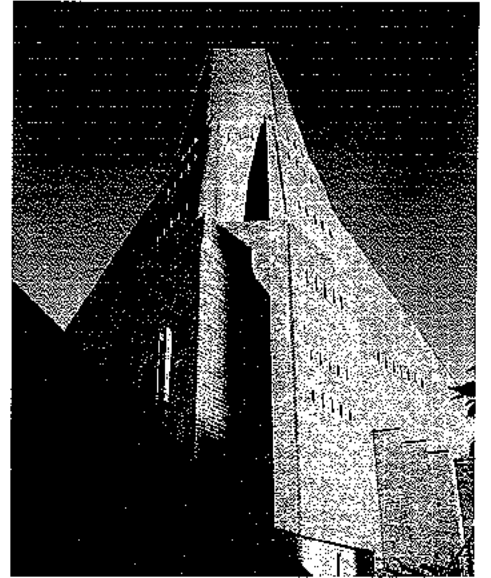
강단에서 이루는 각 축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하여 회중석에서 바라보는 내부공간에 변화를 주고 또한 지붕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체가 강단 상부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예배당 내부 공간의 변화있는 공간감과 공간의 상승감을 높여주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소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성스러운 교회의 분위기를 깨는 지나친 개방도 적합하지 못하나 주일에만 이용되는 교회 공간이 아닌 평일에도 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짐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친교 및 교육의 기능이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 독서실, 유치원 등 각종 모임과 대화의 장소로서 쓰이도록 시도하여 공간의 생명력을 살려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성과 그 존재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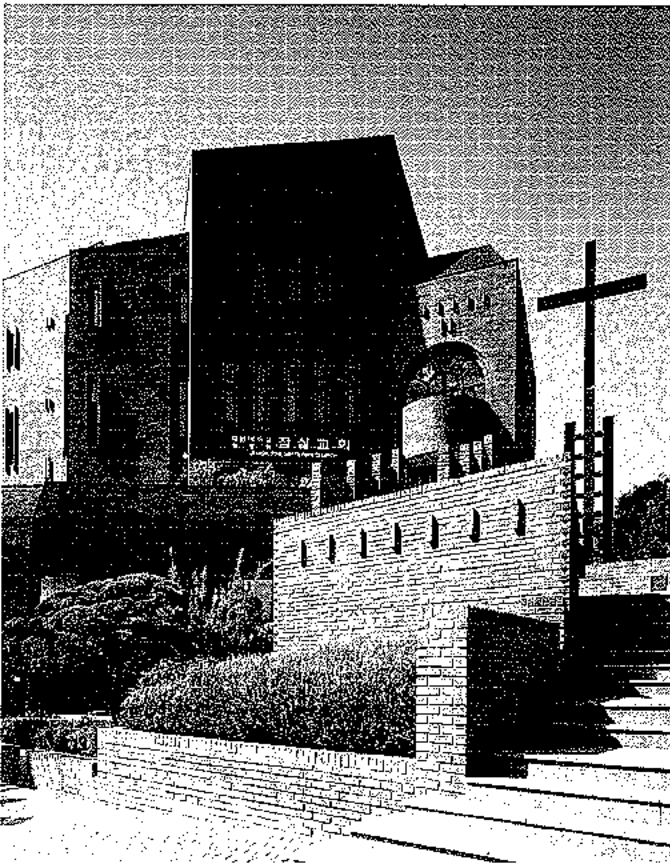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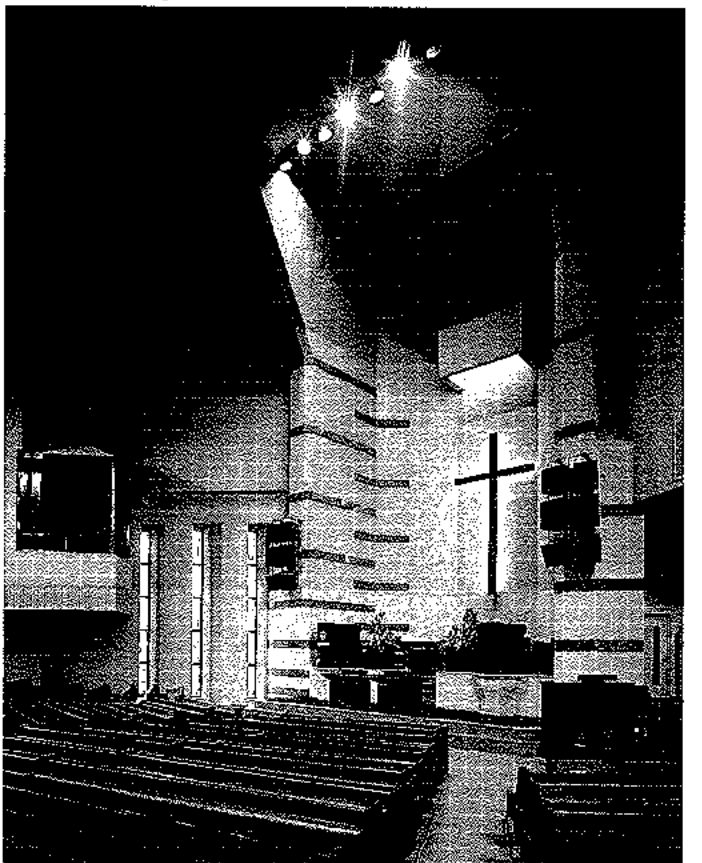
21



22



23



24

- 16 외벽디테일
- 19 전면 주출입구측 외부상세
- 20 외부상세
- 21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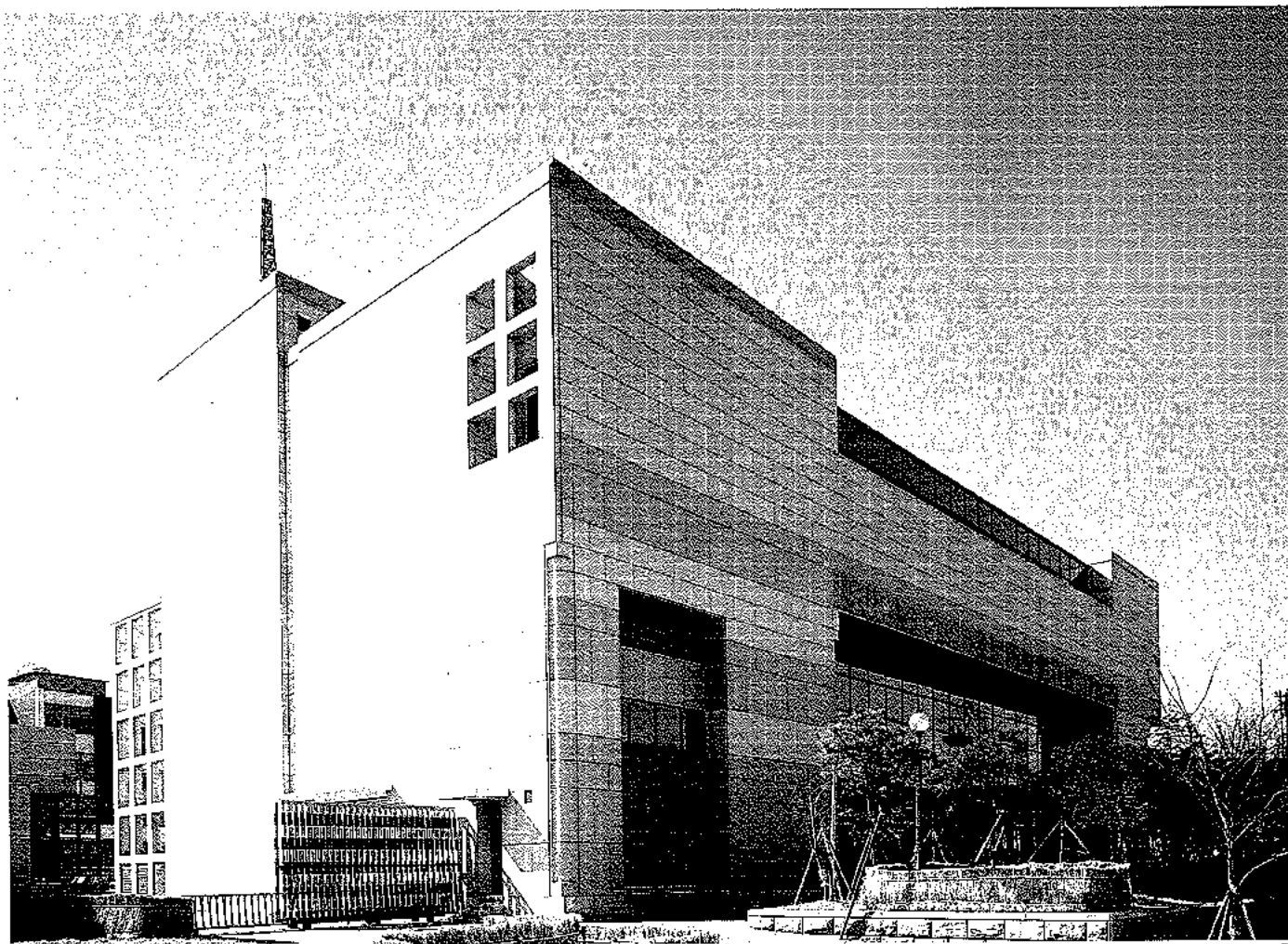
- 22 외벽디테일
- 23 전면 진입부
- 24 예배당에서 본 제대측전경

한국은행 포항지점

Pohang Branch of the Bank of Korea

金基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esigned by Kim, Ki-Woong



①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죽도동 643-1

지역·지구 / 상업지역, 미관지구

대지면적 / 7,391.7㎡

건축면적 / 1,744.42㎡

연면적 / 6,21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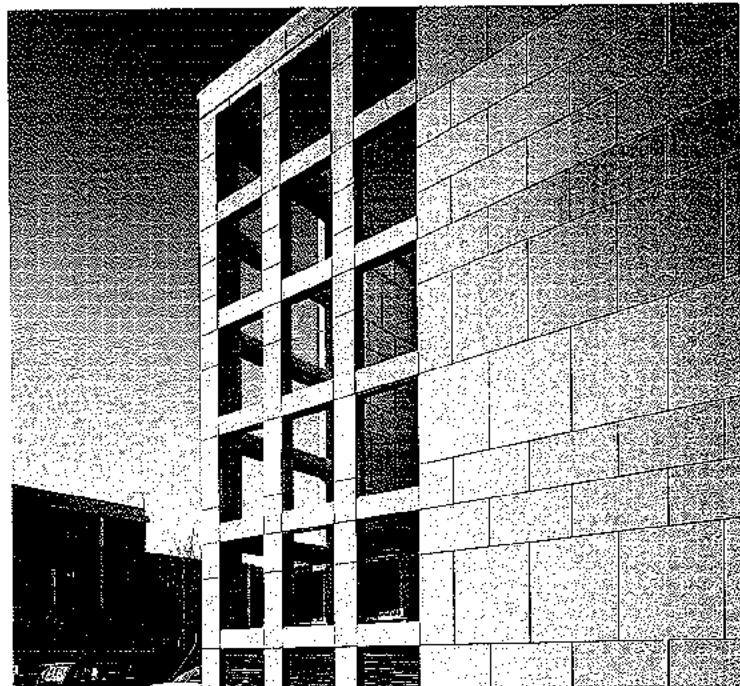
건폐율 / 23.6%

용적률 / 54.16%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3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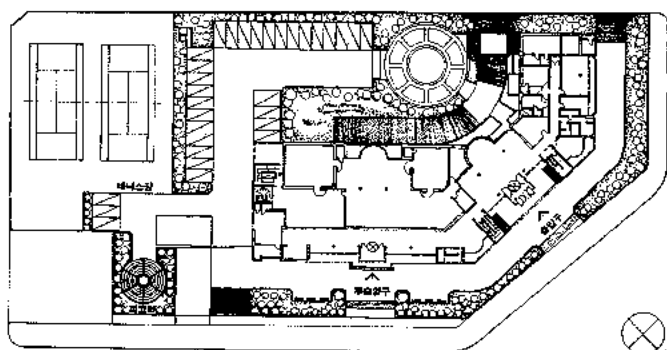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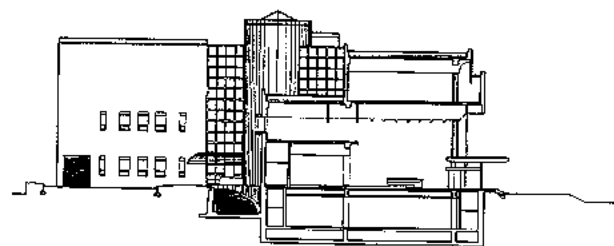
- ① 측면에서 본 전경
- ② 외벽디테일
- ③ 배면상세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⑤ 단면도
- ⑥ 정면도
- ⑦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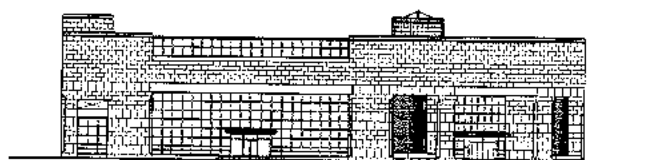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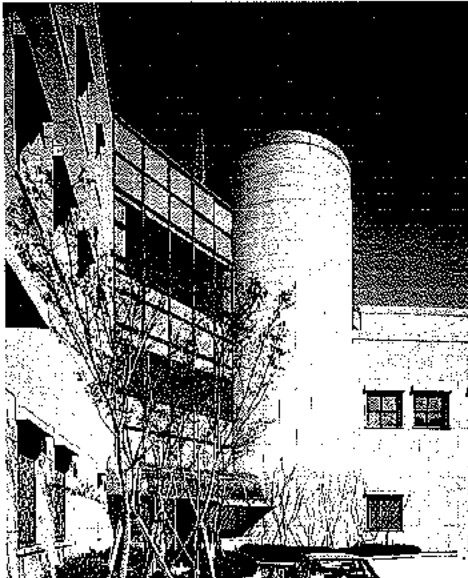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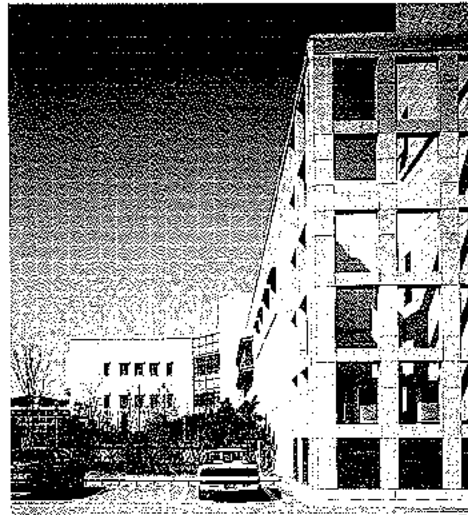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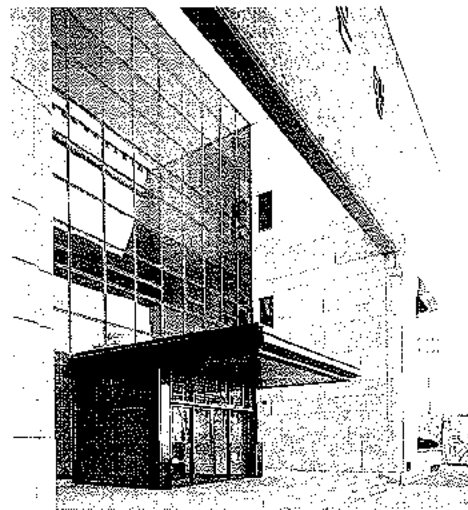
7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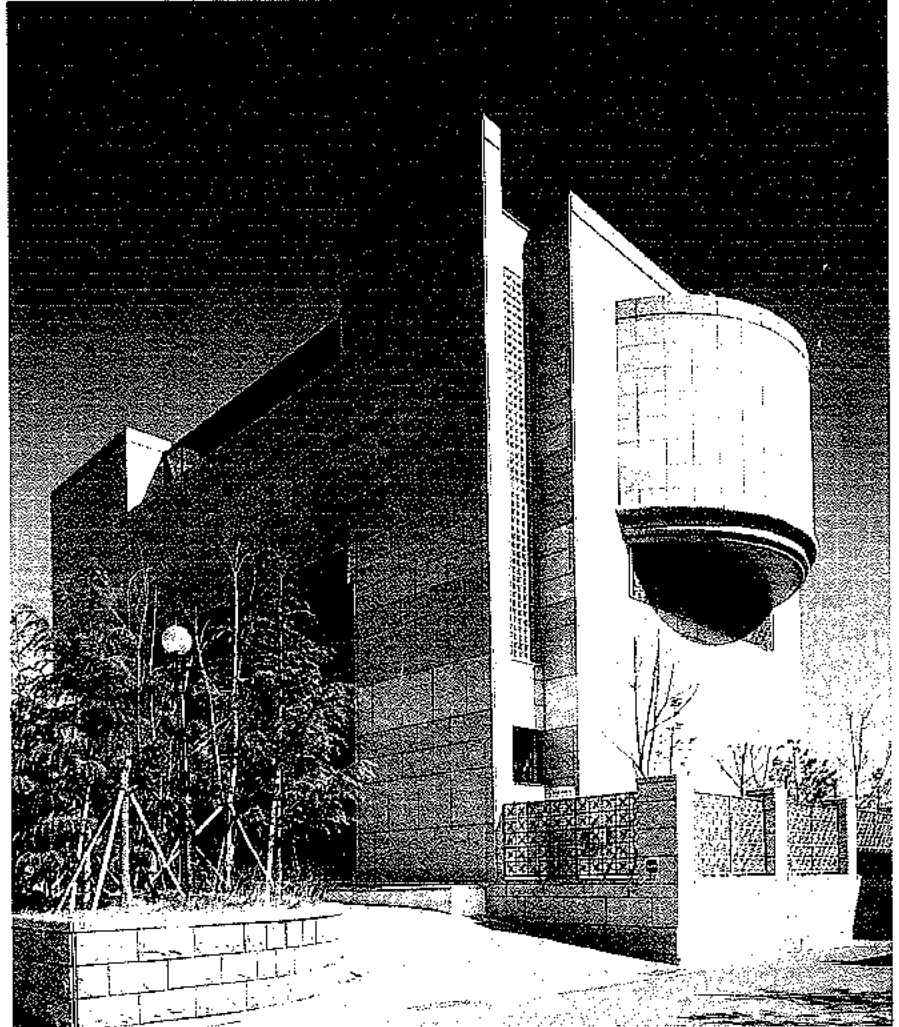


⑨



⑩

- ⑧ 후면상세 I
- ⑨ 후면상세 II
- ⑩ 주차입구측 상세
- ⑪ 도로진입로에서 본 전경
- ⑫ 로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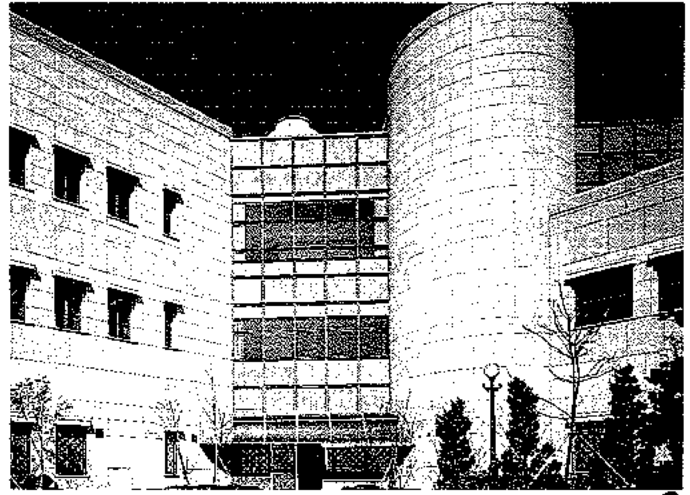
⑪



⑫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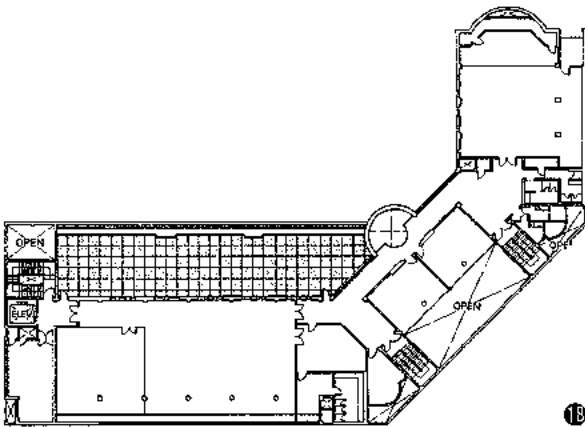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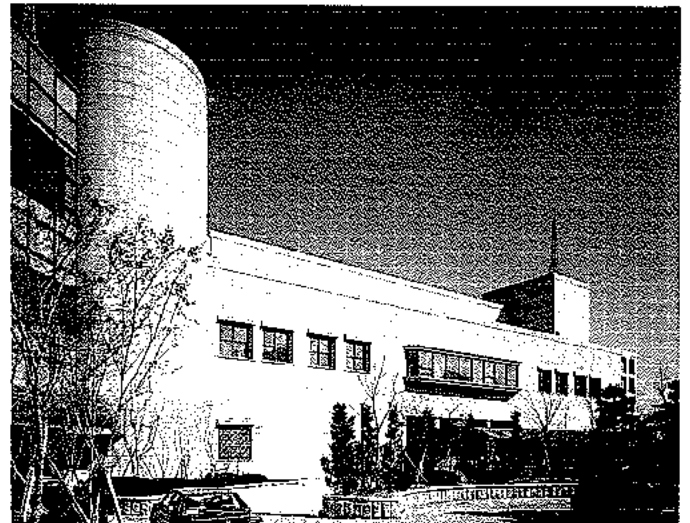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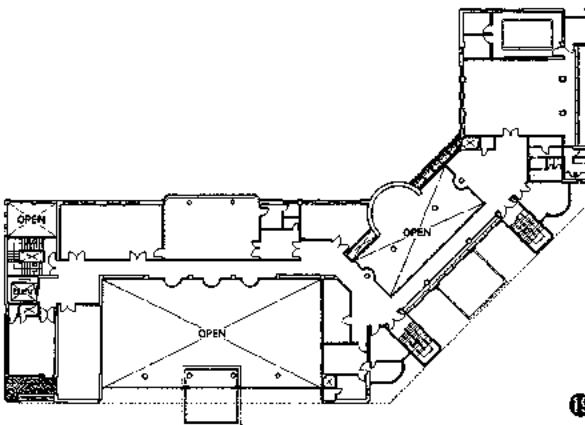
16



18



17



19

- ⑬ 배면측 주차장에서 본 전경
- ⑭ 배면측 외벽디테일 I
- ⑮ 영업장 내부전경
- ⑯ 2층 복도에서 본 로비
- ⑰ 배면외벽디테일 II
- ⑱ 3층 평면도
- ⑲ 2층 평면도

회원작품

WORKS

스포츠 시티

Sports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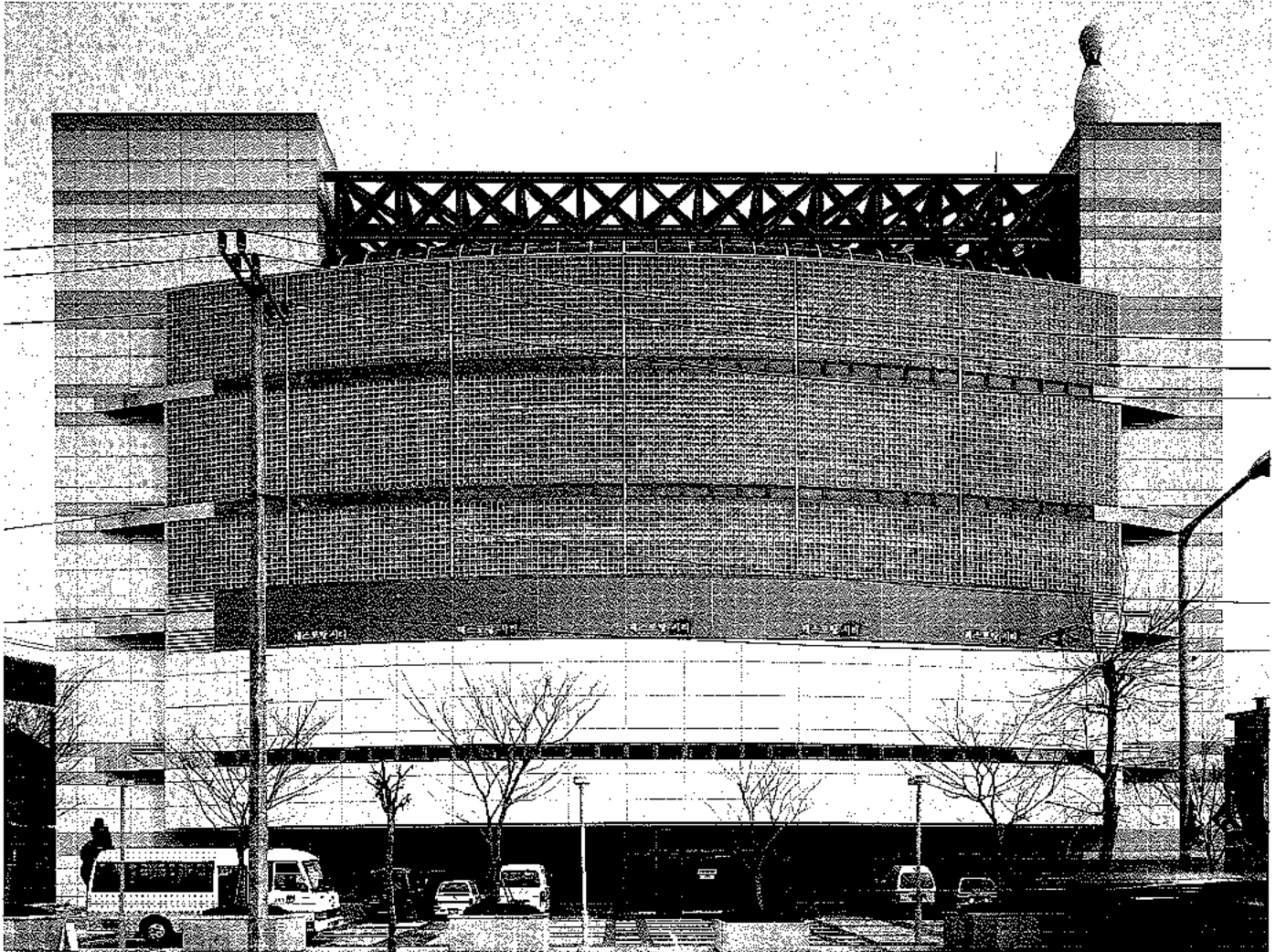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대지면적 / 2,480㎡
 건축면적 / 1,225㎡
 연면적 / 12,400㎡
 규모 / 지하 3층, 지상 6층, 옥탑 1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복합 알루미늄 쉬트+측판 질라코팅
 유리블럭

- ① 전경
- ② 전면전경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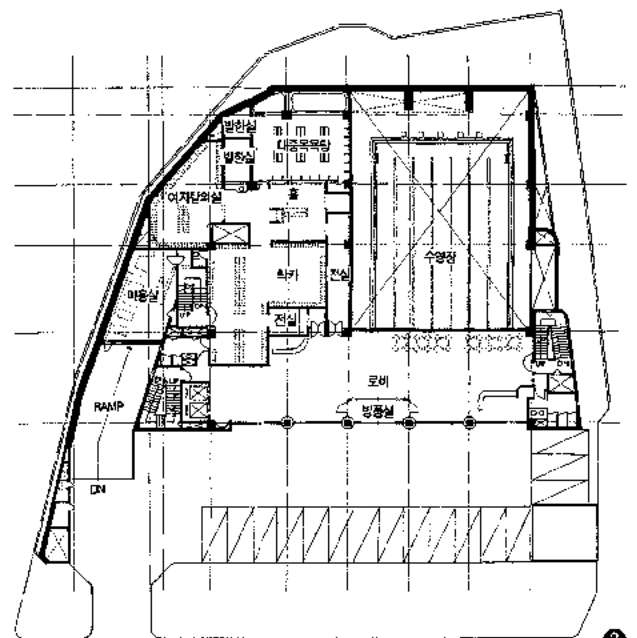


②

계속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욕구와 변화되는 기호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Sports City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맞춰 기존 Sport Center와는 달리 기능의 만족과 아울러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한 표현하여 도시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성별 동선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함과 아울러 내, 외부의 합리적 동선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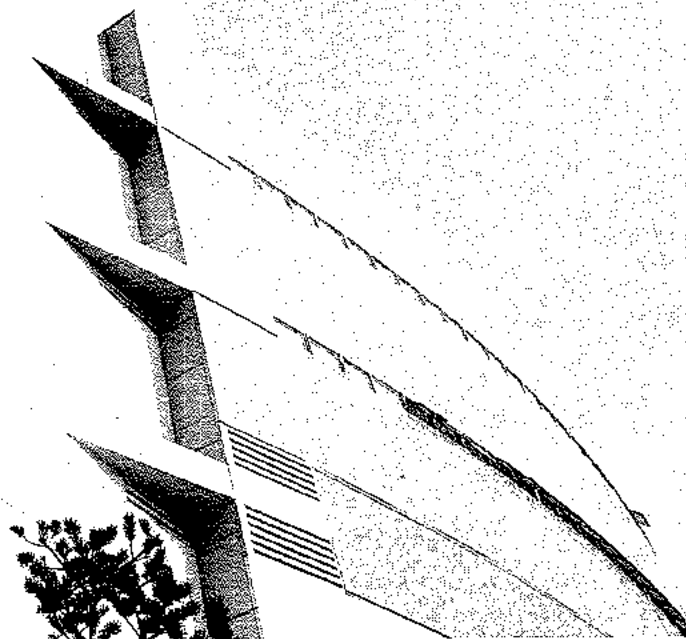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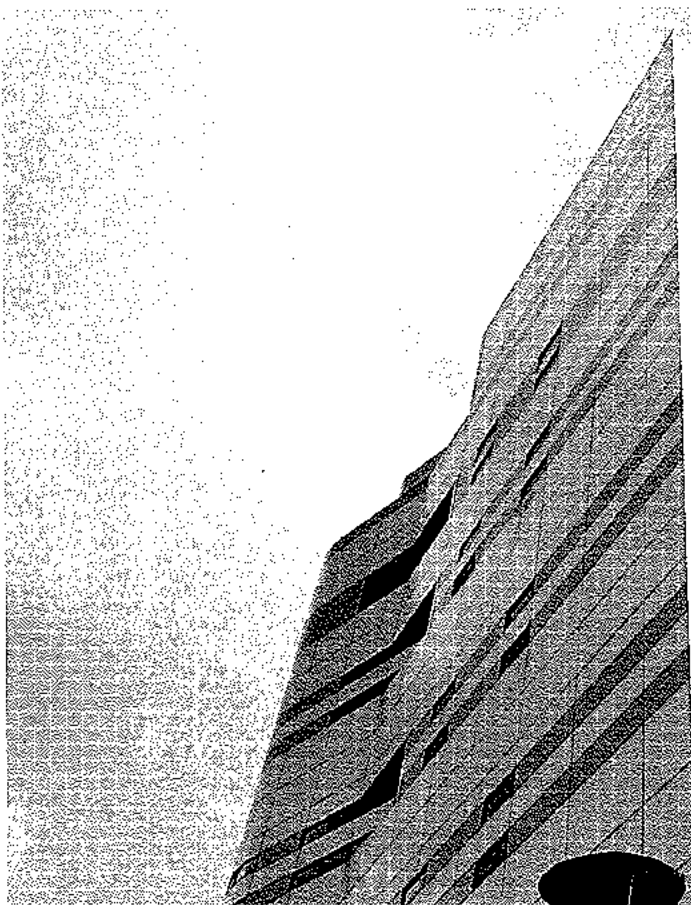
스포츠라는 모티브를 건물의 외관형태에 적절하게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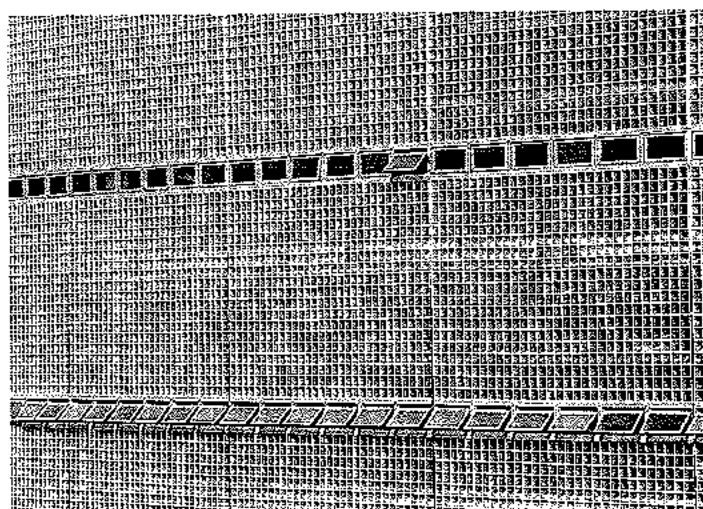
③

-
- A high-contrast,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modern building facade, likely the National Stadium in Tokyo. The image shows a curved, ribbed structure with a large, dark, rectangular section in the center. The building is viewed from a low angle, looking up, and the image has a grainy, high-contrast aesthe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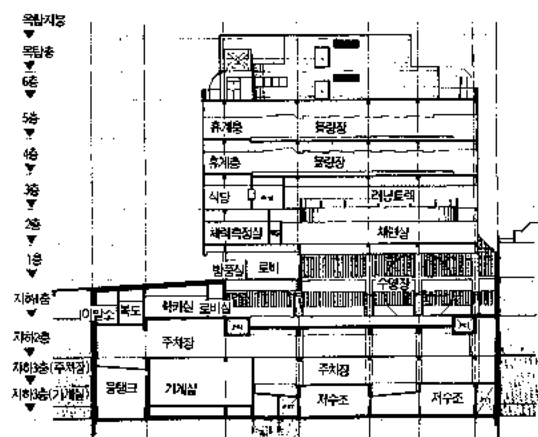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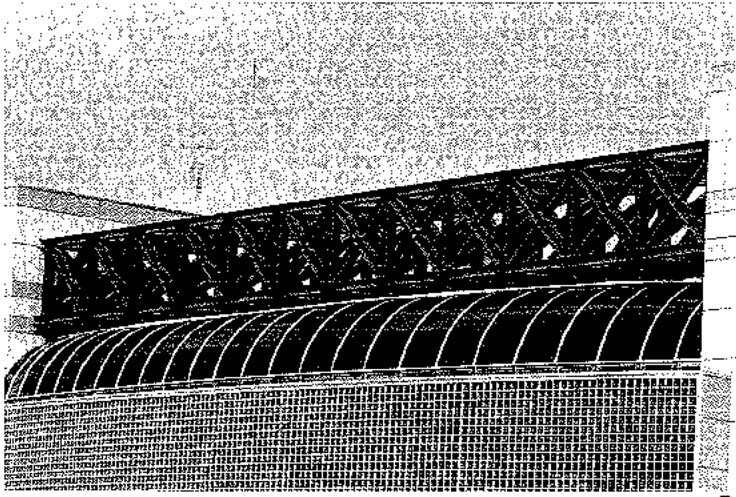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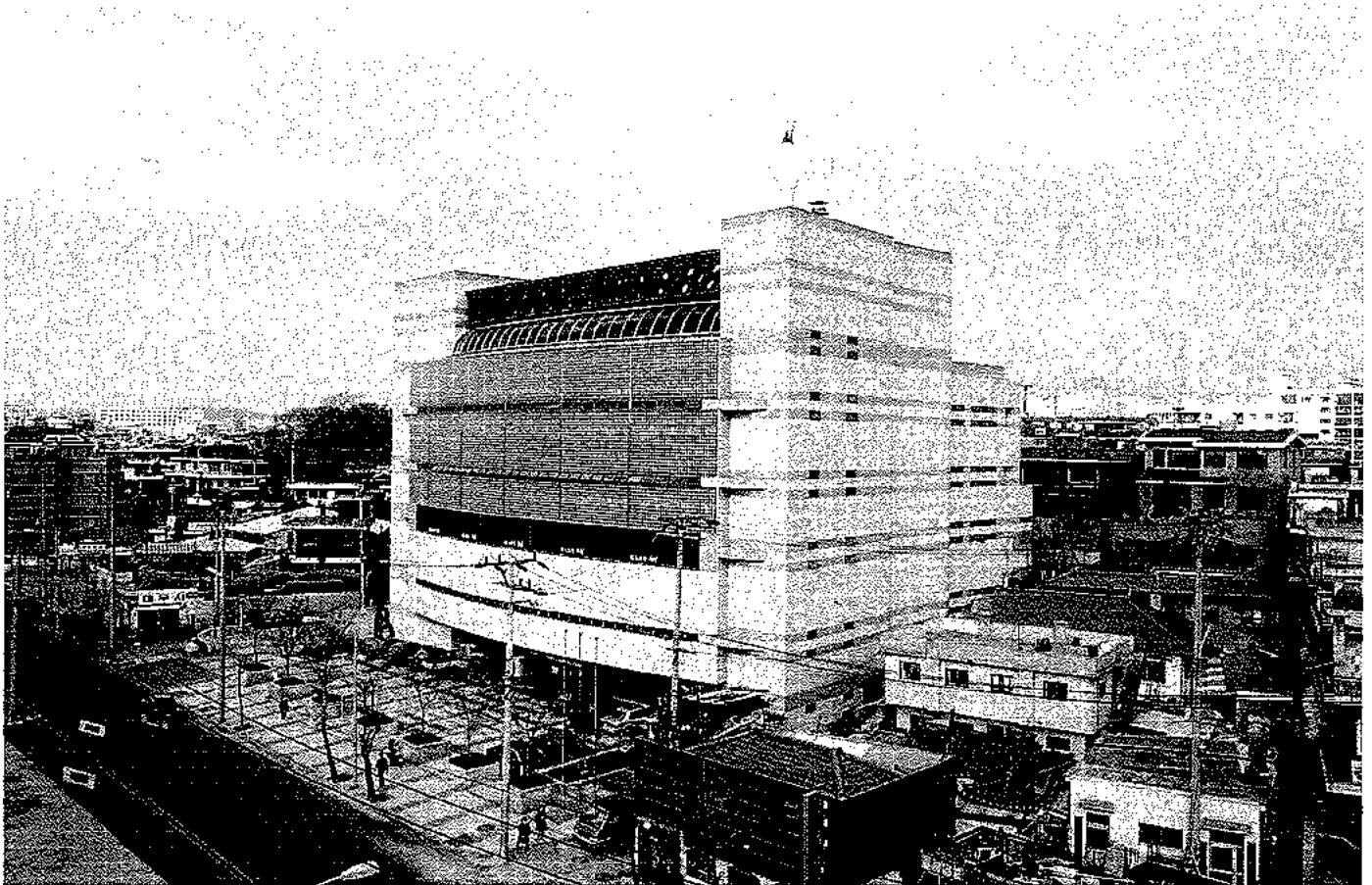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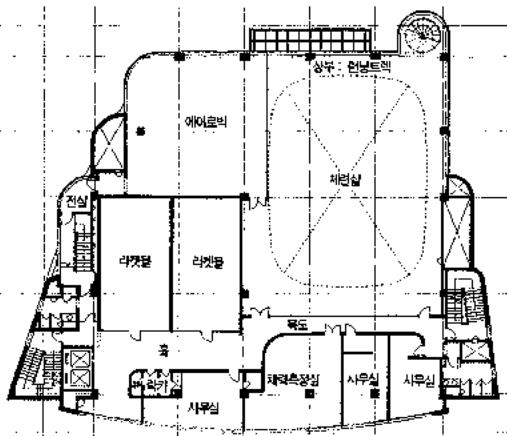
- ⑧ 철골트라스
- ⑨ 원경
- ⑩ 2층 평면도
- ⑪ 수영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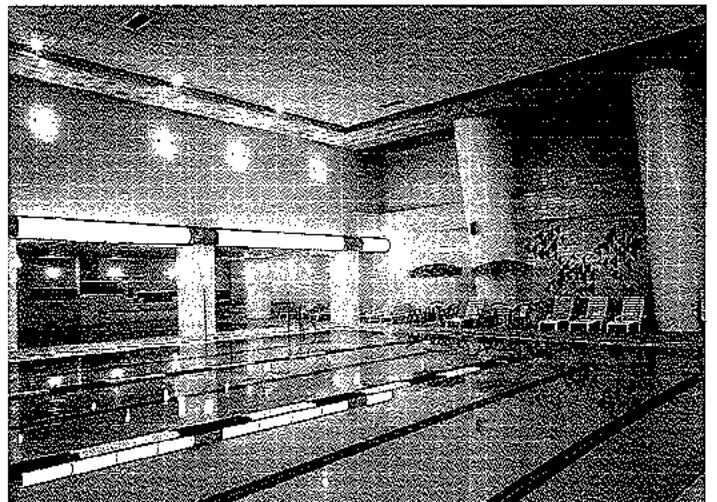
⑧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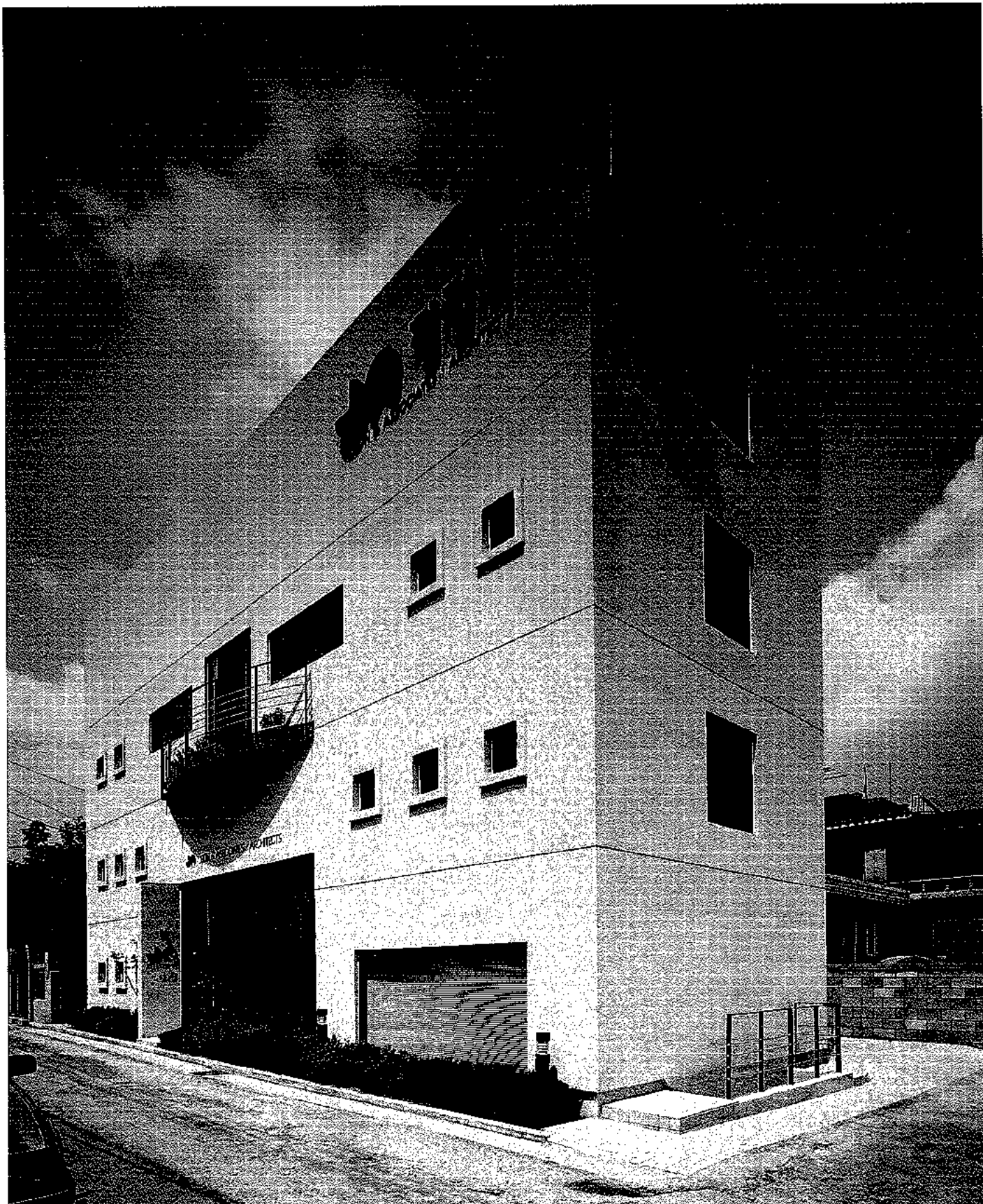
⑪

전건축사옥

Jŏn's Architectural House

全在根/종합건축사사무소 전건축

Designed by Jŏn, Jae—Gŭ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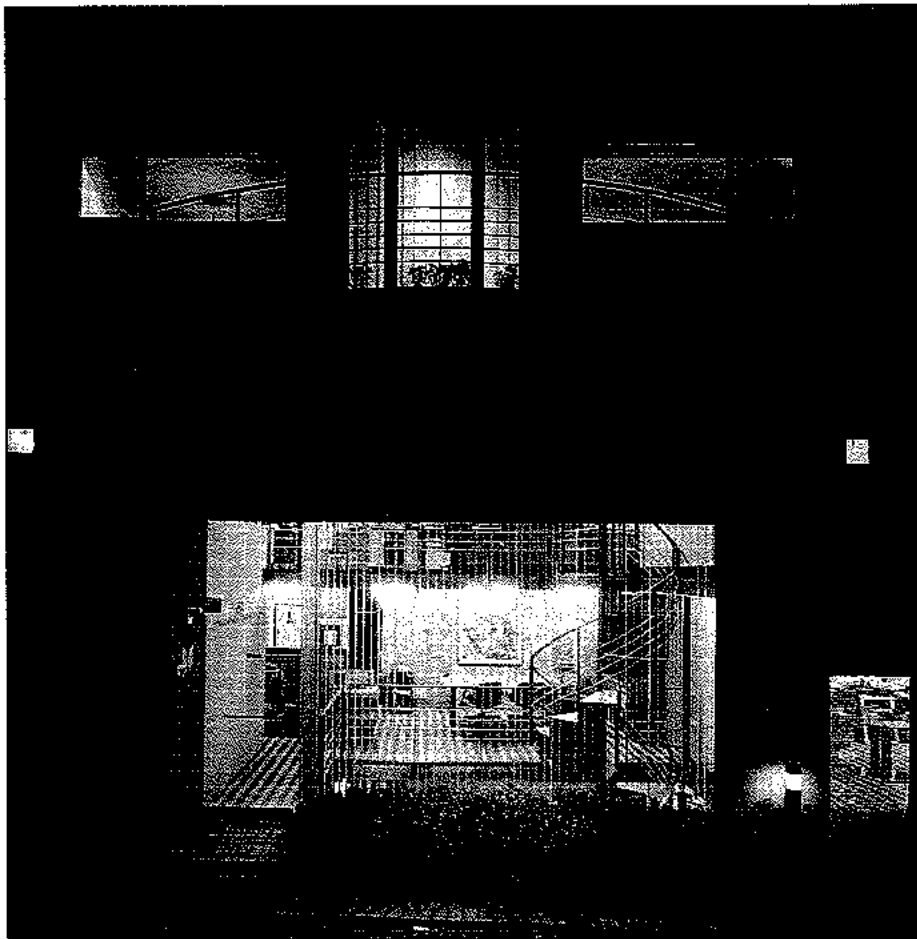




2



3



4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0-29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01.9㎡ (61.07평)
건축면적 / 100.33㎡ (30.34평)
연면적 / 481.18㎡ (145.55평)
건폐율 / 49.69%
용적률 / 169.88%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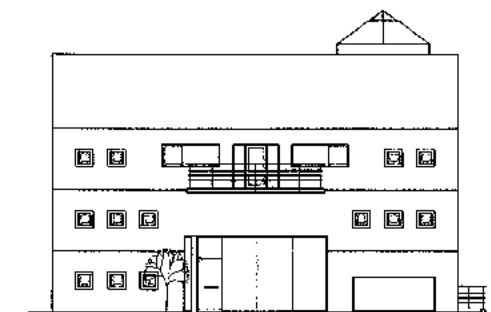
대지는 역삼동주택가 6m도로에 접한, 측면에 4m와 막다른 도로가 있는 60평 정도의 소규모이다. 이 계획을 구상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협소한 대지에 대한 극복이었다. 설계사무실의 모든 기능을 한 개 층에 집약시킬수 없어 3개 층(지하 1층, 1, 2층)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규모의 3개층을 한 사무실이 나누어 사용할 때 생기는 폐쇄감,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출입구 부분에 원형계단을 가진 Void를 두었다. 이는 지하 1층(작업 및 휴식공간), 1층(안내, 도서실, 소장실), 2층(설계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개방감과 함께 공간의 일체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4층은 주택으로 계획되었는데 낮에 주로 사용된 3층은 거실과 식당을 하나의 공간에 묶어 개방감과 공간사용의 융통성을 갖게 하였다. 4층의 침실 공간은 외부로 향하는 창을 두지 않고 내부 조명을 통한 채광과 환기를 유도하여 조용하고 정숙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의 출입구는 선반의 사무실 주출입구와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프라이버시를 갖게 하였다.

건물의 내부는 기둥이나 보가 없이 Flat Slab와 Wall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천장은 노출콘크리트로하여 건물의 층고를 크게 낮추었다.

건물의 외관은 작고 Simple한 Box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Box형태의 단조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창문의 비례와 배열 등 변의 구성에 신경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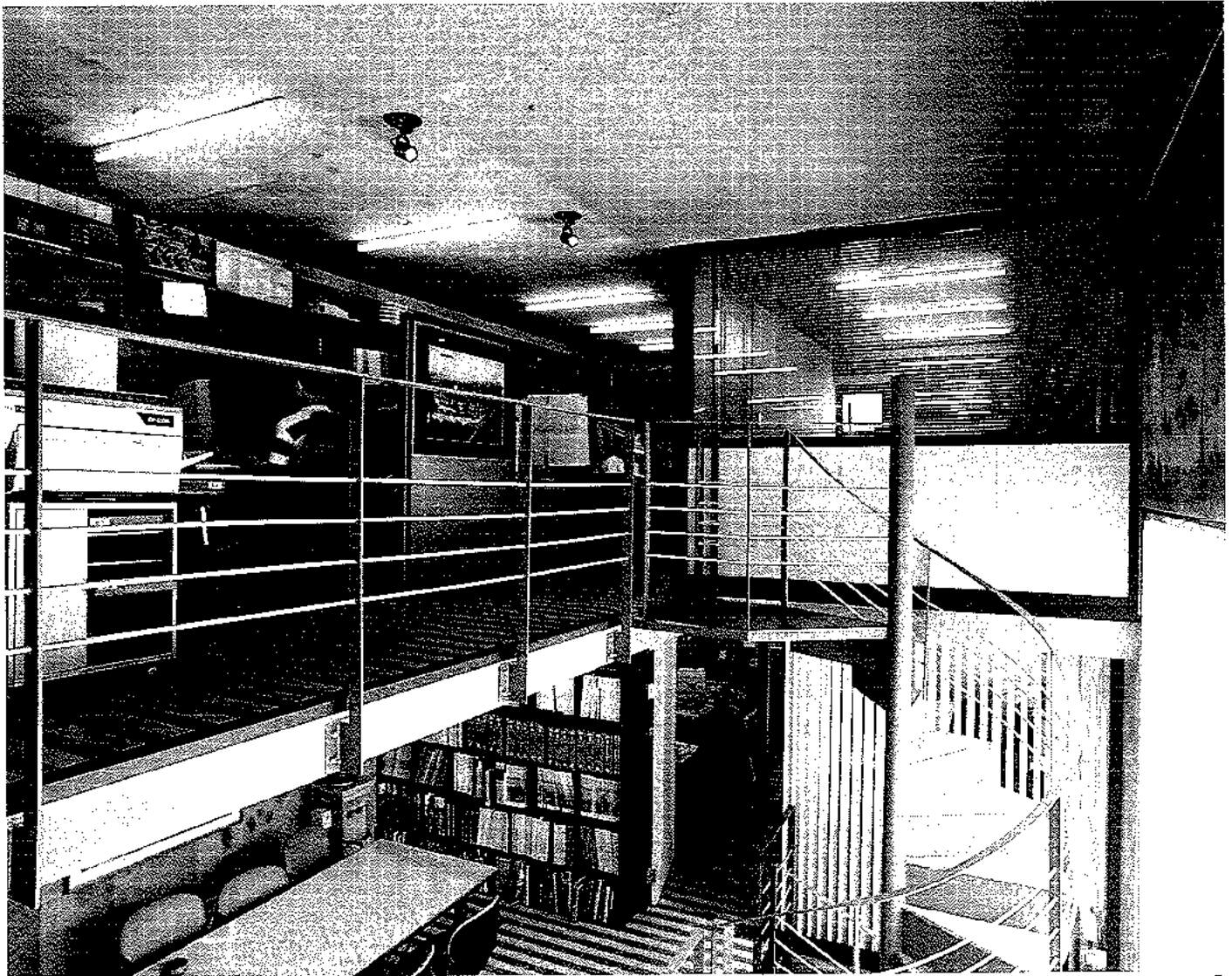
또한 주출입구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벽과 3층 주택의 발코니를 장식적 요소로 도입하여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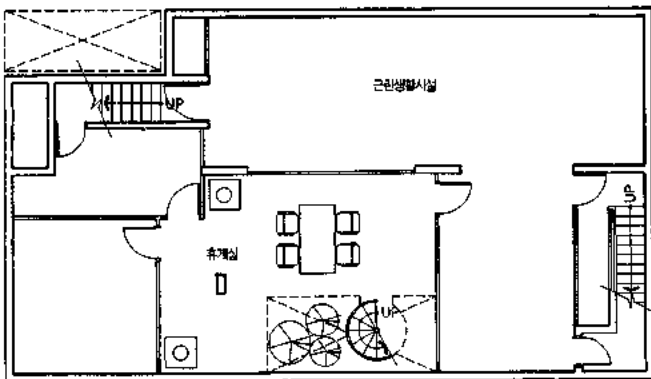
5

- ① 전경
- ② 2층 소장실
- ③ 3층 식당 및 거실에서 본 발코니
- ④ 전면 야경
- 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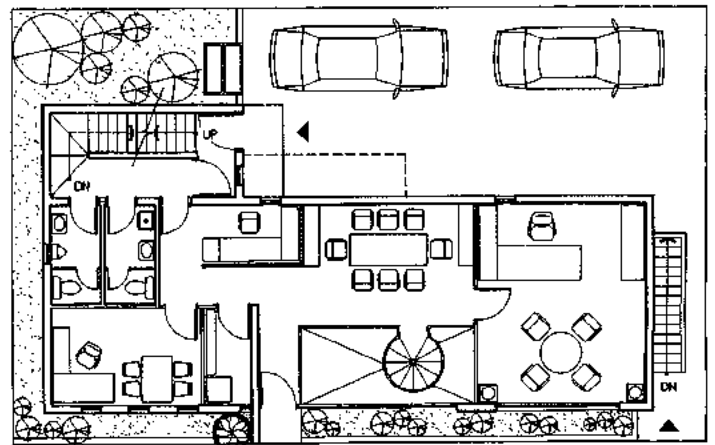
- ⑥ 상하 오픈된 내부
- ⑦ 지하층 평면도
- ⑧ 배치 및 1층 평면도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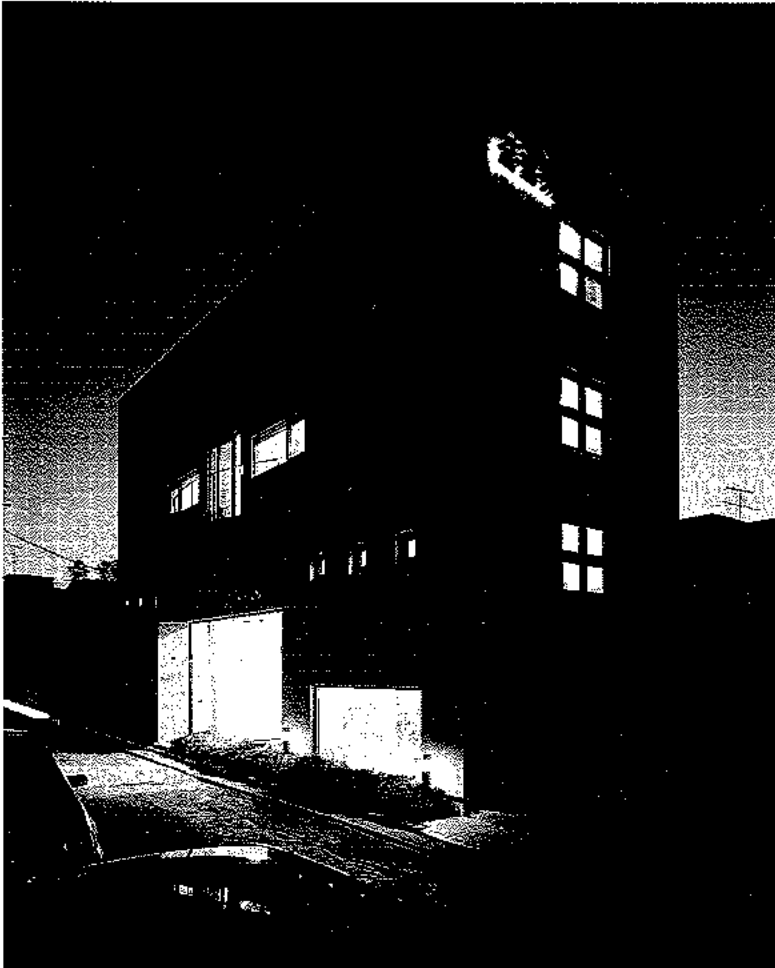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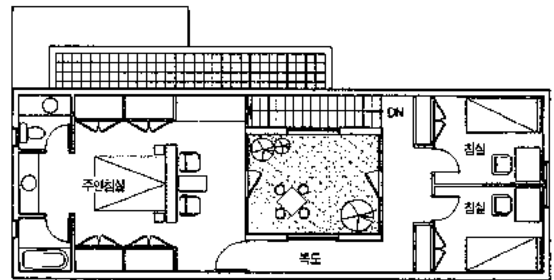
- ⑨ 전경 아경
- ⑩ 전면 주출입구 및 발코니상세
- ⑪ 선큰기둥
- ⑫ 4층 평면도
- ⑬ 3층 평면도
- ⑭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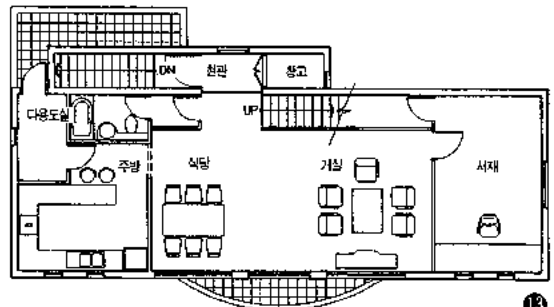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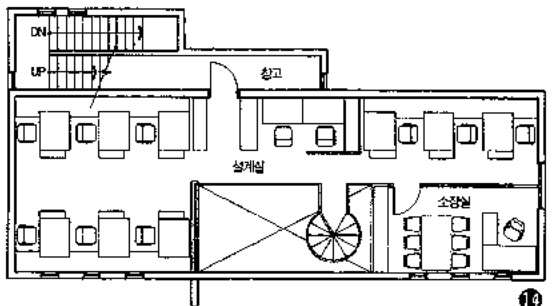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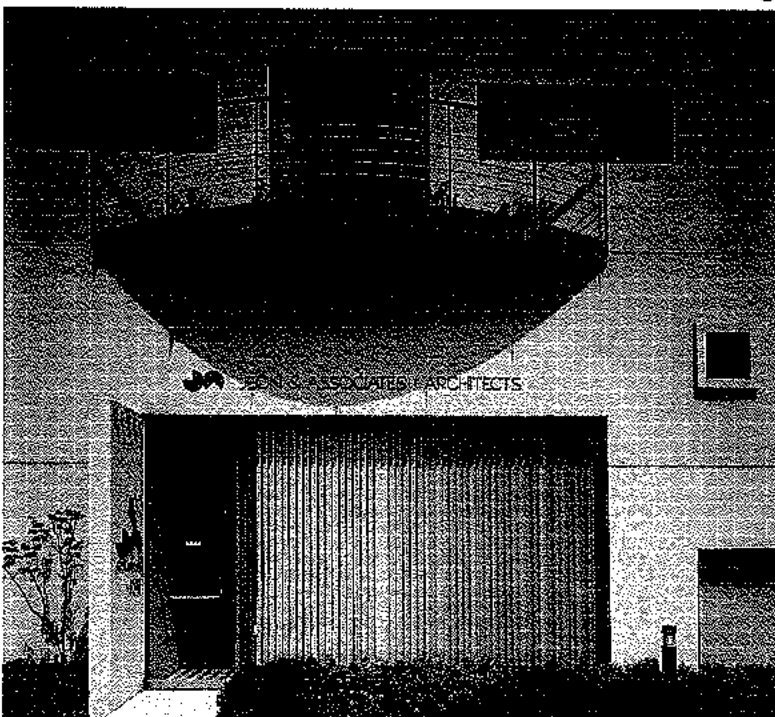
⑫



⑬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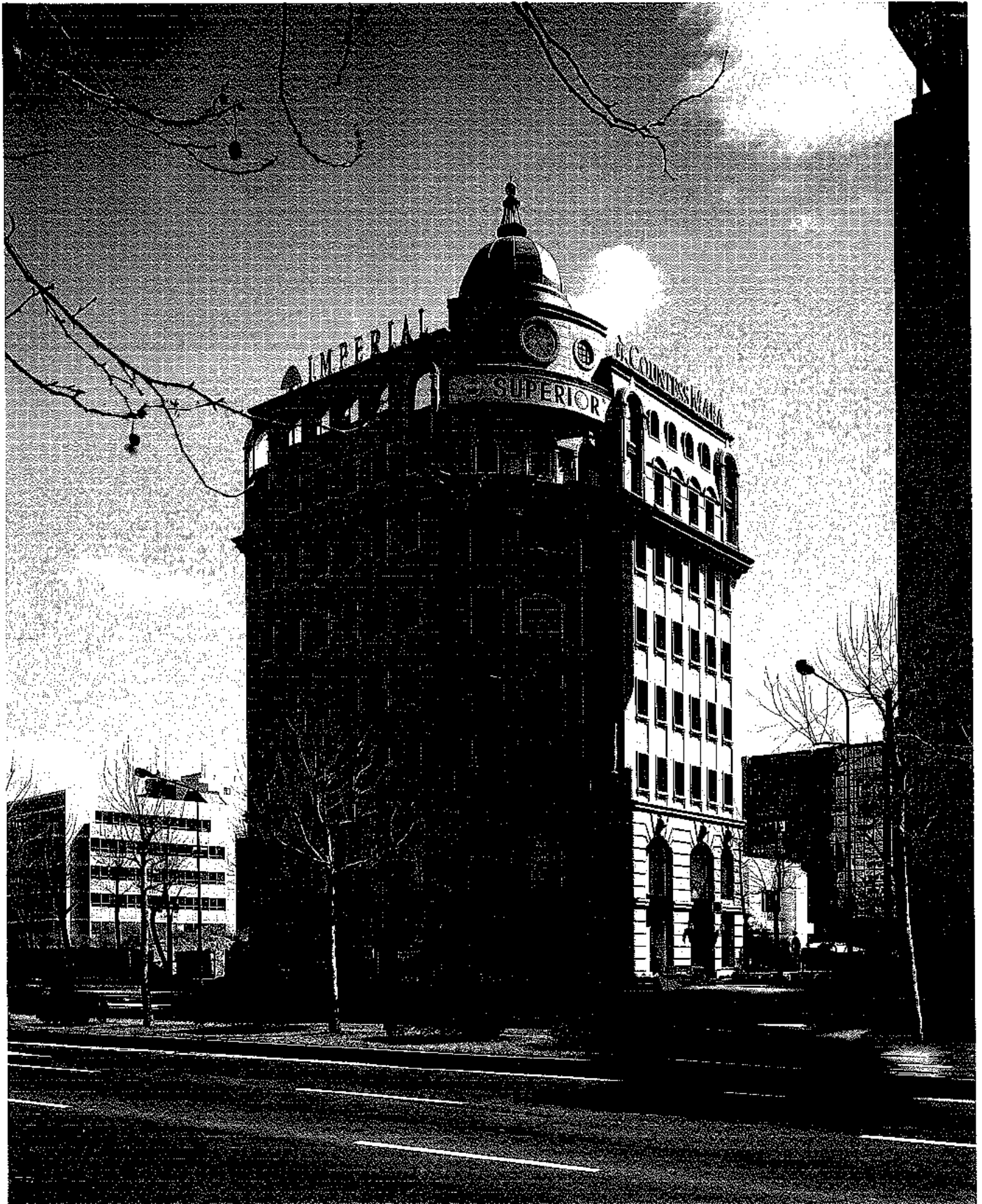
⑩

슈페리어 빌딩

Superior Building

姜聲益/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ung-Ik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1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744.70㎡

건축면적 / 371.6㎡

연면적 / 3,888.43㎡

건폐율 / 49.89%

용적률 / 299.79%

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 3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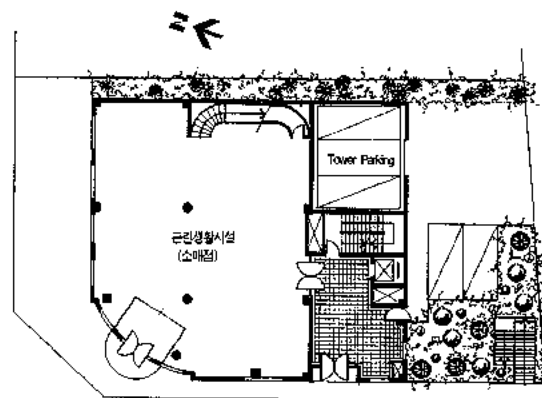
외부마감 / 지상1~2층-100mm 화강석

버너구이(가공석)

지상 3~7층-30mm 화강석 버너구이



- ① 도로에서 본 전경
- ② 1층 매장 I
- ③ 1층 매장 II
- ④ 엘리베이터 앞 로비
- ⑤ 1층 평면도



- ⑤ 전경상세
- ⑦ 전시장 내부 I
- ⑧ 전시장 내부 II
- ⑨ 주단면도
- ⑩ 지하 1층 평면도
- ⑪ 기준층 평면도
- ⑫ 투시도 I
- ⑬ 투시도 II



6

강남상업업무의 축을 이루는 테헤란로를 따라 올림픽스타디움쪽으로 가다보면 우리나라 무역의 총본산을 이루는 한국무역센터와 전시장·호텔·백화점이 위치한 삼성동 사거리에 닿는다.

큰 사거리를 약간 지나 작은골목이 있는 코너대지에 외무메이커인 '슈퍼리어'전시장 및 본사사옥을 석조건물로 아름답고 싫증나지 않으며 국제적인 우아한 패션감각의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주의 요구에 응하여 전통적인 바로크양식의 구라파의 여러도시에 있는 건물들을 모방하여 설계하였다. 전면코너부분의 4개의 엔타시스식 원기둥은 처음 계획안에는 하나의 기둥을 2개씩 묶어서 4개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코너부분의 길이를 줄이는 바람에 단기둥으로 바꾸었으며 옥탑부분의 벽면은 경사돌 주어서 다크브라운 칼라의 지붕재를 잇기로 설계되었으나 건축주의 의지대로 석재로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이 끝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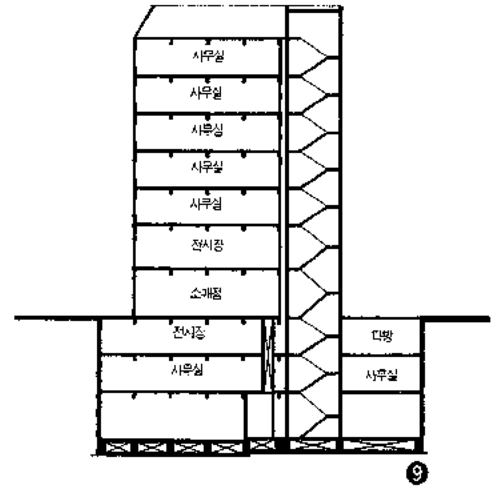
몇년전에 설계한 성수대교입구에 있는 '아쿠아

스큐엄' 사옥에서는 육중하고 남성적인 반면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좀더 섬세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많이 이용하였다. 몇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입면을 가지고 건축심의시에 사치성입면 운운하여 개심판정을 받았던 일과 건축주의 일방적인 설계변경과 공사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의 직영처리로 마무리 지은 일 등으로 어렵게 완공한 건물이지만 애착이 가는 건물임에는 사실이다.

한국적인 특성과 전통환경을 무시한채 무분별한 외국의 건축양식의 모방·도입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는 화강석을 이용하여 국내의 건축수준을 높이고 건축미가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며 변화와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스테디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건물전체의 바란스도 안맞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모양의 단순한 모방의 건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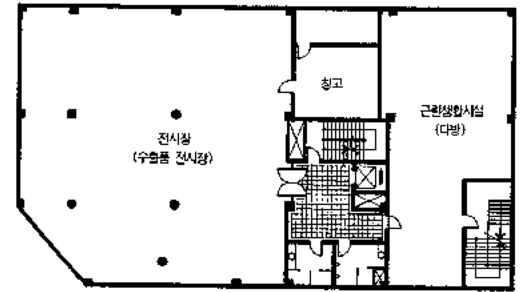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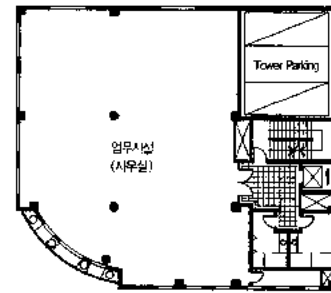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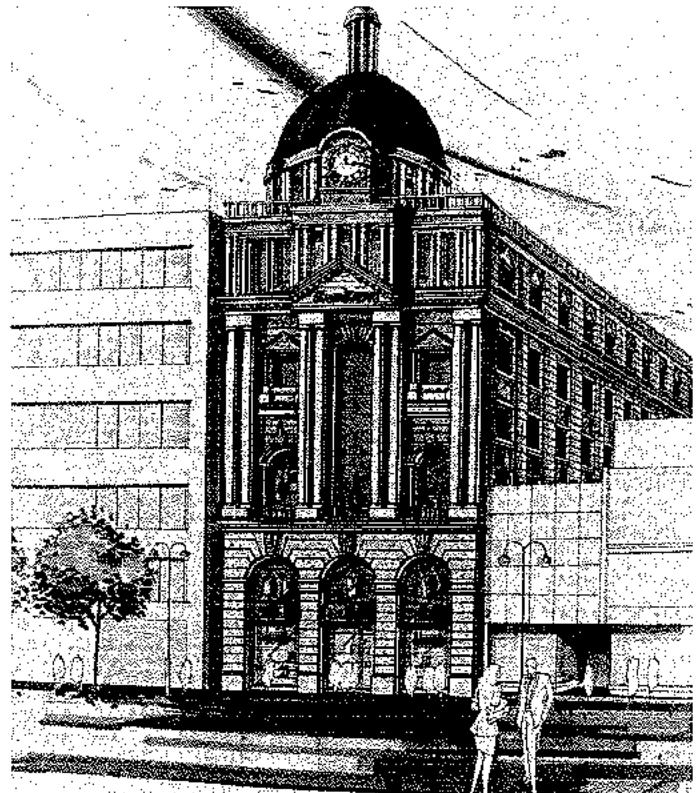
10



11



12



13

동양공업 전문대학 도서관 및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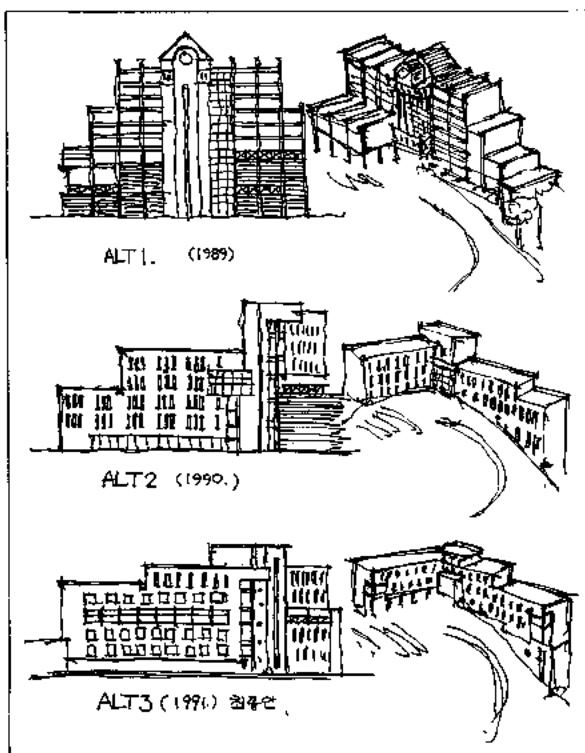
Dong Yang Technical College Library and Research Building

尹泰雄/(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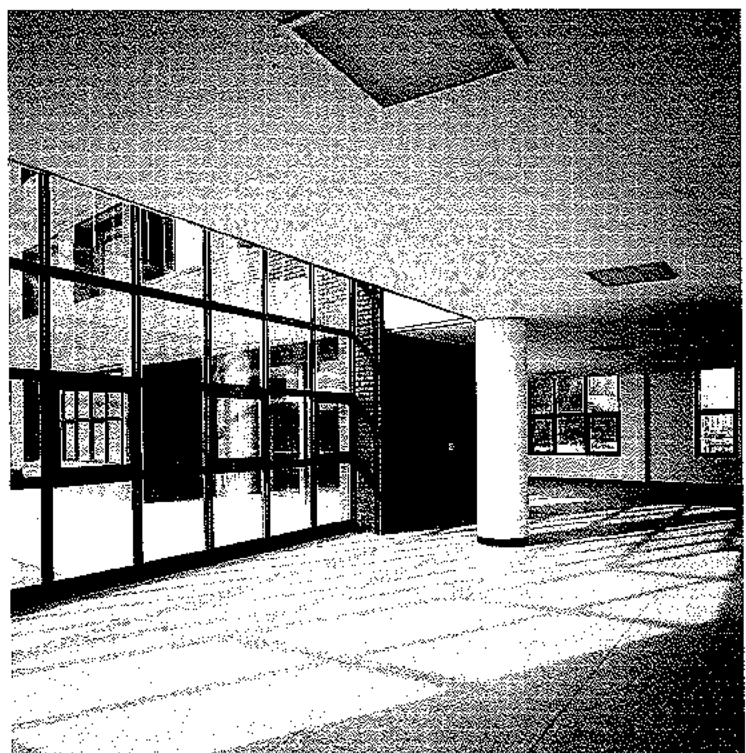
Designed by Yun, Tae—Woon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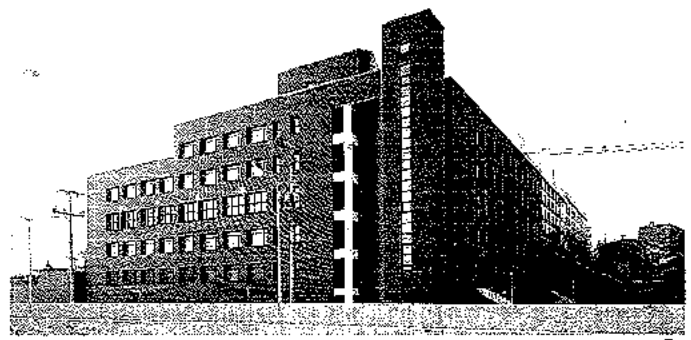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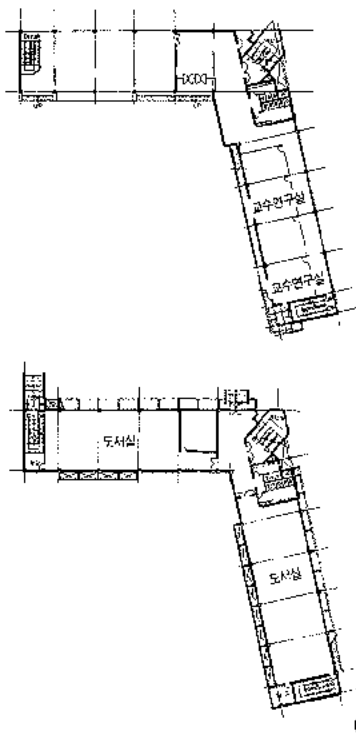
대지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16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762.45㎡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외부마감 / 변색벽돌 차장쌓기



4



5



6

7

기본계획

본 계획은 지난 8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주인 동양공업전문대학측의 예산 및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초기계획안 이후 3차에 걸친 계획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계획상의 요지는 좁은 학교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저층(5층 이하)으로 추진하려는 건축주의 요구였으며, 주변대지와 10m 가량 차이가 나는 계획부지의 고저차, 그리고 주변지역에 랜드마크적 요소로 비취질 시각적인 측면 등 여러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배치계획

건물의 배치는 기존 대학건물군을 연장한 동서축과 안양천을 따라 신설되는 도로와 평행되는 남북축을 건물의 배치축으로 삼아 T자형태로 계획하였다.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구성된 평면은 상층부분을 교수연구실 및 강의실로, 저층부는 도서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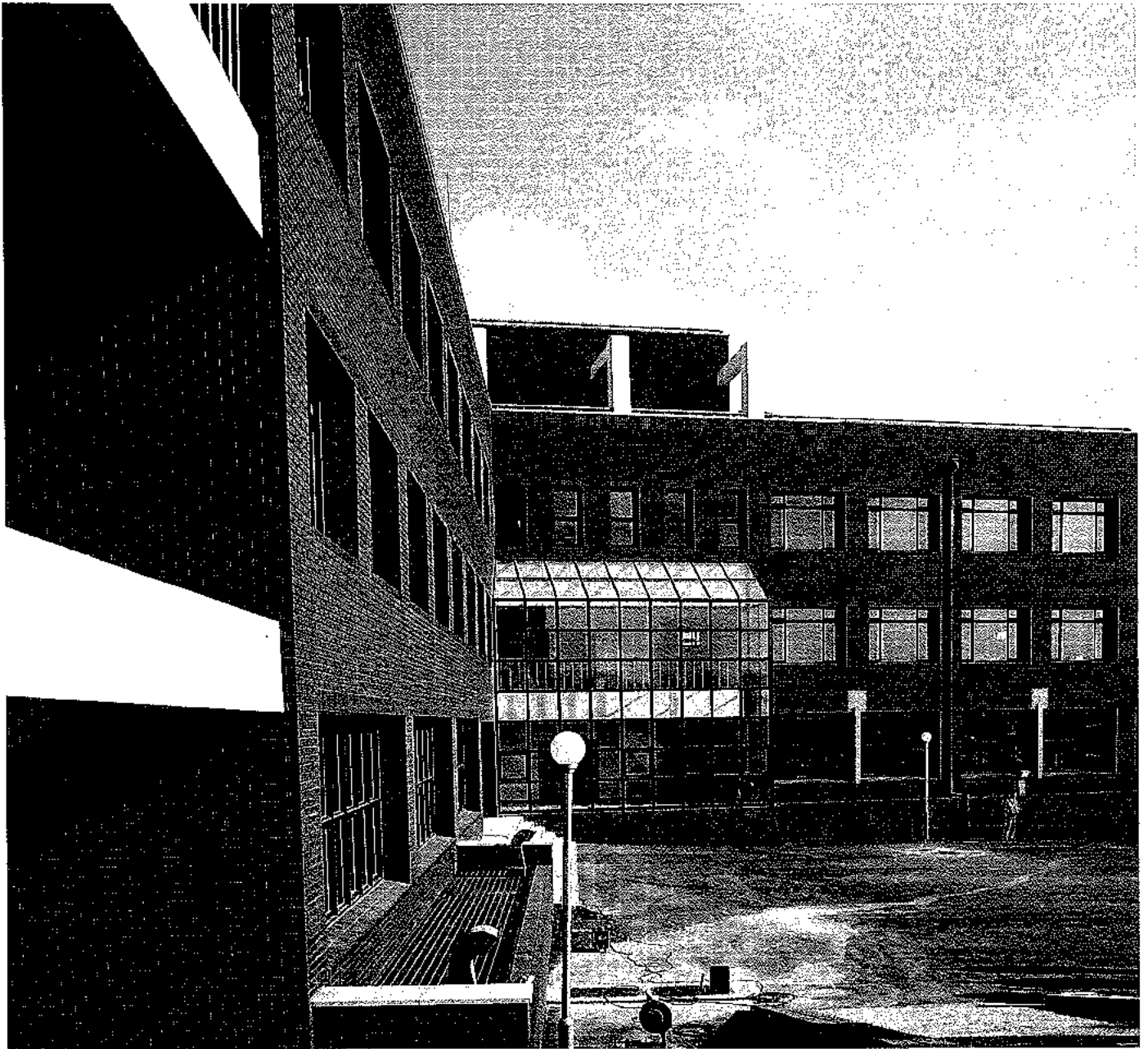
계획하였으며, 학교측 레벨과 동일한 3층부분은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중심으로 일부를 피로티로 구성하여 좁은 학교에서 개방감을 주고 휴식, 옥외전시 등 여러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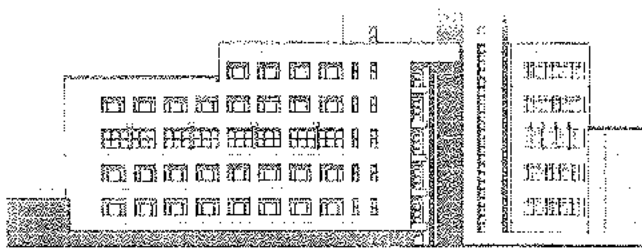
평면의 모듈은 강의, 연구, 독서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6X6.6m로 설정하여, 각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외관계획은 강의실과 업무시설이 주 용도였던 1차안 때의 경쾌한 분위기 대신, 연구실과 도서관의 용도에 어울리도록 변색벽돌 차장쌓기를 이용하여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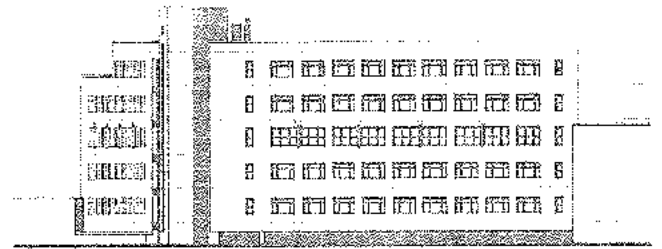
본 연구동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못한 외부유리화 노출기둥의 절라, 그리고 교문과 피로티 등의 문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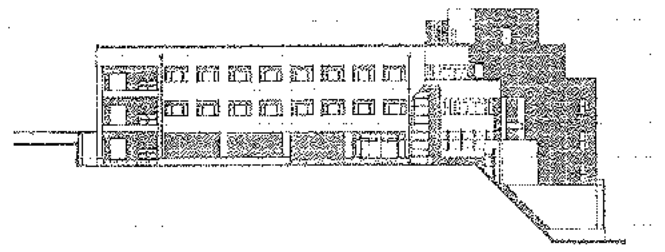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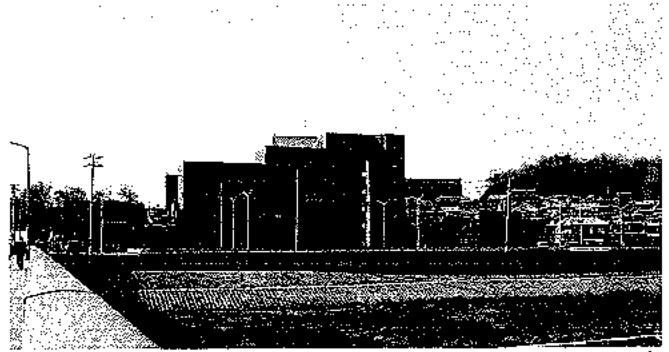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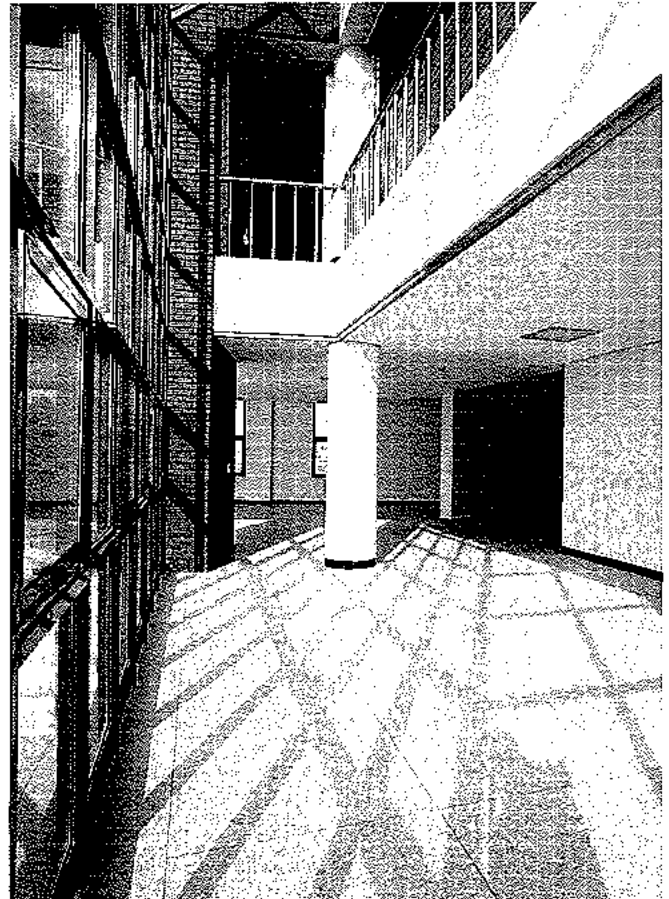
13



16



14



17



15

- ① 정면전경
- ② 계획의 전개 스케치
- ③ 복도와 연결되는 1층 로비
- ④ 배면전경
- ⑤ 후면 부출입구
- ⑥ 3층 평면도
- ⑦ 1층 평면도
- ⑧ 전면 외부상세
- ⑨ 동측 입면도

- ⑩ 북측 입면도
- ⑪ 서측 입면도
- ⑫ 남측 입면도
- ⑬ 외벽디테일
- ⑭ 측면 휴게공간
- ⑮ 올라다 본 계단실
- ⑯ 원경
- ⑰ 1층 로비에서 본 2층

석천장

Seok Chun Jang

金京孜/(주)그롭조형 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Kim, Kyung-Ja



①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5-8, 9
 지역지구 / 주거전용지역
 대지면적 / 660.2㎡
 건축면적 / 258.5㎡
 연면적 / 494.88㎡
 건폐율 / 39.15%
 용적률 / 63.4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R.C조
 외장재료 / 화강석 버너구이 건축쌓기
 지붕재료 / 청기와 잇기



②

- ① 전경야경
- ② 현관측 상세
- ③ 전면외부상세
- ④ 계단실 상세



③



④

우리나라에서 주택지로서는 가장 비싼 동네에 나름대로 최고의 주택을 지어 보겠다는 야심(?)으로 계획 첫단계부터 설레이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70대에 접이든 건축주로서는 그간의 수차례의 건축 경험으로 나름대로 마지막 시도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보금자리에 각별히 더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본인 역시 '집'에 대한 첫번째 생각은, 우선 사는 사람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므로 그 분의 생각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나하였다.

건축주가 그 동안에 살던 집들이 모두 화강석으로 외장된 것으로 보아 돌을 매우 선호하지만, 석재의 재료자체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딱딱해 보임이 늘 그의 불만의 요인이었다. 이의 해소책으로 장대 下인방의 돌을 물당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두세대가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현관에서 내부 홀로 들어서면 동선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용공간인 식당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각자의 공간에 침해받음 없이 현대모여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이 집에서 Key-Point라고 할 수 있는 응접실은 바깥주인인 건축주



5

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절친한 손님 접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정원 앞뜰과 옆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하루종일 햇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기분좋은 공간이다.

이 집이 다른 주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첨단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갖춘 주택이라는 점이다.

개략적으로 시스템을 열거해 보면,

1. 항온·항습설비
2. 냉·난방 공조설비와 바닥 패넬히팅 겸용
3. 소레노이드 밸브에 의한 Zoning별 온도조절 시스템
4. 자가발전 설비·정전시 각방의 전동셔터 작동 및 1개등 점등 可
5. 모든 통과 동선에 대한 3로 스위치 설비
6. 콘트롤 패널 시스템
7. H·A 및 적외선 경보 시스템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관계체계 구성
8. Secom 설비
9. Key-Phone설비
10. 중앙 청소 설비 시스템
11. 자동 제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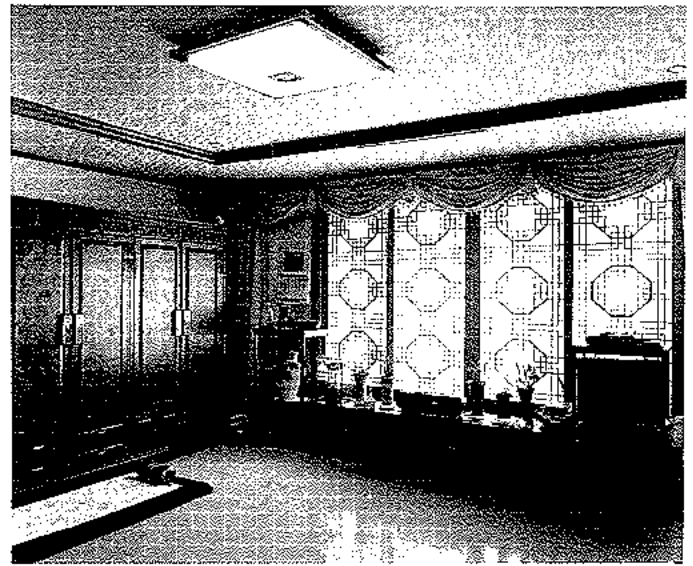
앞으로의 주택들이 점차 설비적 측면에서 발전되어 가겠지만, 빌딩처럼 많은 면적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주택의 과학적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다 경비지출의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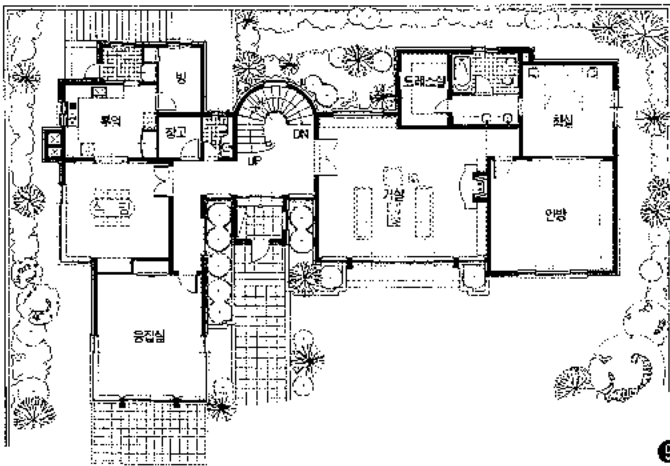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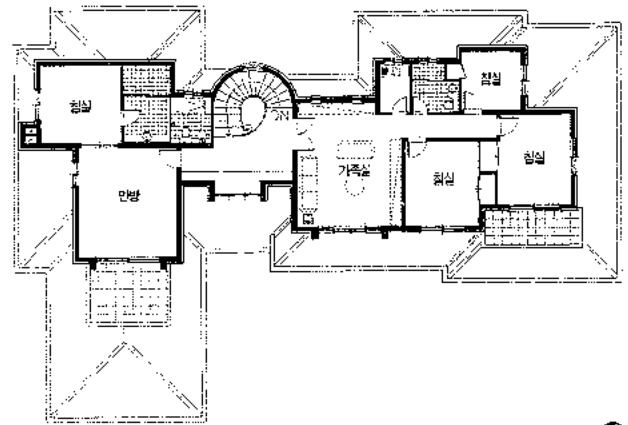
7



8



9



10



11

- ⑤ 외부에서 본 현관 및 응접실측 야경
- ⑥ 현관진입계단
- ⑦ 거실전경
- ⑧ 안방
- ⑨ 1층 평면도
- ⑩ 2층 평면도
- ⑪ 응접실

논현동 한우리 빌라

Nonhyeon-Dong Hanuri V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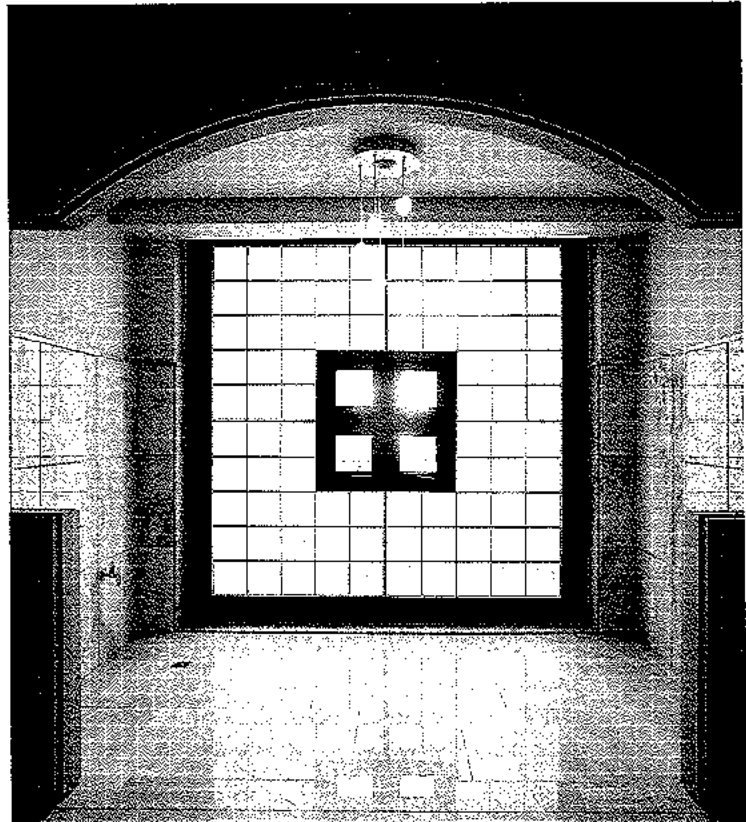
宋光燮/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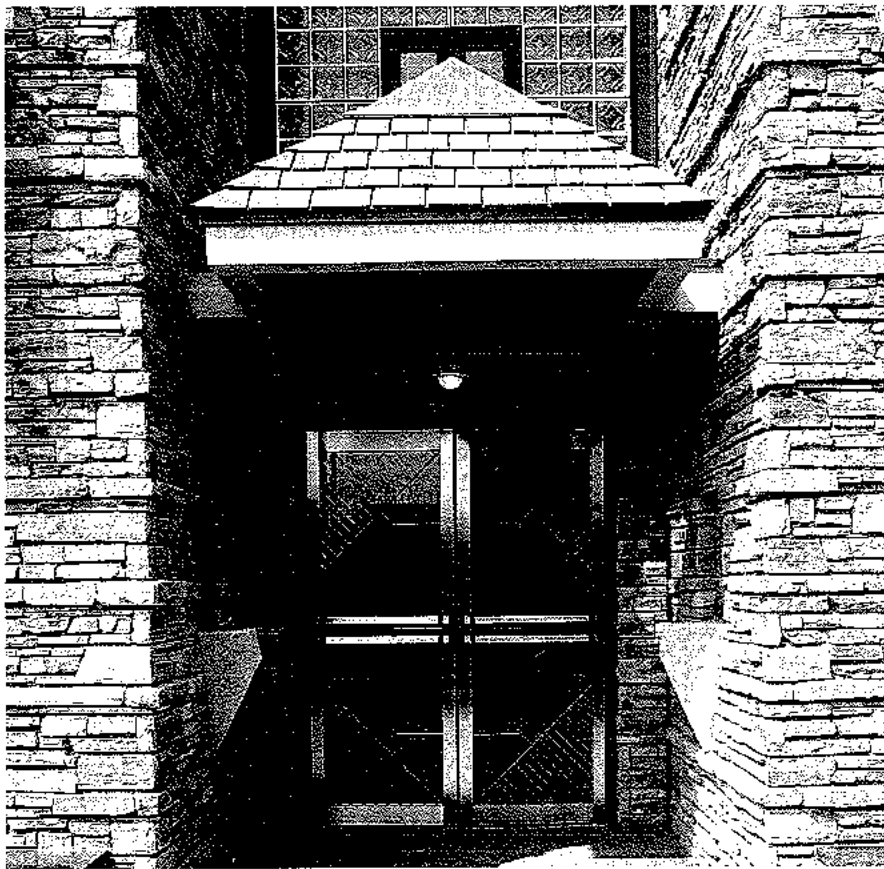
①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6번지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651.20㎡
 건축면적 / 371.86㎡
 연면적 / 1,768.33㎡
 건폐율 / 57.1%
 용적률 / 213.39%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제주시 쌓기, 드라이 비트, 아스팔트 성글



②

- ① 전경
- ② 온실
- ③ 1층 현관상세
- ④ 다목적실 상세
- ⑤ 횡단면도



③

대지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집합주택의 건축법이 활발하기는 하나 획일적 평면구성이 거주자의 삶의 형식과 사고 패턴까지 획일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외관은 하나로 일체된 속에서 보다 다양한 주거양식을 담아보고자 복층형을 도입하여 각 세대마다 설의 구획을 달리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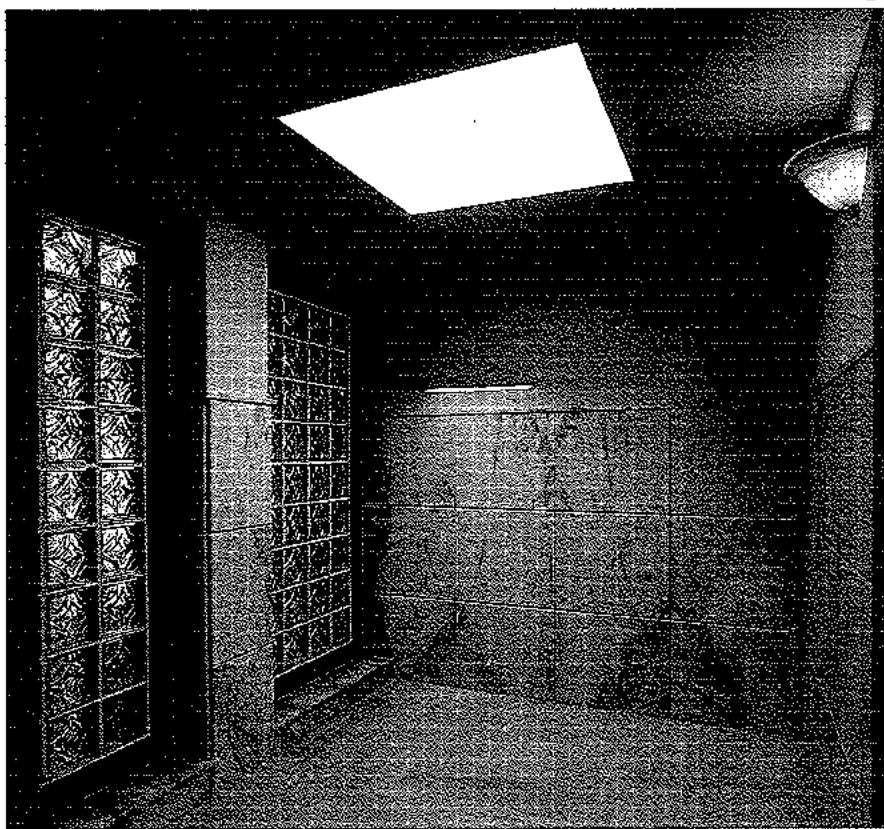
도로에서 집안의 현관에 이르기까지 거주자는 3단계의 파장적 공간을 거치게 된다. 완전한 외부로써 계단을 올라 정원을 양측에 끼고있는 진입로를 통과하면 건물 전체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주출입구와 만나게 된다. 이 문을 통과하므로써 이 건물 거주자로서의 공동체적 합의를 느끼게 되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좁고 낮은 정적의 통로를 통과하면 탁트인 보이드 공간으로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는 계단실로 나서게 된다.

조그맣게 꾸며진 내부 정원과 계단실 자체가 이 건물 거주자들의 공동의 안마당이 된다. 외부에서의 만남보다 좀더 친근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장을 형성하며, 함께하는 삶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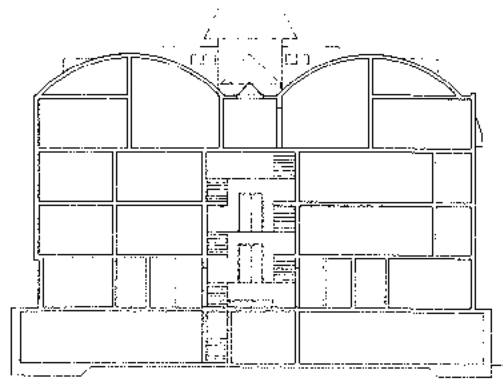
대칭으로 구성된 입면요소는 화격의 미보다는 보다 절제된 선이 조절과 볼트와의 만남으로 기존 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의미를 모색해본 결과이다.

집합주거가 갖는 의미는 한 동의 건물을 완성하므로써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처럼 건물과 건물간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연출이다.

물론 주거건축물만이 독특하게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능의 건물보다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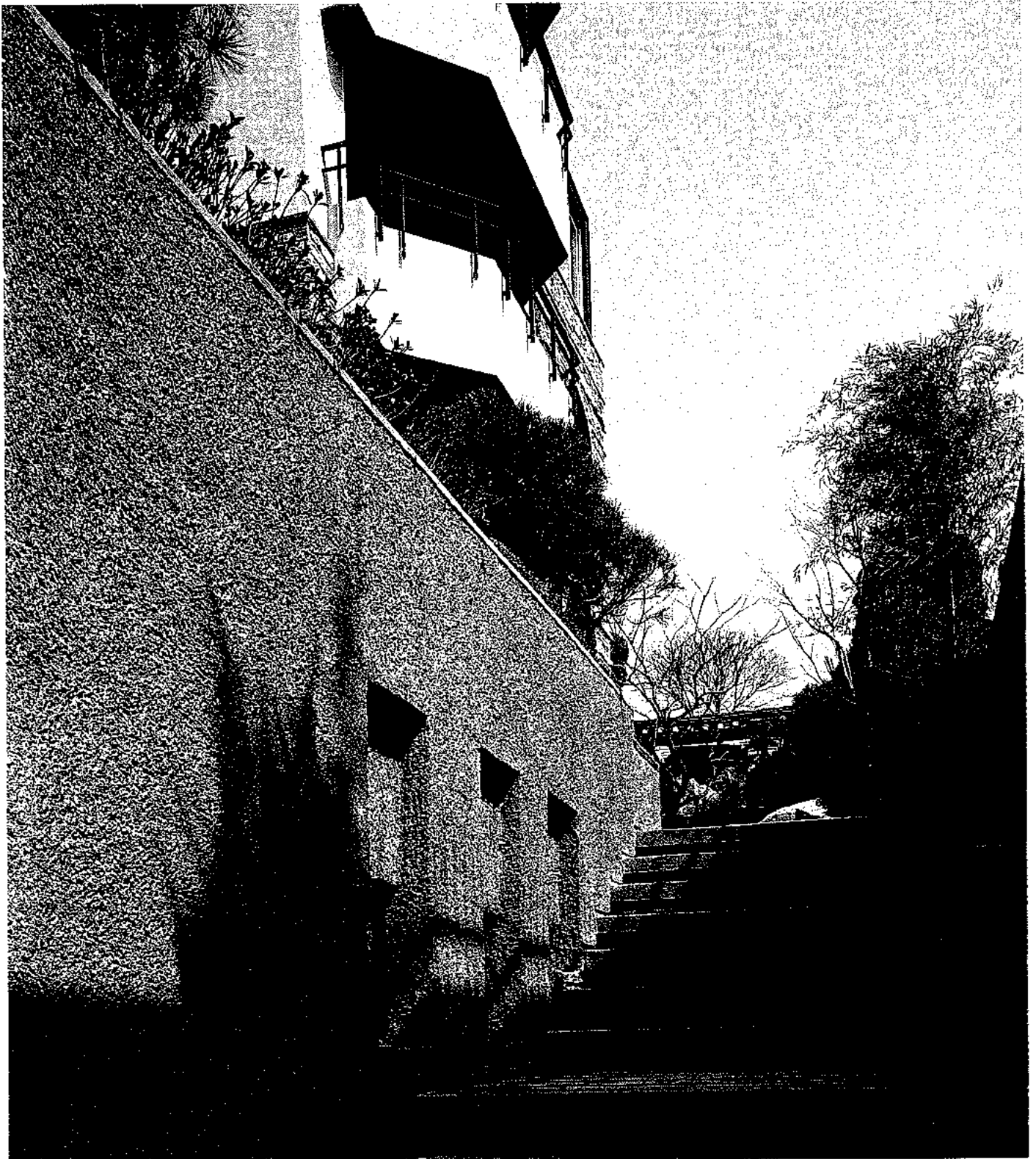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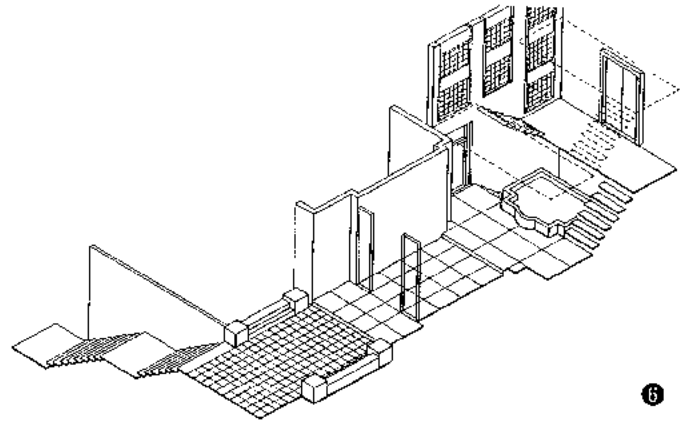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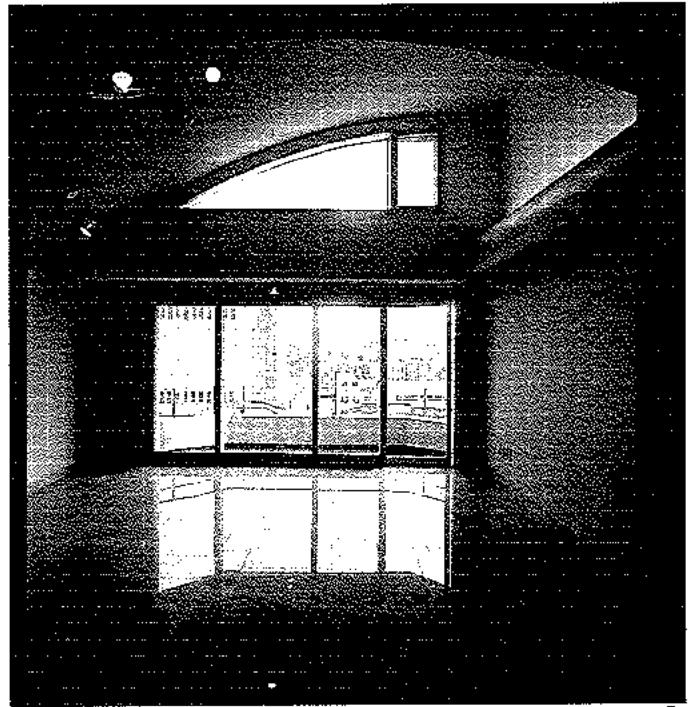
⑤

- ⑥ 엑소노 메트릭
- ⑦ 현관진입계단
- ⑧ 주방에서 본 식당
- ⑨ 4층 거실내부
- ⑩ 내부연결계단측 상세
- ⑪ 각층 연결계단실 상세
- ⑫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⑬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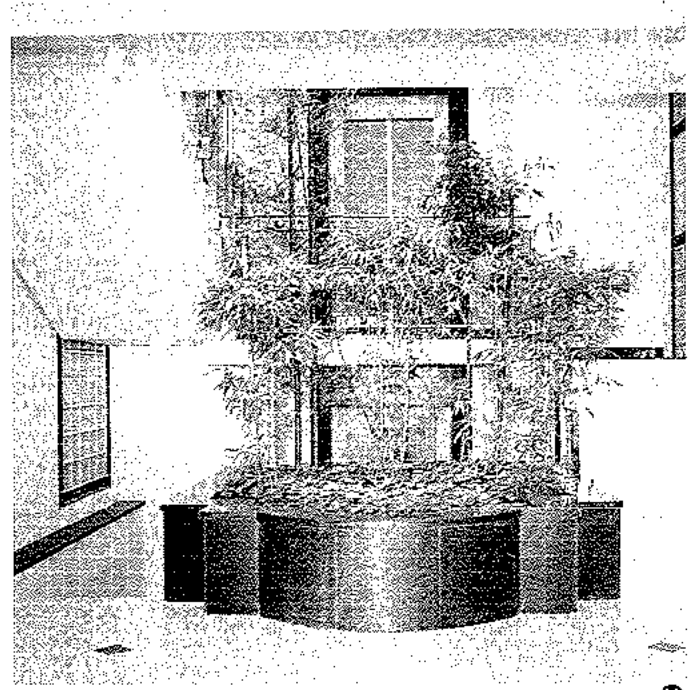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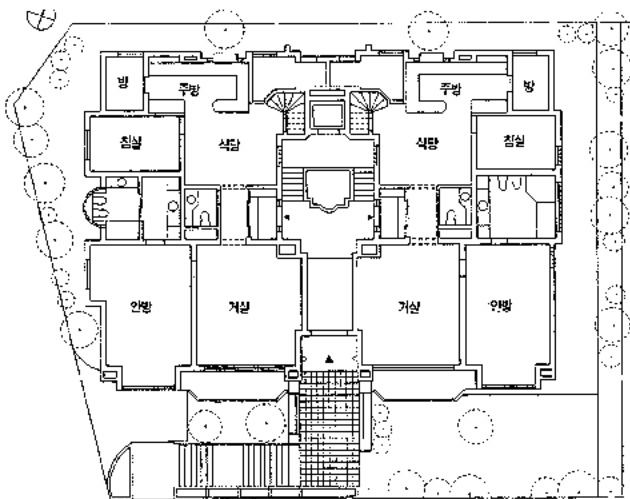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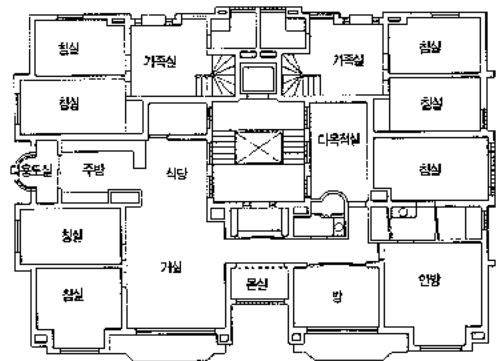
10



11



12



13

천주교 오금동교회

Ohgum—dong Catholic Church

朴在煥/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Designed by Park, Jae-Hwan



천주교 오금동교회 신축 계획안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2의 4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2,284.5㎡
건축면적 / 1,136㎡
연면적 / 7,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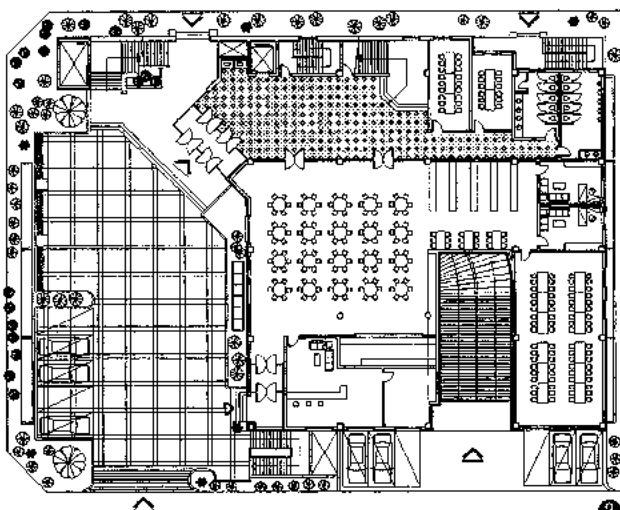
건폐율 / 49.7%
용적율 / 102.5%
규모 / 지하 3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지붕
주차대수 / 95대(지상 11대 지하 8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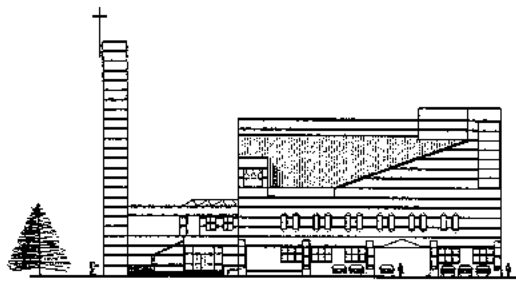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오금동교회는 도심외곽의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와 기자촌 아파트단지를 북측으로 끼고있는 주변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밀집되어있는 신설본당이다.

신축부지는 50m의 주도로에서 한블럭 들어와 3면이 6~8m 도로와 접한 700여평이 조금 못되는 장방형의 평활한 대지로 서측에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그마한 근린공원이 있어 그나마 시야를 막아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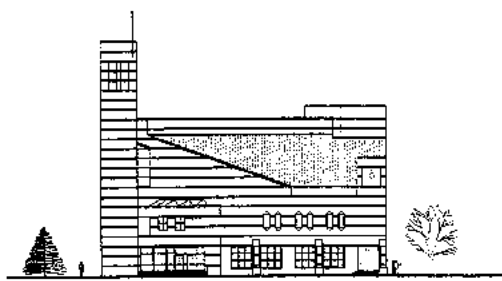
배치계획

건물은 북동측에 배치하여 남측의 8m 도로에서 주 진입이 이루어 지면서 남서측의 Open Space를 인접 근린공원과 연계성을 함께 갖도록 하였다. 계획건물은 대지주변에서 볼 때 건물로의 접근방법이나 정면성의 부각이 양면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사각형의 구형건물이 진북방향과 일치되는 45도의 사선방향으로 중상심축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지상과 지하의 출입동선도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분산시켜 옥외에서의 접근도 용이하게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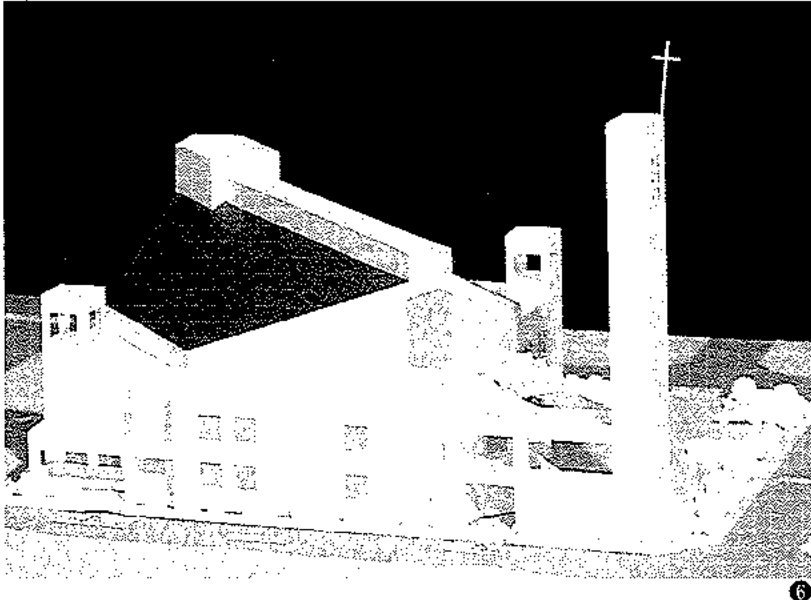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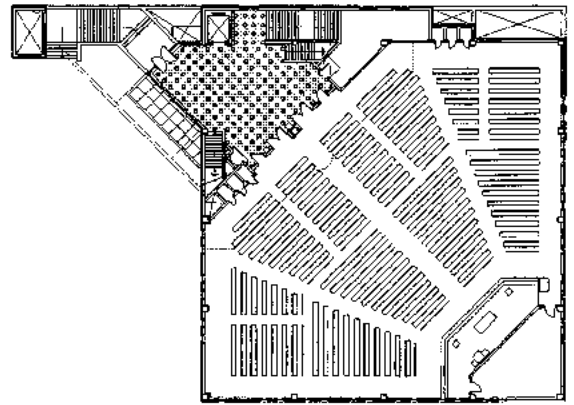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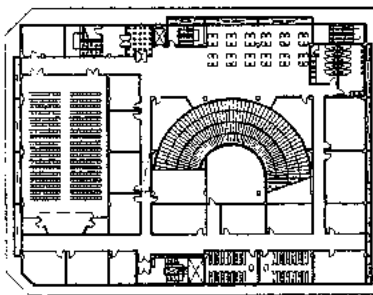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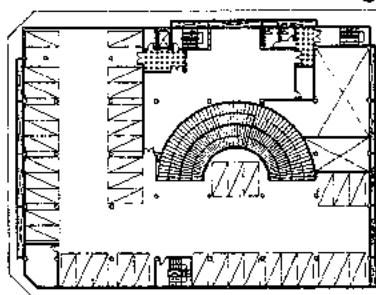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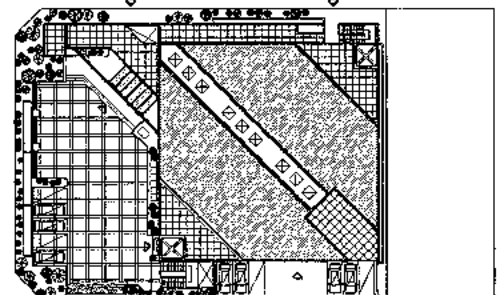
⑥



⑦



⑧



⑨

평면계획

약 1,200여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전례 공간은 지상 2층(일부는 지상 3층)에 위치하며 그 형태를 정방형으로서 미사집전 사제와 참석신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체 의식의 일체감을 더욱 갖도록 사측성 대칭형태를 취하였다. 지상 1층에는 친교의 공간인 만남의 방을 중심으로 하여 개가석 서고와 면담실, 회의실등이 있어 각층으로의 동선과 활동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지하 1층에는 약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성당(강당겸용)과 다목적홀이 있고 각 단층의 집회실(교리실겸용)19개가 자리하고 있다. 지하 2층과 3층에는 약 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고 특히 지하 2층에는 장례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다.

형태 및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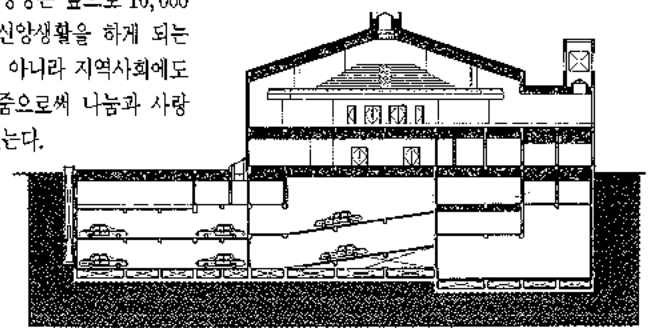
건물의 매스는 성전으로서의 장중함과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를 구성하였다. 한편 주변환경을 압도하기 보다는 조화되고 친근감을 갖도록 수직적인 요소는 가급적 지양하였다.

북동측과 남동측의 평지붕 모서리에 위치한 4각형의 작은 2개의 종탑은 외부주계단 옆의 높은 탑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는 연관성을 갖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지상 2층의 대전례 공간의 단면형태는 중앙통로를 향하여 올라가는 지붕모양의 천장을 만들고 상부에서 은은한 빛이 투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단 윗부분은 더욱 상승시키고 남측으로부터 스테인드 그래스를 통한 빛의 투과로 전례공간의 중심으로 더욱 신비스럽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금년 가을 착공예정인 이 성당은 앞으로 10,000여명의 신자공동체가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종교건축물로서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눔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 ① 조감도
- ② 배치도
- ③ 남동측 입면도
- ④ 남서측 입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모형사진
- ⑦ 지하 1층 평면도
- ⑧ 지하 2층 평면도
- ⑨ 1층 평면도
- ⑩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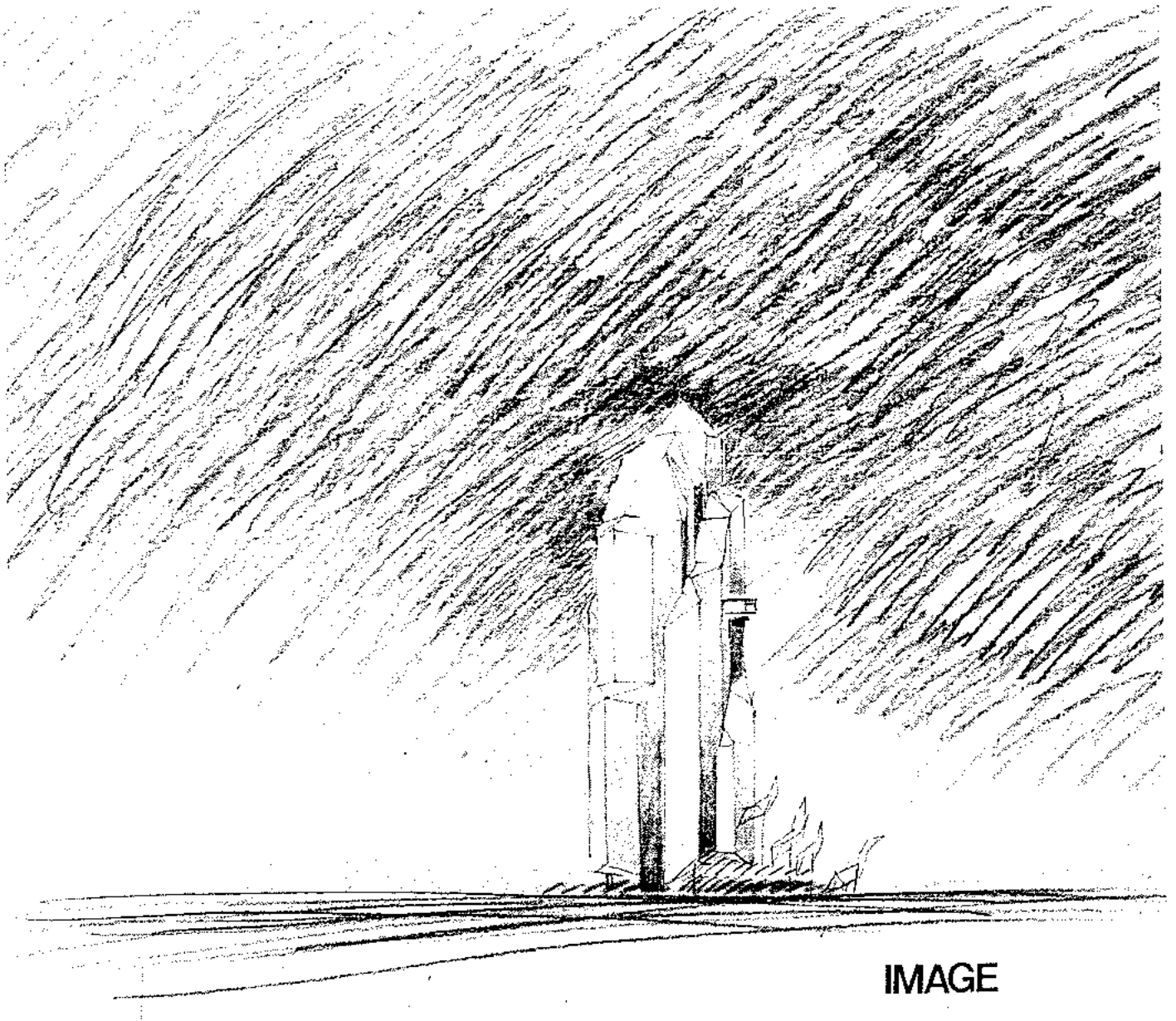
⑩

대구 N-빌딩

Taegu N' S Building

承孝相/종합건축사사무소 TSC

Designed by Seung, Hchich—Sang



IMAGE

이미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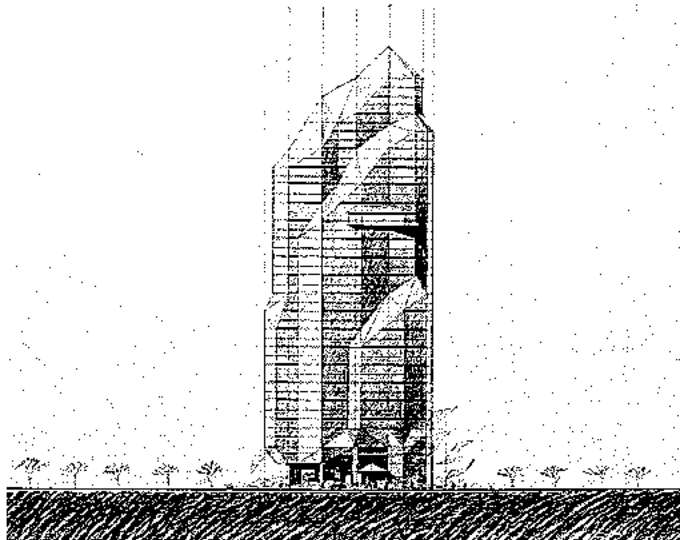
“ARCHITECTURE

■To experience architecture is like going through the ages painting a self portrait of our spiritual thoughts and feelings ■To be part of a power that is so strong that only you can appreciate its qualities and assure the continuation of existence ■Without man there is no architecture. It is through human inspiration and circumstances that a structure is born ■Architecture has no age but lives eternally once created ■Architecture has no language except the spiritual language of its participants, and their ability to inspire one another ■Its generosity can never be taught bu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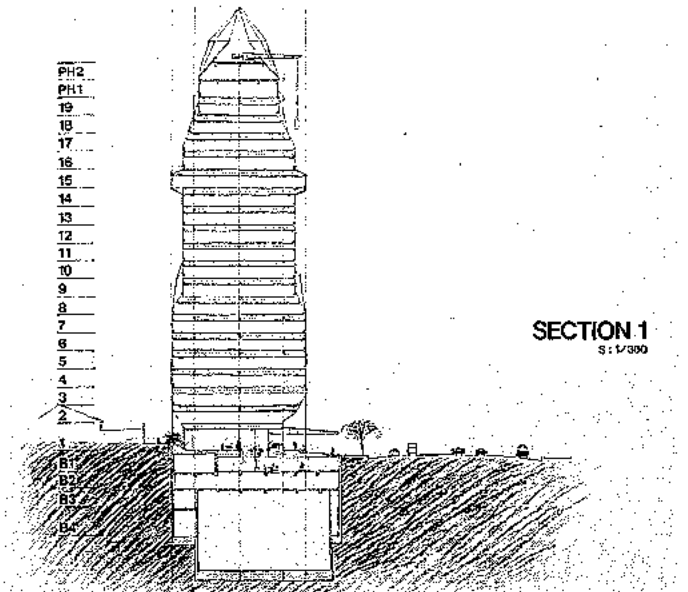
rather an offering to each person, as architecture is an offering to mankind ■A new form is given by very few people, individuals of their own time. Common to each is an honesty and devotion to their work ■With their struggle, the human environment is formed. To experience architecture is to sense the mood of joy within our surroundings. To take part in it, but at the same time to add, with our own personality to the power that is present within the “room” is an essential quality of man■

-Sverre Fehn의 The thought of Construction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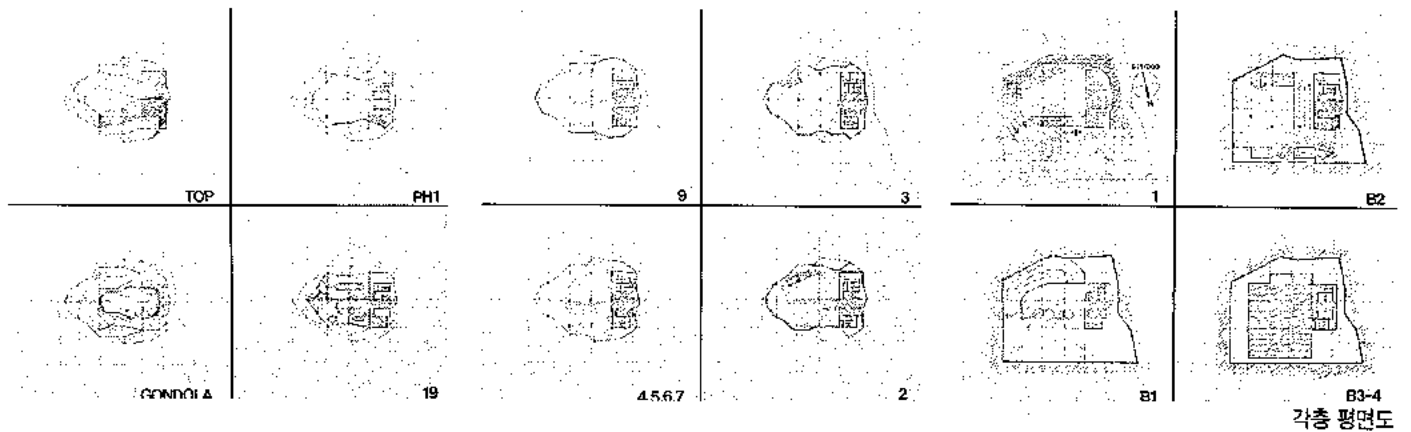
2년전에 구상이 끝난 이 건축은 끝내 지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 건축은 마산성·당경동교회·구마시·민회관 그리고 변동교회와의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최근에 노르웨이 의 건축가 시바어펜의 건축사상에 관한 글귀를 읽었을 때 불현듯이 계
 안을 다시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며 그 글귀를 원문으로 옮겨 적는다.
 비록 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투박한 대구의 도시성의 회복을 위하여 치렀던 투쟁의 상
 은 내영혼의 중앙부에 깊이 패여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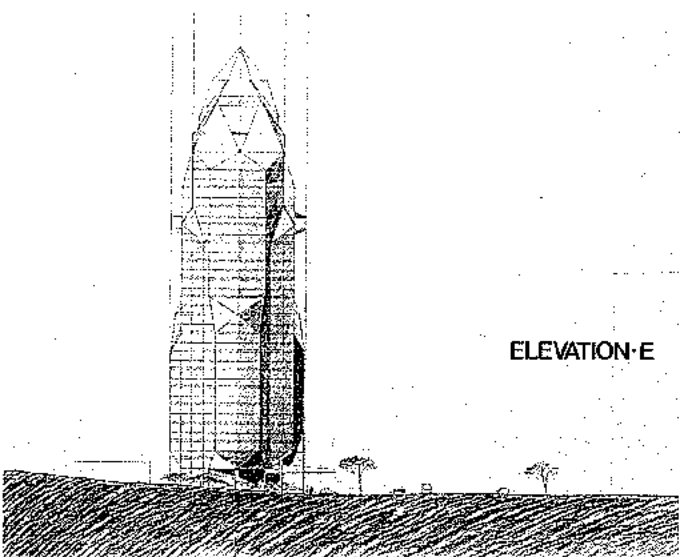
입면 스케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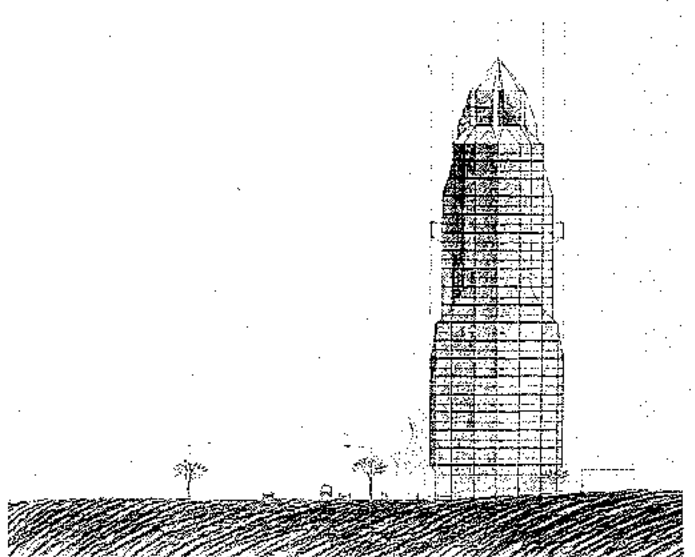
단면 스케치



각층 평면도



입면 스케치 II



입면 스케치 III

분당 신도시 주택 설계 전시회

Boondang New Town Housing Design Exhibition

—한국의 주거문화 1994

열린 새시대 환경에 즈음하여, 우리 삶의 주거환경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다가오는 사회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요구함에 따라 좀더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시, 미래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전람회가 개최되었다.

변화와 개혁의 상황인식 아래 분당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쾌적한 도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주거문화 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코자 국내 유수 건축가 21인을 초청, 주거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이번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30일(화)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1층 로비에서 있는 개전식에 이어 '한국의 주거문화 1994'라는 주제로 4월 11일(일)까지 계속됐으며, 전시기간 중 참여작가의 작품설명회가 함께 있었고, 4월9일 오후 1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 가족제도의 주거문제'라는 주제로 김태현 교수(성신여대)의 강연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안건혁 국토개발연구위원의 사회로 예술의 전당 서예관 강당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여,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두의 우리 주거문화의 향방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실성이 결여되고 공유된 건축적 인식이 부족했던 어제의 건축을 반성해 보고, 또한 건축과 도시의 조화문제 등 우리 사회의 건축과 주택 문제야기의 동기유발과 제언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란에서는 이번 분당 신도시 주택 전시회를 통한 그 의의와 제반 문제에 대해 안건혁박사(국토개발연구원)와 김인철(인제건축)회원 그리고 박연심(장원건축)회원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註〉

분당 신도시 건설과 주택 전람회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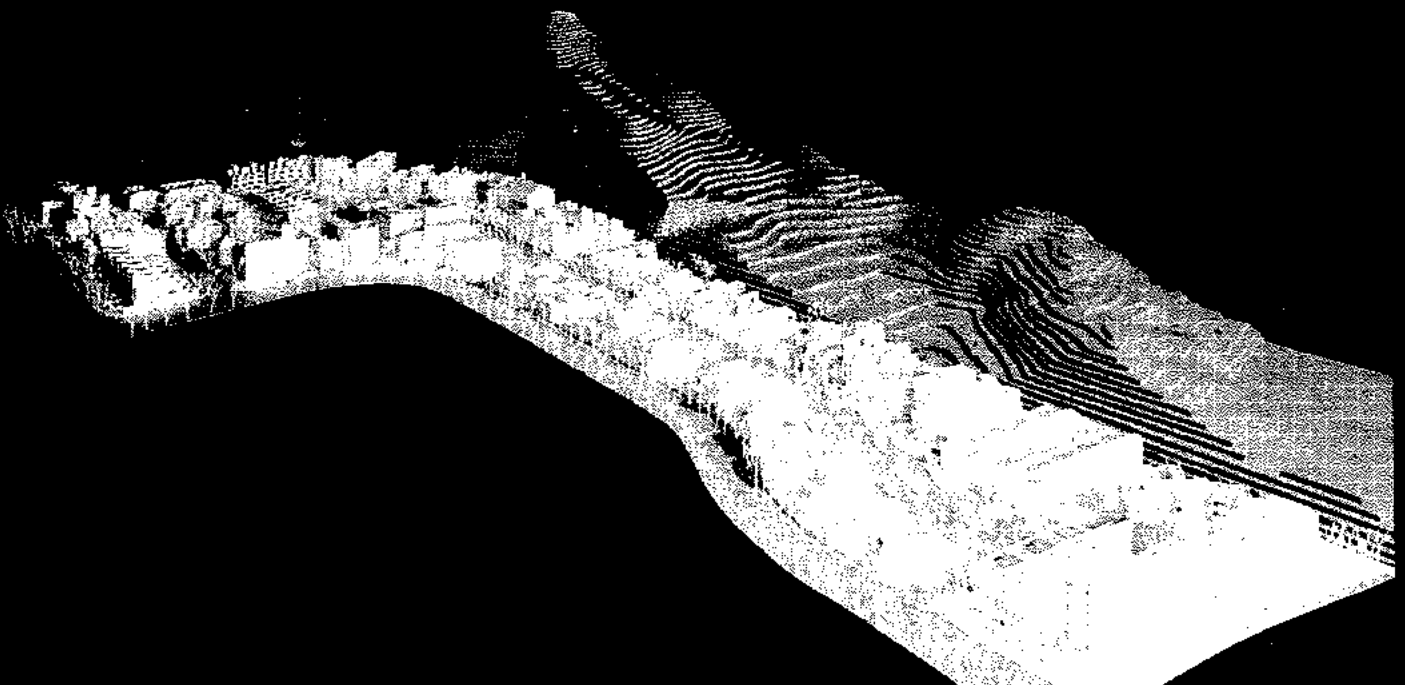
安建赫

신주거 문화의 시금석

朴研心

「한국의 주거문화 1994」에 대하여

金仁喆



종합배치도

분당 신도시 건설과 주택 전람회의 의의

Significance of Boondang New Town Housing Exhibition

安建懽/국토개발연구원 연구실장

by An, Kun-Hyuk

소득의 증가와 시간적 여유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을 높여준다. 이삼십년간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 일하고 힘써온 덕택으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삶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게 됨으로써 자연히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던 대기오염의 문제가 여론에 의해 크게 대두되고, 수질에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원하게 한 것은 차량 보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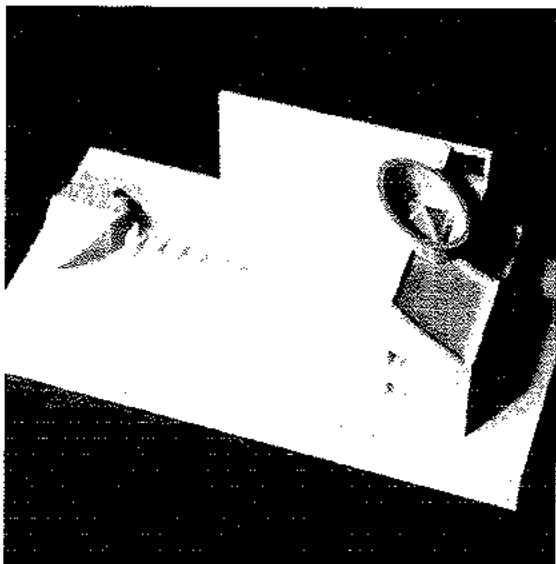
차량을 소유하든 안하든 간에 출퇴근 시간마다 곤혹을 치르는 도시민들에겐 교통이 편리한 신시가지, 환경이 좋은 교외주거지에 대한 동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쾌적한 환경의 질이 보장되는 교외주거지의 개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혹 있다 하더라도

좋은 학교, 직장,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데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계획적 신도시개발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노력은 동서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으며,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신도시의 출현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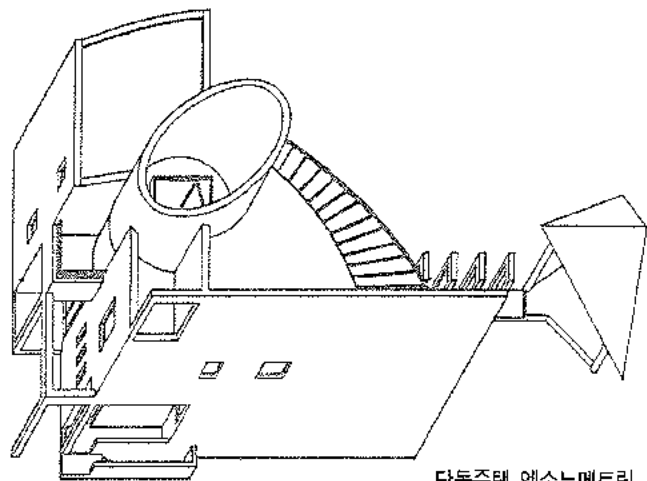
정부가 89년초 신도시 개발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데는 80년대 들어와 쌓여온 주택수요와 공급의 차질에 근본원인을 들 수 있다. 그간 주택수요는 인구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도 제6공화국 출범직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건설 200만호의 개발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8년도 일년간은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주택의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은 거의 중단되어 가는 상태였다. 택지의 가격은

몇차례에 걸친 투기열풍으로 급등하였고, 반면에 공동주택의 가격은 통제되어 도시내에서 주택공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중산층 이상이 많이 모여사는 강남일대에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량의 주택공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가격은 특정지역의 대형주택이 선도하여 급등하게 하였고, 그 여파가 확산, 전국에 미쳐 사회적인 불안까지 야기시키게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응급처방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는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한 새 주택도시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5~6개 후보지역을 검토한후, 대표적 신도시로 분당과 일산지역을 선정하였다.

신도시건설은 그간 정부의 무리한 계획실천으로 야기된 수많은 시행착오의 그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에도



단독주택 모형사진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강석원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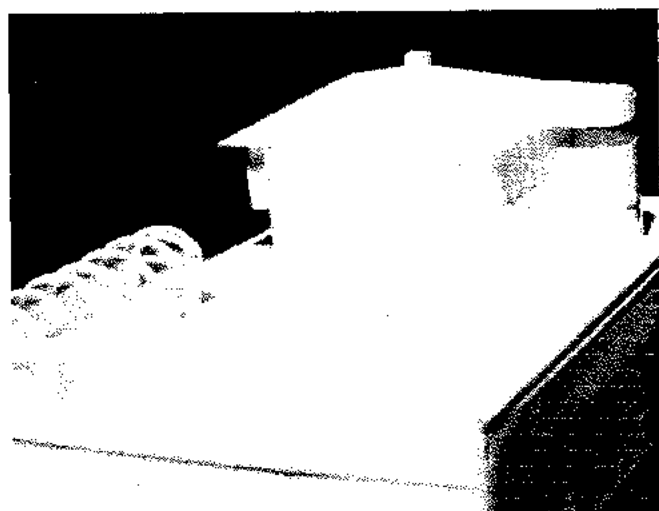
불구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몇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신도시의 개발이 서울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진 문제해결 차원의 조치라고 전제할 때, 교육, 문화, 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의 인구와 기능이 장래 수도권 외곽과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도시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기존도시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있는 만큼, 새로운 도시는 과거의 신도시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규범도시로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에는 계획가나 설계가가 그토록 주장해 왔던 각종 도시계획상의 원칙이나 기법 등을 실제로 반영함으로써, 신도시자체가 도시계획 및 설계의 산 교육장이 됨은 물론,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도시를 이해하고 좋은 환경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터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개발은 처음부터 정부의 주택 대량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긴 하나, 인구 40만의 대규모 신도시로서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개발의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최근 들어와 국제적으로도 신도시 개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당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가들간에 지대하다. 또한 이러한 관심속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모습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문화·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되어온 개발의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먼,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것은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성장 즉 물량공급에만 급급해온 주택정책의 편향성과 이에 익숙해진 일반 국민의 주택에 대한 보편적 인식, 그리고 건축가들의 건축으로서 주택에 대한 관심도와의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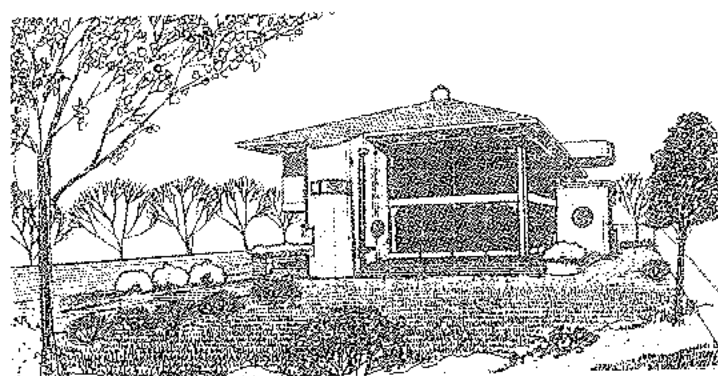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서, 분당신도시 개발의 의의와 기념성을 살리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일련의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이들 계획은 신도시의 설계자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안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한국도시개발공사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실현되게 되었다. 첫번째 계획은 시범단지 현상설계이었는데, 주택전람회는 시범단지 현상설계에 이어 주거에 관한 두번째의 큰 행사라 할 수 있다. 사실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내전 슬로건이나 세인의 관심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인구밀도, 공사비와 분양가, 계획과 건설기간, 작품의 선정방법 등에 있어 이미 제약된 여건하에서 어찌면 예약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창조'라는 계획의 주제는 현실과는 타협으로 초고층건물만 양산한 채, 별 의미 없이 끝나버렸으며, 이제는 주택전람회만이 이 주제를 실현시키는 과제를 떠맡게 된 셈이다.

주택전람회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분당이라는 거대한 주택의



단독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투시도

공일곤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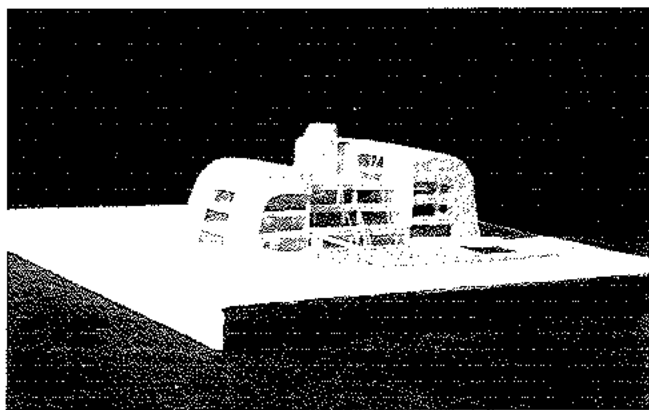
집단을 건설하면서, 최근 우리 주거문화 변화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어쩌면 그 외의는 더욱 중차대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경제지상주의와 함께 만연된 배금사조 속에서 주택이 부속적의 도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급격한 도시화, 인구의 대도시집중의 결과로 도입된 현재의 공동주택의 모습은 어쩌면 시대적 산물로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그리고 지속적인 진전은 전통적인 마을은 물론 가족의 개념까지도 허물어가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독신자세대의 증가, 여권의 신장과 사회참여, 국제화와 정보화 등 변화하는 여건은 우리의 생활과 주거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 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주택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주택전람회는 우리 주거문화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현시대의 과도기적 양상을 탈피하고, 2000년대에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주택의 이상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주거문화가 상실되면서 대체되어 온 획일적이고 물개성향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으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시대에 다양하고 풍요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비전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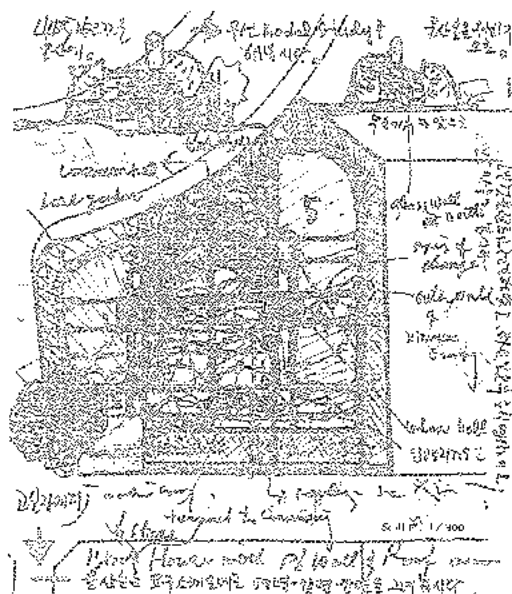
주택전람회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행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그리고 도시개발주체가 함께 만들어 내는 첫번째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간 수많은 신도시와 신시가지가 개발되어 왔으나 여지껏 한번도 계획가와 건축가, 개발자간에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분리되고 전문화된 이래, 계획가는 건축가의 좁은 시야를 맞고, 건축가는 계획가의 불이해를 비난해 왔으며, 개발자는 그들대로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비개성적이며 무절제한 도시환경에 참담하게 반영되어 있다. 도시계획은 건축의 창작의지와 개성을 존중하며, 건축은 공동의

선을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환경창조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때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더 나은 환경, 새로운 도시창조는 결국 참여하는 모두의 책임이며, 각기 다른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협조하고, 이해의 상충에 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택전람회의 추진은 건축가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가의 선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 행사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것인 만큼, 선정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을 우선 선임하고 그들에 의해 추천토록 하였다. 선정위원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되 건축 3단체 임원, 건축잡지사 편집장이 추천하는 건축비평가(각 3-4인), 서울소재 대학건축학과교수(각대학 1인), 청년건축인협회 및 여성건축가협회, 일반건축사(40세이상 무작위 추출)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대표적 건축가 15인을 선정케 하고, 그밖에 원로건축가, 청년건축가, 주택전문건축가, 여성건축가



공동주택 모형도



김석철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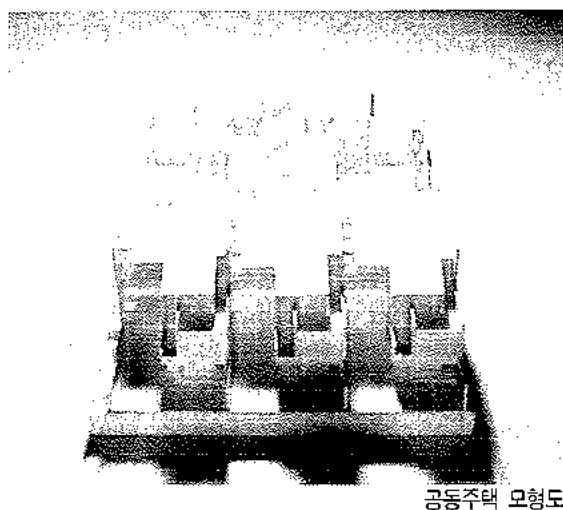
등을 3~4인씩 추천토록 하였다. 그 결과로 20인의 건축가가 선정되었으며 원정수, 지순씨 부부가 단일안을 작성하겠다는 양보에 따라 한사람이 추가로 선임되어 총 21인의 참가자가 결정되었다. 건축가가 이념을 같이하는 동인그룹이거나 같은 연령계층도 아닌,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인기투표와 같은 형식에 의해 선정된 만큼, 계획상의 이념이나 공통된 양식과 표현기법은 처음부터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 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주택의 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이 요구되었다. 주택전람회의 성격이 건축가들이 실제 상황에서 항시 부담으로 느껴온 비건축적 제약의 굴레를 최소화하고, 창작의지에 따라 이상적으로 또한 자유롭게 설계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실험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정 건축주에 의한 상황설정은 배제되었으며, 그 대신 미래의 보편적인 중산층을 수요계층으로 가정하였다. 미래를 지향한다고 해서 공상적이거나 실 사회와 거리가 먼 눈요기 작품의 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지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또 주택시장에서의 공개적인 분양을 조건으로 하였다.

주택전람회의 대상토지는 개발계획상 연립주택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중 비교적 환경여건이 양호한 곳을 선정하여, 일반분양을 유보한 후, 도시설계를 통해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확보하였다. 마스터플랜의 작성에서는 필지의 분할과 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단지내부에 다양한 폭의 보차검용도로를 만들고, 도로 양편으로 20개의 단독주택과 같은 개수의 공동주택을 위한 필지를 분할, 배치하였다. 각 필지로의 접근은 한 단지로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도로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시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물의 용적률은 최대 90%로 제한하였고, 담장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였으며, 인접하는 대지와와의 경계선에서 상당 거리 이격시키도록 하였다. 그 밖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일반적인 법규에 따라 건축가가 결정토록 하였다.

이번의 주택전람회는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설계되고 지어진 주택을 전시를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고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우수한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만든 40개의 주택들은 앞으로의 우리 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분당도시는 물론 앞으로 개발될 여러 신시가지들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로 지어지는 주택단지는 장래 우리 건축문화의 새로운 실험장으로서, 살아있는 건축교육의 현장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공동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모형도

김인철 作

신주거 문화의 시금석

A Touch of New Housing Culture

朴研心/건축사 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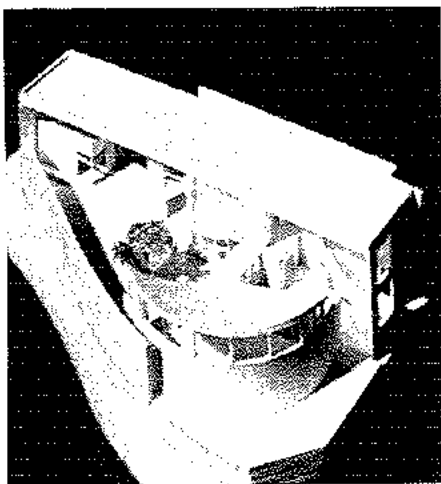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분당신도시개발은 인구 40만의 대규모 신도시로써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유례없는 계획개발이었고 이제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기간의 시행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으나 인구에 적절한 도로망계획과 공공시설의 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인구분포는 도시의 전체 용적을 180%정도로 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중심부는 고밀도로 외곽은 저밀도로 계획되었으며 주거의 형식은 아파트주거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층연립, 타운하우스, 독립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당신도시의 고층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친지 한분이 '분당에는 골목길이 없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재미없는 도시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면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군에 놀라게 되는데 무슨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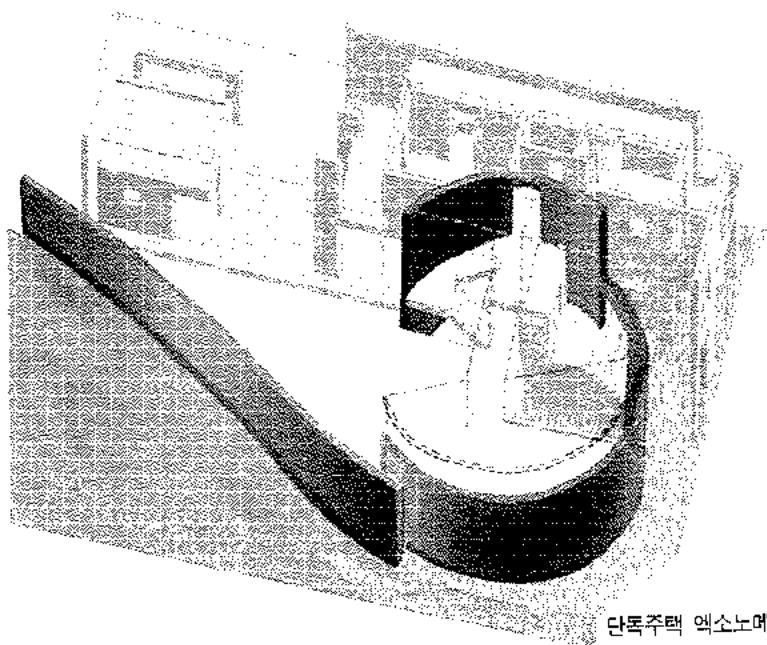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같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도시에서는 자연의 지세와 방위가 그대로 살려진 동네, 어찌면 민중속에서 암암리에 사용되어 왔던 풍수지리까지도 읽어 낼 수 있을 것같은 골목이거, 계단, 돌담들, 처마의 모양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그 하나 하나는 필연적 조건들인 것이기에 아름답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들인 것이다. 그러고보면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들이라는게 그저 아침에 서울로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문자그대로 잠만자는 도시 'bed town'의 기능으로써 고층아파트의 숲을 양산하는 정도로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야심적인 분당신도시 설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런 주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적인 프로그램들이다.

미래지향적이며 독창적인 예술성을 고취시켜 신도시로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가문화 부분에서는 쇼핑레저 단지를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참신한 계획안을 선택한다거나, 단천을 복개하지 않고 정수시설을 하여 경관을 살리려고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환경예술 부문으로는 단지내에 상징조형물이나 조각물을 놓도록 하고 가로시설물의 설계와 아름다운 다리놓기, 아파트단지의 외부색채계획, 예술의 거리조성에 힘쓰고 있고, 공공도서관, 과학박물관, 주택박물관, 건설기념관 등의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 부분 등에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범단지의 현상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조성과 단독주택의 단지화, 주거단지 지상부 공원화계획, 꽃길조성 계획 등과 함께 그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전람회를 계획했다. 이러한



단독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박연심 作

신도시개발의 기념성을 살리고 후세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건축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갖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당신도시 주택전람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도시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져서 고층빌딩군이나 도로망, 심지어 코카콜라선전탑까지 한 몫을 해서 과연 어느 도시에 와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문제는 도시가 당면한 세계적 경향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분당이라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고유성(identity)'을 생각해 본다. 상업용 건물들은 그 기술적, 기능적, 경제적 제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는 하지만 서울같은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마저 그러한 역사적 흔적은 점점 빌딩숲으로 가리워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오래지 않은 신도시에서라도 그 도시의 고유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역사적 장소이외에 아마 이런 동네, 주택단지 등의 주거환경 부문에서 일 것이다. 특히 다량생산에 의한 아파트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립주택단지,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의 저밀도 주거공동체에서 있어서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삶의 흔적과 자연과의 관계가 남은 곳은 역시 주거에서이고, 아무리 현대화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담은 그릇이 바로 주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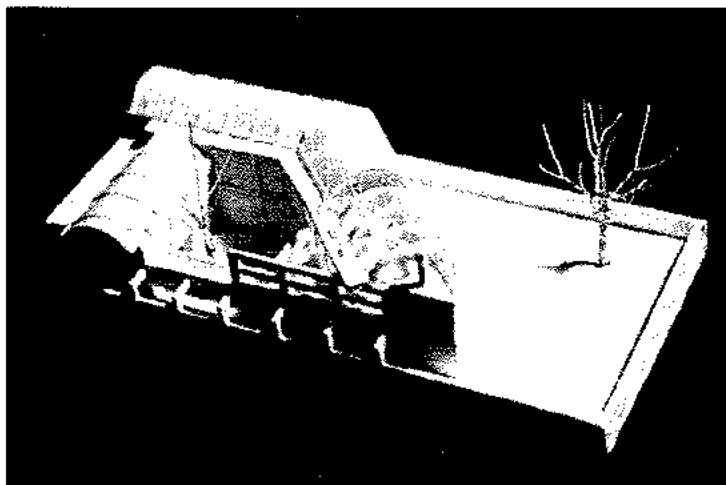
최근 실내장식용어에 무가구실내 'no furniture'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구를 파는 상점에서는 의자세트나 장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한 때 입식생활로 거실에 의자세트들로 채워졌던 것이 요즘은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좌식생활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 대대로 안방, 마루 등에서 살던 습관이 아직도 무의식중에 남아있어서 그런 좌식생활로 회귀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토록 삶은 보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의 도시주거문화를 생각하면서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분당이라는 신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주택전람회의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다.

분당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직선거리로 2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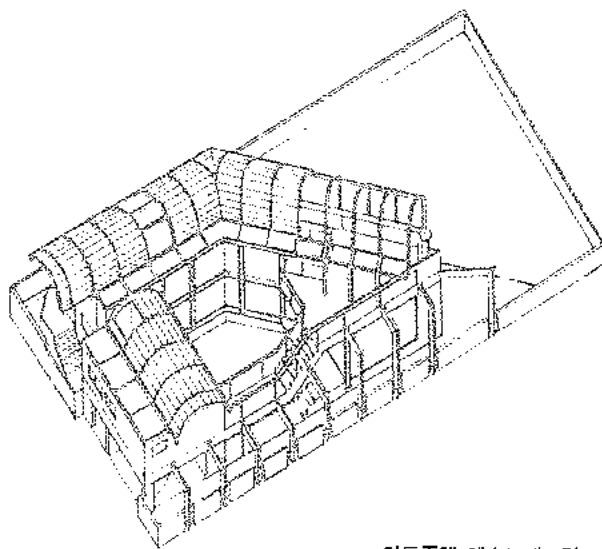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분당자체의 크기는 남북이 약 8km 정도이고 동서가 약 2km 정도 되는 580만평의 택지이다.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중간에 자그마한 구릉들이 있으며 계곡을 따라 서너개의 작은 하천이 동서로 흘러 탄천을 형성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부분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표고가 제일 높은 지역은 300~400m 정도 되고 개발구역의 표고는 100m에서 제한하고 있다.

계획될 대상지는 이 지역의 외곽,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특별설계구역 #3 : C-4, 6, 7블럭의 19,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전체지역에서 약간 외지다심을 위치인 중앙부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자연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지역이 만나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의 모퉁이 'Edge'로 자연과 거대한 아파트단지를 동시에 배경으로 갖는 단지이다. 가까이 서범단지와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고 남동, 남서쪽으로는 근린공원과 산이 맞닿아 있으며 북서, 북동으로는 고층아파트단지에 면해 있다. 남서쪽의 근린공원은 중앙공원의 녹지체계와 보행자도로가 연결되게 되어있다.



단독주택 모형도

류춘수 作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이런 단지는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기보다는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도시의 경험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상 대지의 대부분이 한쪽의 산을 깎아생긴 절개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자연스런 단지설계가 단순히 도면상에서 중앙공원의 연장선을 그은 것 뿐인지, 혹은 개발제한 표고가 100m였기 때문인지, 단지의 현장은 주택지가 되기에는 불리할 4~5m 이상의 절개지가 주로 일조방향인 남서, 남동방향으로 깎여져 있었다. 그것보다는 대지 전면의 근린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평탄한 평지—현재 작은 잡목만 있는—를 확장하여 주거지로 계획하고 산을 깎아내리는 대신 산의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20필지, 연립주택 20필지가 단지내 도로에 면해서 연결되어 길게 나열되는 식으로 계획되었다. 같은 의도,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지가기는 하지만 밀도가 다른 연립주택과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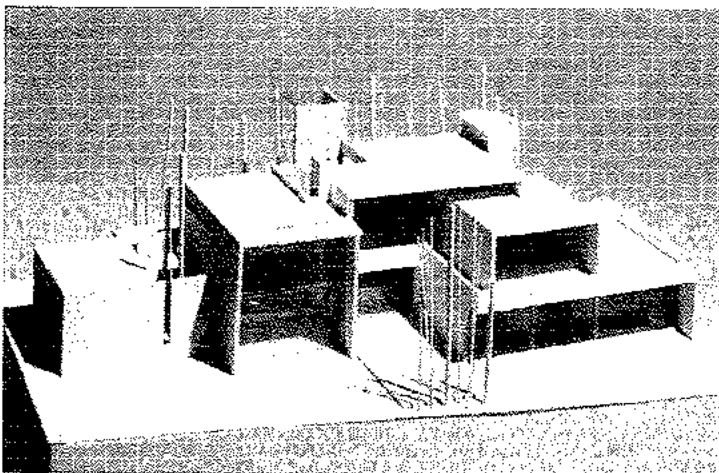
근린주구로써 가능한 20가구의 독립주택은 하나의 단지로서 따로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도시설계가 확정된 이후의 수정이나 변경은 매우 힘들어서 얼마간의 독립주택지가 옮겨지는 것에 그친 상태에서 추첨형식으로 각 건축가들이 계획할 대지필지가 결정되었다.

토지개발공사측이 제시한 이번 전시회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제시되어졌다. 기존의 이념과 양식을 탈피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정립과 새로운 마을개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고유의 생활양식을 담을 수 있는 주거의 제안, 자연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참여건축가들이 몇번의 회합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에서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토론되어졌고 선언문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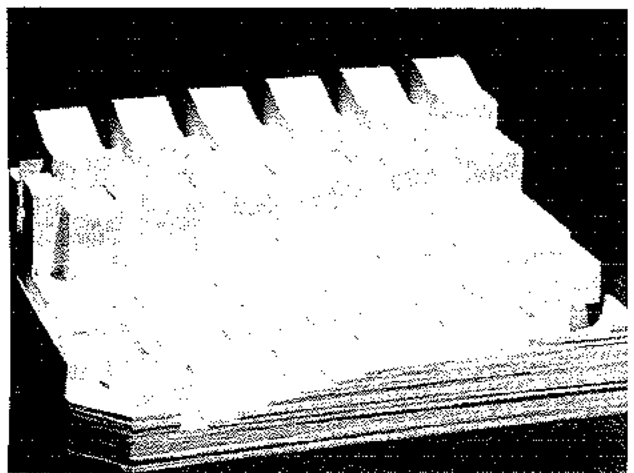
첫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이다. 비록 주어진 단지가 가진 현실적 문제 즉 위치, 길과 대지분할, 프로그램 등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위한 제량적 점검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케 하는 프로그램 설정에 부분적으로 미흡함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외곽도로, 거기에 이어진 단지의 내부 도로, 그리고 이 내부 도로와 각각의 집들이 만나며 또한 집과 집이 만나는 관계에 주목한다. 외곽도로, 내부도로,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연계되는 일련의 흐름을 공동생활에서 사적생활에 이르는 각각의 위계에 따라 명쾌하고 적절한 장소와 공간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의 다양함과 마을의 통일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해결하는 무대로 삼아 이곳이 생활의 공동체로 함께 사는 의미를 되새겨줄 인간성회복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둘째, 우리의 관심은 각각의 단위 주거에 있다. 각각의 단위는 주어진 대지조건, 법적제약, 단위의 규모 등이 현실적 제약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범적 대안을 제시함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참여 건축가들의 서로 다른 건축철학 및 관심의 차이로 하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인정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주거 형식을 이끌어 갈 그리고 맞이할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주장과 제안을 기대한다.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김종성 作

셋째, 우리의 노력은 이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능력에 적절한 기술 개발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건축공학의 학문적 성과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주거건축 자체와 그것들은 현장에서 소원해서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이제 생산현장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실제적 향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법, 재료, 기술에 대한 현실적 해석과 더불어 주택생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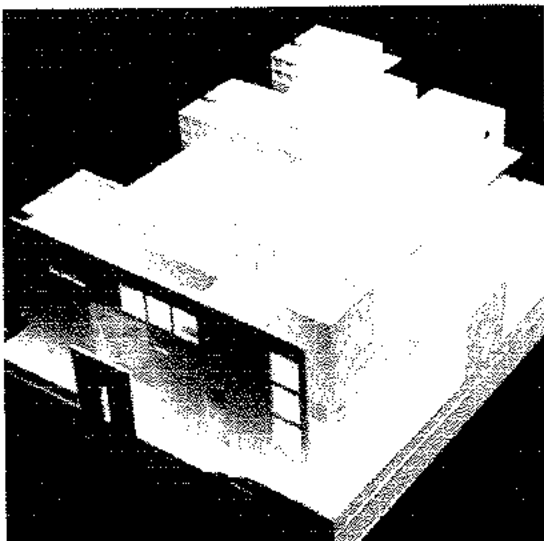
설계조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수를 설계자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중산층이상의 소득수준, 주택가격은 5~7억원정도 예상하고, 장년층~노년층대상으로 차량은 2대 정도 소유하고 가정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가정이라든가 동등... 단일 가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하며, 특별한 경우 2가구도 수용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의 이상적 형태와 기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규모는 대지 180~200평 정도의 규모에 건물의 면적은 100평이내의 조건이 주어졌다. 복층의 20m도로변의 담장은 높이 1.8m의 붉은 벽돌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지내 도로변 담장은 1.5m 이내의 목재와 생울타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연립주택은 수용가구를

6~18가구이하로 하고(분양가제한 20가구이내) 각각의 규모는 분양면적 50평 이상 100평미만의 규모로 층수는 3~4층이하이고 용적률은 90%로 제한되어졌다.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3m 이상을 띄우고 재료는 1m이하의 생울타리여야 하며, 주차장은 각 건물의 주거전용면적 합계 85㎡당 1대로 조건지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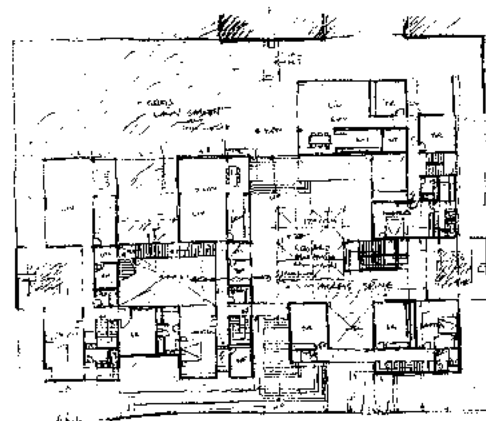
독립주택의 대지나 건물의 규모가 큰 것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때문에 마지막까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평형의 안배가 없이 건축가들 임의로 평수와 가구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하나하나의 대지 평수는 500여평에서 제일 큰 것은 930평이고, 세대수는 6~15세대가 되었다. 심포지엄에서 지적된 것으로 스케일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각 집의 평형의 크기가 너무 커서 어떤 것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론의 전책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큰 평형의 선호의 결과로 보면 회합의 중간쯤에 한번쯤은 평수조정이나 혹은 전체 프로그램상에 평형의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자책해 본다. 계획당시의 분위기는 주로 상품적인 가치로 어떤 평형이 더 인기가 있을까에만 초점이 모아져서 작은 평형의 경우는 수정을 요구할 정도였으니까.

단지 전체의 필지구획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단지가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기에는 대지들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지가 근린주구의 알맞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12~20가구의 모임이 이상적이고 그런 모임들의 연결이 하나의 동네를 만드는 것인데, 6~10가구의 작은 단지에서 각각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에서는 하나하나의 모임의 이미지를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지인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6~10세대의 작은 단지들이 모인 것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작은 단지는 15m도로에 의해서 구획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연속된 아무리 넓은 단지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단지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만의 도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만한 단지를 만들고자 할 때 건축주의 별난 요구도 없고, 밀도 낮은 용적에 특별설계구역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아름다운 마을, 걸고싶은



공동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평면스케치

송효상 作

거리를 꿈꾸게 된다. 요즘 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도보자의 낭패스러움을 우리들 모두는 안다. 걷고싶은 거리란 차의 통행이 없는 보행자만의 거리, 단지과 단지를, 단지과 도로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 도시적 탐험으로 가득찬 골목길 등으로,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꿈의 요약인 선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의 면적을 조금씩 줄이고(120~150평)연립주택의 평균 평수가 650평 정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지의 단지계획안에 따른 도로 및 단지계획고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난 후, 운영상 선결과제가 제시되어졌는데, 그것은 주택전람회의 성격을 개별건축가의 독립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하나의 쇼형식을 취할 것인가, 단지 전체가 공동의 주재하에 조화된 마을을 만드는 공동의 작업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와 함께 이 전람회의 테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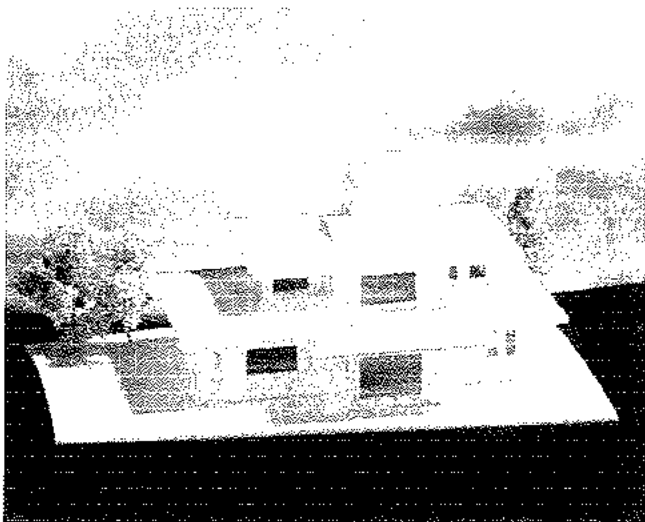
토지개발공사측은 설계자 선정위원을 건축관련 언론사 편집부장이 추천하는 건축평론가, 종합건축사무소, 서울소재

종합대학 건축과교수, 건축학회 및 건축관련 협회임원 등 총 113명의 각계의 건축관련 종사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그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득표 추천순으로 선정된 21인의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연대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념이 비슷한 것도 아닌 것이기에 몇번의 회합을 통해서 단지 전체가 공동의 주재하에 조화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어렵פות한 감지와 함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조화된 마을'의 기대이상의 욕심보다는 또 주택전람회로써 하나의 쇼형식이라는 평가절하의 방법보다는 적어도 도시설계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키고 싶다, 혹은 하고싶다, 실현시키고 싶다 라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단지 전체의 흐름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커뮤니티시설은 어떤 것을 두자라든가 단지들끼리의 유보도로를 연결하자든가, 각 단지는 각자의 대지경계선을 둘러쌓는 폐쇄형을 취하지 말자든가, 주 도로쪽으로는 공공을 위한 여분의 공간을 만들자든가, 그러한 공간이 꼭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린 공간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자든가 하는 등의 주거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의미회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공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지침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건축가에게 이런 기회란 자신의 꿈을 펴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좋은 장이다. 현실에서 부닥쳤던 많은 제약들이 제거되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삶의 선택과 가능성, 다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특정건축주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가가 자유롭게 상황을 설정하고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 계획이념에서의 새로운 정립, 기술적인 공법, 재료사용의 아방가르드적 시도, 개념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총합될 수 있는 디자인 등... 그러나 한가지 이런 계획안이 주택시장에 내놓아야 할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상업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현실과 타협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존관념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계획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난관과 준공이 되고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엄덕문 作

입주후까지도 발생하게 될 온갖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개념이야말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20개의 주택과 연립주택의 계획안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개념은 역시 마당, 길, 중정 등의 테마이다. 그리고 몇몇개는 분당이라는 위치를 정의하여 각자가 자기의 마당을 갖고 지상권과 지하권을 갖게 되는 타운하우스의 개념,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평면에 계단실형을 복합한 것,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아트리움이 있는 생태주택개념, 특히하게도 단지의 각 주호가 단지에 대해 폐쇄형을 취한 중층의 개념 등...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마당은 보다 입체적이고 이용도를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단선적이고 단순하며 이차원적인 선에서 끝난 것 같다. 인용하자면 '중정을 공동체에 대한 도상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통건축의 마당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다. 마당의 중요성은 공간상의 여백일 수도 있고, 그곳에 계획적이든 자연적이든 많은 사람이 다니고 접촉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배치에 의한 형태상의 기능외에 공간상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마당이 이웃 단지의

마당과 연결이 되어 있어 유보도로로써 아이들이 놀러다니거나 저녁을 마친후의 산책로로써 도시의 감각과 일상적 체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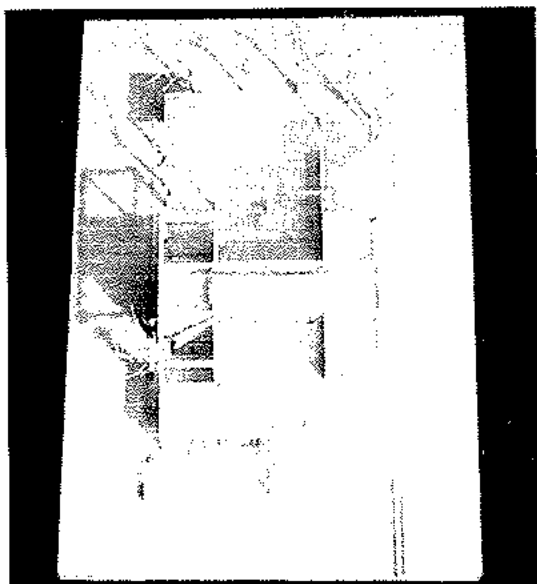
타운하우스의 개념은 여기에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례로 보아 순전히 타운하우스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약간 부리가 있지않았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용적률 90%를 맞추기 위해서는 2층으로 할 경우 건폐율이 45%가 되며 3층으로 할 경우는 건폐율 33%가 된다. 2층으로 할 경우는 그러나 앞마당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또 대지의 제한된 길이에서 세대를 팔라서 써야 하므로 충분한 폭(기본 폭 8~10m)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폭에서 용적률을 맞추다보니 건폐율은 거의 35% 이상이 되고 거기서부터 평면을 짜다보면 주용도인 침실이 3층으로 올라가거나 3층에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타운하우스만으로 구성된 계획안의 경우는 용적이 90%를 찾기가 어려워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단지의 법규적 측면만으로 본다면 타운하우스와 적층주택의 복합을 취하는 형식이 가장 고전적 해석이 될 것 같다.

삼세대주택과 핵가족을 위한 주택이

공존하는 단지, 가족간의 위계에서 아버지의 위상을 돈독히 해 줄 사랑방들의 출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이다. 가까운 미래의 재택근무제의 보편화에 대비한 것일 것이다. 또 전문직 가족을 위한 아트리에 등이 눈에 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근본적인 현실을 다루고 그것이 건축으로 표현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또 단지가 이웃간이나 가족간에도 폐쇄형을 취하는 계획안은 현대인의 새로운 생활상, 바람직한 생활상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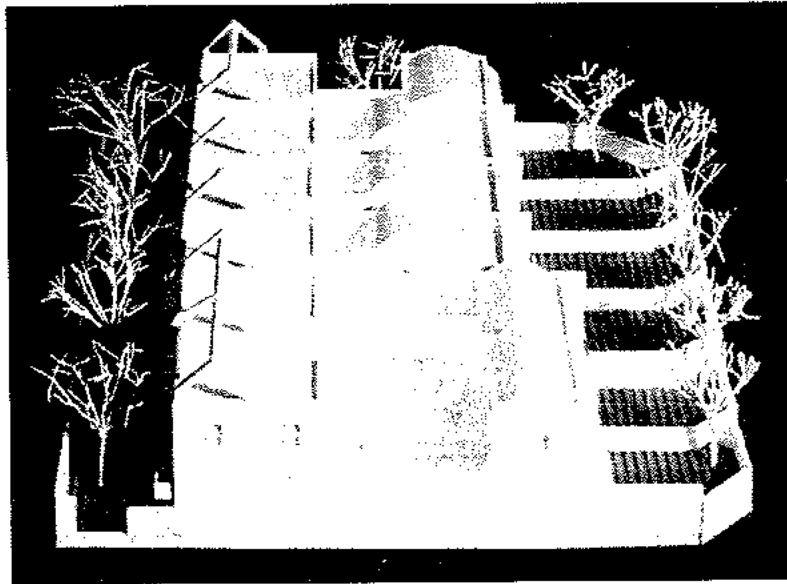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평면과 공간과는 다른 내부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를 가지며 다양한 변화를 가진 내부공간, 기능위주의 공간에서 불편하지만 빛과 어둠에 의해 색다른 체험을 주는 공간 등...

여기 주택전시회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여지는 이곳을 사는 각 개인의 삶의 양식과 감성이 같은 도시에 살지만 일년내내 한변도 우연하게 마주칠 수 없는 도시의 익명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해 살거나 여러가지 인연으로 가까워져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도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단독주택 모형도

윤승중 作



공동주택 모형도

「한국의 주거문화 1994」에 대하여

Korean Housing Culture in 1994

金仁喆/(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Cheur

■ 전시회

1993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전시회가 끝났다. 전시는 매일 성황을 이루었다. 준비된 카다로그 3,000부가 모자라 3,000부를 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400부는 턱없이 모자랐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연휴이 짧은 미술관이지만 관람인 수가 그간의 행사중 최대이었다고 한다. 전시장 한쪽 코너에서 매일 진행되었던 건축가들의 작품설명회도 예상과는 달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4월 9일의 심포지엄 또한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안전혁박사가 기획·조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최,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예전의 건축관계 전시회들과는 다른 반응을 얻었다. 그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신력이 부여되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분당이라는 실재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현실성의 의미도 크다. 참여한 건축가들의 다양성이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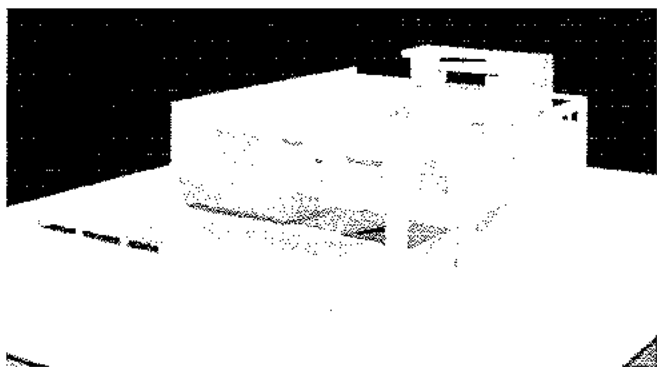
1994년 10월에 현장에서 전개될 주택전람회를 위한 시작에 불과한 전시회이었으나 건축계의 이벤트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일반인의 호응과 건축인들의 반응이 대단하였다고 하여서 전시회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예정을 살펴보았을 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분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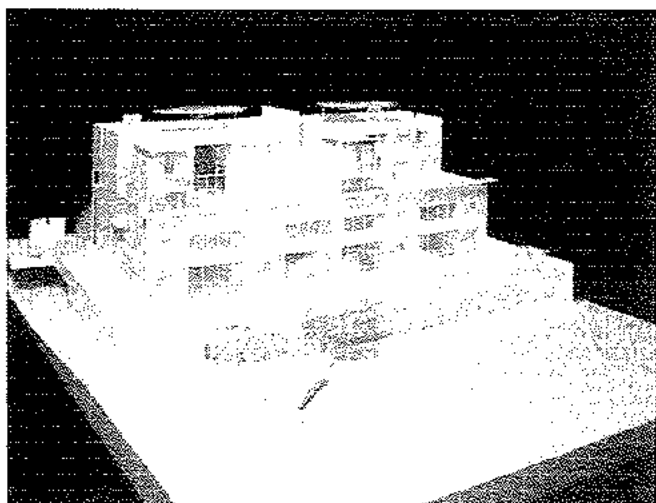
지방출장중의 일로 경부고속도로를 오갈 때 서울 근처의 동쪽편에서 거대한 도시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이 분당이라는 신도시임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곳에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 않은 건축인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렇고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마땅한 일감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일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는 건축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주체인 공공기관이나 땅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연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파트 설계의 노하우에 대한 축적이 없는 경우, 그곳에 뛰어 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치불감증에 걸린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듯 200만호라는 대규모 역사가 어느 일정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의 규범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보안법 위반에 버금가는 반역행위이기도 하였다. 수십가지의 규제와 오만가지의 간섭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해진 값만 받아서 그 중에서도 잇속을 챙겨야 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작품성, 주거문화 운운하는 것은 우이득경에 나름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저질러져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살벌한 도시만들기가 신도시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이성관 作

못한다는 실증을 분당에서 다시 확인하며 우리는 묵묵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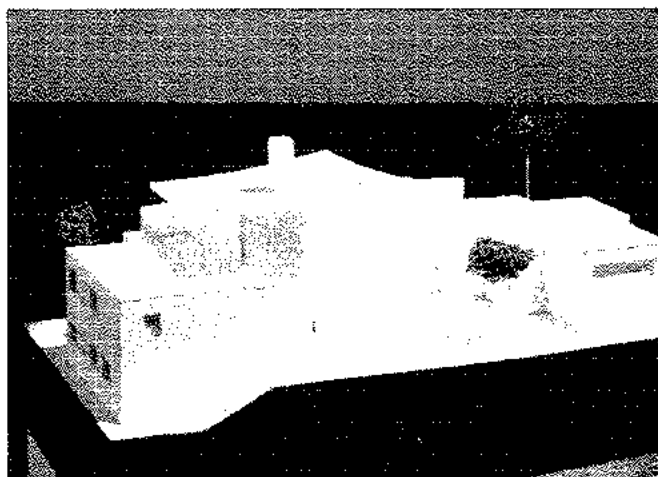
■ 토개공

한국토지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공사, △△ 공사 등등...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기관 정도로 알고있는 또다른 형태 관료조직에 대하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낙하산식 인사, 물러나는 관료들의 은신처, 제 편한대로 인간단체처럼 되기도 하고 관료체제로 굳어지기도 하는 이중성격 등이 그 편린들이다. 40만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분당을 개발하는 주체는 토개공이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는 공공기관이다. 얼핏 느끼기에는 정부가 만든 부동산 사업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민간에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땅 만들기가 가능한 곳, 그리고 일이 일어나 만큼 잡음이 없을 수 없는 곳일 것이라는 인상은 당연한 것일 터이다. 분당의 신도시 조성이 가시화 되면서 대중매체는 교통문제, 지역사회문제 등등...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째깍이 흘러나오는 신도시에서의 설계경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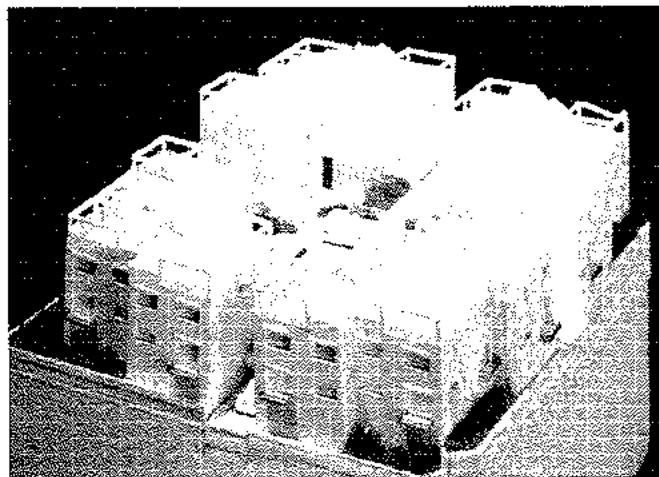
건축계의 참여는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겠지만 설계경기 행태에 대한 불신과 결국은 그렇고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포기감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흥미를 갖고 있고 재미를 가질 수 있는 부류의 관심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도시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였고 또 그렇게 되고 있었다. 40만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가 이렇듯 일사천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예는 현재의 지구상에 그리 흔한 일이 아니란 것이 해외에서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증명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는 이미 60, 70년대에 치루어진 지나간 일이었고, 후진국에서는 아직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비슷한 처지의 개발도상국들이나 표본을 찾으려는 후발국들에게는 좋은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관심에 대해 토개공은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에 대하여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시찰, 관찰, 탐방, 견학 등의 관심에 대하여서 개발주체가 보여줄 수 있는것은 오로지 양적인 수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을 벌리게 하기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 도시와 건축에 대한 고유의 개념과 새로운 시도가 없는 내용부재의 계획에서 수치의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간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단순의지한 것이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국번을 타개하기 위하여 토개공은 과감한 개념의 변환을 시도한다. 토개공은 『분당문화환경계획』이라는 도시문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신도시의 이미지와 지역성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의 방법으로서 주택전람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그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도시 설계과정에서 구체화되어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일단의 단지에 건축가들을 초대하자는 것이다. 토개공은 이러한 계획의 기획조정역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의 안건혁 박사를 위촉하고 분당사업처가 진행을 맡는 형식을 갖춘다. 신도시의 마스터플랜과 도시설계를 담당하였던 안박사는 이 계획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게 되었고 토개공의



단독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모형도

장석웅 作

설무팀은 하드웨어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1920년대의 바이센호프 주거단지와 최근의 넥서스월드 등 해외의 예와 같은 비슷한 경우조차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이 발상되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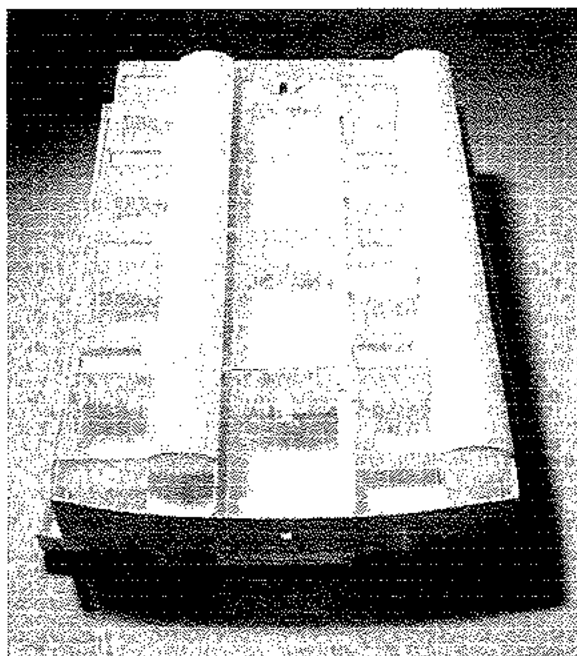
■ 선 정

작년 6월경 건축계에는 낯선 설문지가 돌려지고 있었다. 토개공에서 발송한 공문과 함께 실려있는 질의항목은 건축가들을 추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배경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충 보아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떤 건축가들이 선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들이 점쳐지기도 하였다. 발송된 설문지중 54퍼센트가 회수되어 빈도순으로 선정된 20명의 건축가는 개별적인 의사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정수+지순의 형식이 이루어져 열아홉이 되었으므로 한명이 추가되어 작가의 수는 모두 스물한명이 되었다. 주최기관의 공공적인 성격상 일반론과 보편성에 바탕을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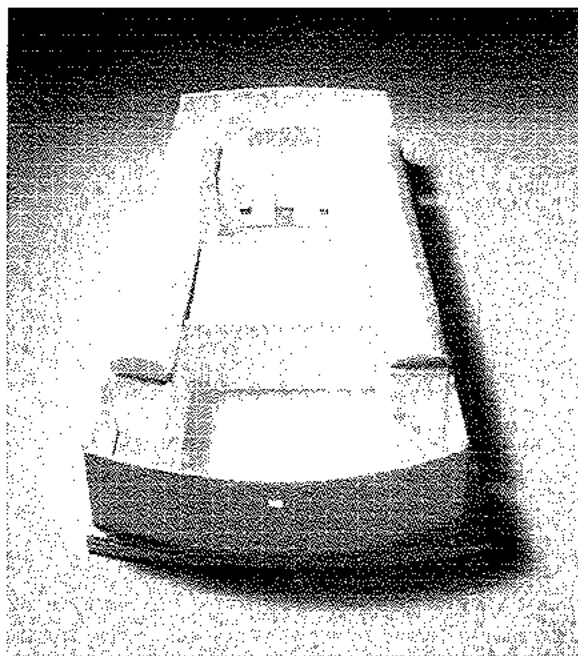
선정방법으로서 설문조사방법은 가장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건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성격 등을 특정한 기준으로 측정하여 선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설계조직이 아닌 건축가의 개별적인 거명을 완곡하게 주문한 설문자의 문항에서도 보였듯이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정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망라된 구성의 결과에 대해 한편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음을 숨길 수 없다. 여론조사형식의 결과치로서 당연한 것, 다시 말하면 보편타당한 모양은 갖추었으나 구성된 전체를 묶어주는 어떤 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계에 이러이러한 틀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원적인 구성으로 인해 결과로서의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과 밖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이 필요한가에서 부터 시작되는 논의는 그것에 대한 미련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다음의 행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건축가들과 토개공과의 첫모임에서 양측의 입장이 피력되었을 때 건축에 대한 인식수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정도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시된 방법론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이미 단지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화생이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건축가 선정이후의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의견 결정과 진행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토개공의 제안으로 마스터플랜의 손질과 진행상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을 구성하였다. 김석철, 김원, 윤승중, 조성룡, 황일인의 다섯위원은 윤승중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최측과 협의하여 설계지침의 마련, 마스터플랜의 조정, 필지선정 등의 진행작업을 하였다. 도시설계에서 정해진 규정을 검토하고 기왕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공통주택과



공동주택 모형도



단독주택 모형도

조건영 作

단독주택의 배치개념을 조정하고 작가별 필지선정을 하였다. 설계자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하나씩 맡게 되므로 두개의 프로젝트를 단지내에 갖게 되는 셈인데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의 구역구분으로 인해 각 지역내에서의 추첨방식이 채택되었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작품성향이나 작가의 개성을 고려하는 배치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와 더불어 더욱 힘든 일이었으므로 수순에 의한 진행이 되었다. 현장확인 모임에서 우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남쪽의 산자락이 잘라져 나간채 평면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다. 남쪽이 높은 불리한 지형이라는 것은 지도에서 읽혀졌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나 분당의 중심공원과 연결되는 산지가 도면상의 직선에 부합되도록 잘리어나와 맨 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사지인 자연상태로 도로만 손질되었다면 더욱 좋은 조건이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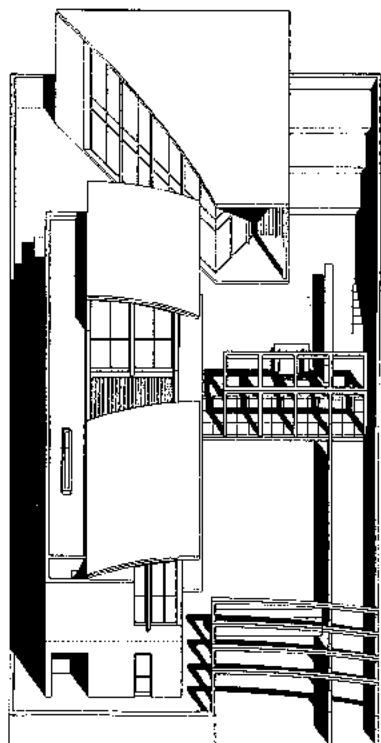
현장답사와 함께 조성룡씨가 바이센호프 주거단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필자가 일본의 텍스스월드 주거단지를 설명하였다. 분당 프로젝트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의미 그리고 그 진행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재확인한 뒤 각자는 자신의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작업

작가들의 작업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다. 스튜디오 내에서의 작업방식은 각자의 고유한 것이겠으나 그 개념과 결과들에 대한 것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진위는 매월 모임을 갖고 정리가 되는 작가부터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아마 이런 방식의 발표회는 비공개적인 그룹내의 경우외에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폐쇄적일 수 밖에 없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동료들 앞에 내어놓고 설명한다거나 따져 묻는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욱 어려운 것이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참석하기는 힘들었으나 각자의 의사표현과 그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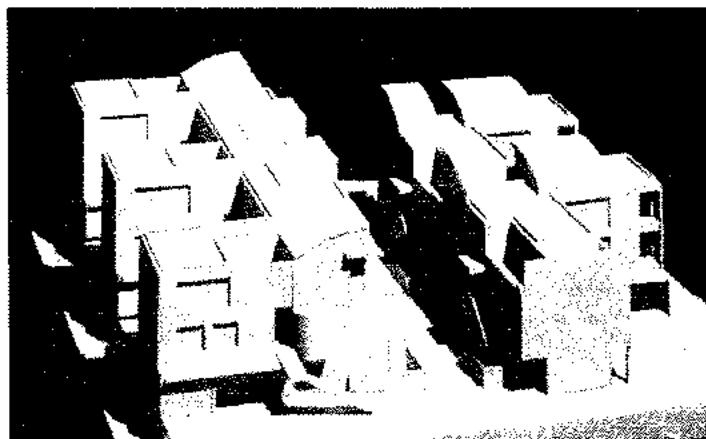
교환되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자극이 될 수도 있었으며 자기확인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1월의 텍스스월드 방문이 이루어졌을 즈음에는 각 작품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안건혁박사는 그 성과물들을 검토하여 도시설계 지침을 확정시키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계획안의 완성을 맞추어 내기 위하여 공을 들였다. 정리된 도면과 함께 만들어진 1:300의 모형이 강석원씨의 사무실에 마련된 배치도 위에 놓여지기 시작하였다.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단지의 모형을 보며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전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들이었으나 각자의 개별작업에서는 흩어져 있었다가 가시적인 형태로 집합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하나하나를 엮어 전체를 만들어내기에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확실한 결론은 맺지 못한채 도시설계규정의 보완과 각자의 건축적



조성룡 作

단독주택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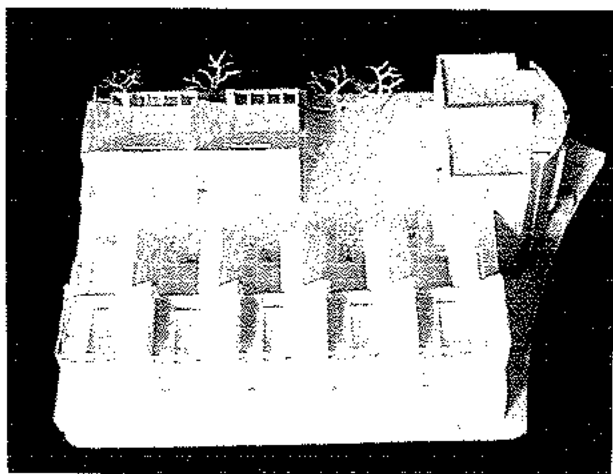
공동주택 모형도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해를 넘기며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이제는 전시회를 준비하여야만 하는 시기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전시물의 제작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전시회의 진행과 전시장 구성, 인쇄물 제작과 출판, 심포지엄 등 공동의 작업이 산적하여 있었다. 결국 전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시장의 구성을 승효상씨와 K. D. A. 가 맡고, 전체를 보여주는 1:200 모형제작은 필자의 사무실에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넘겨받고, 전시중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의 진행을 민현식씨가, 출판관계업무는 조성룡씨가 맡게 되었다. 카다로그와 포스터, 엽서 등의 인쇄물 디자인과 편집은 안그라픽스의 몫이 되었다. 홍보계획은 토개공이 일반매체와 건설업체 등을 담당하고 전문매체와 문화관련단체 등은 필자가 맡도록 되었다. 전시장 구성의 개념은 바닥에 타이핑으로 1:14 정도의 배치도를 구성하고 그 각각의 필지에 계획된 작품의 관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K. D. A. 에서 일괄제작된 프리스팬딩 패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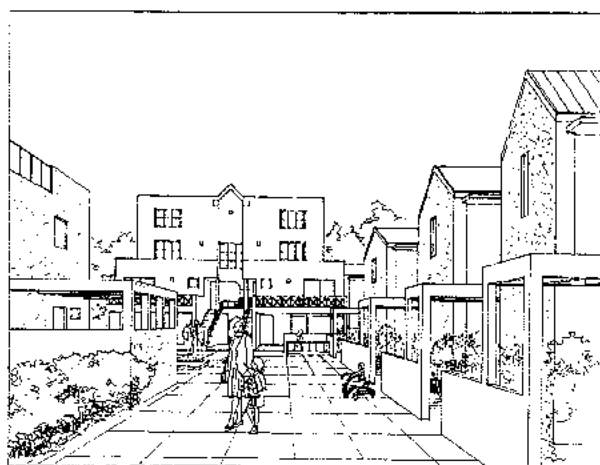
표현물의 구성은 각자의 기법에 맡기었다. 각자 준비한 8매의 슬라이드는 설명회가 없는 시간에 160매의 그림을 두개의 화면으로 비춰지도록 하였다. 설명회의 진행은 각자의 일정을 조정하여 무순으로 정리된 것이다. 전시장의 형편때문에 조명과 음향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였으나 기대박의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 같았다.

개인 설명회가 끝나고 열린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난관과 맞닥뜨렸다. 당연한 반응으로 예상되었던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강도가 워낙 거세어서 주최자인 토개공의 담당자들의 안색을 편치않게 만들었다. 김태현교수의 가족사회학과 주거형식에 관한 강연은 주거문화의 관점을 우리와는 또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어서 신선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뒤 이은 심포지엄에서 참가자인 김원씨, 서울시의 강홍빈박사, 시립대의 김광현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안건혁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 순서에 이르렀다. 건축가인 유철, 김준성씨,

성균관대학의 이상해교수, 건설쪽의 김병린씨, 건설부의 이필원국장 제씨로 이루어진 패널리스트들은 사뭇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여 우리를 긴장시켰다. 건축적인 면, 도시적 측면, 사회적인 시각 등에 두루 걸친 냉철한 비판은 솔직한 정도를 넘어서 냉소적이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필원국장의 긍정적인 시각의 발언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짚어보아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도 분명하지만 그 자리에서의 반론으로 대응하기에는 내부정리가 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의 전시회가 내년의 본격적인 전람회를 위한 시작의 단계이었으므로 다음의 기회로 미루어 놓아야 하였다. 어틀뒤 전시회는 마감되었다. 전체 모형은 분당의 현장사무실로 옮겨지고 각자의 패널들은 각 사무실로 철수되었다. 관중이 빠져 나간 뒤의 허전한 무대와 같은 전시장의 빈 공간은 하루전의 웅성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흔히 만들어 질 수



공동주택 모형도



공동주택 투시도

황일인 作

없는 이런 이벤트에서의 메시지가
관람자에게 어떤 뜻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궁금해 졌지만 전시기간 중에 수집된
설문지를 종합하면 잡혀질 운곽을
기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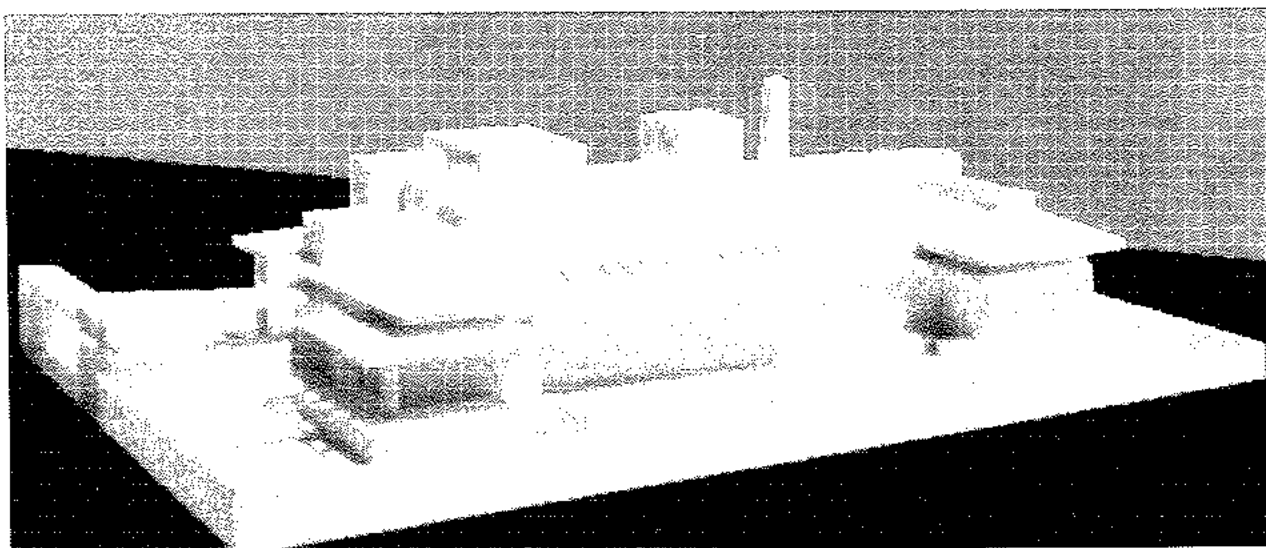
■ 예 정

이 작업은 개발업체의 참여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선정된 업체와 설계자의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다. 일년여에 걸친 지금까지의 과정은
사전봉사였던 셈이다. 참여의사가 있는
주택사업등록업체는 전시물과 제시된 도면을
토대로 작품을 선정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한 묶음으로 하여
작가별 선택을 하게 된다. 전시작품 중
신청업체가 없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람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제를 생각한다면 이윤추구의 차원에서
한발 나와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반응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지의 규모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계감리비용의 산정도 다르게 되고

시공단가의 차이도 있게 마련이므로 전체를
일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작가들 중의 일부는
개발업체와의 개별적인 관계보다 설계자들과
업체들 간의 단체적인 관계형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건설업체에 대한
본원적인 불신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의
조직력으로 대규모 회사의 조직과
상대하였을 때 작업의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토개공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건축가의 의도가 목적한대로
완성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설계비의
산정방법 역시 건축사보수기준의 최대치가
확보되도록 하여 토개공의 창구를 통하게
하였으므로 설계자들의 입지확보는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표출된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 때문이었지만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라는 건축작업의
상관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건축주의 무지, 건축가의
불성실, 시공자의 횡포 등으로 표현되는
상대적인 불신과 우려가 건축계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특히 개발주체인 건축주가 곧 시공자인
주택사업형태에서는 설계자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골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업체가 선정되고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감리와 시공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낙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자세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완성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의
전람회를 열어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계획과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말은 분야에 대한
전력투구가 있어야 하므로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시회에서의 반응에도 나타났듯이
작품=고가=호화라는 등식과
작품→복잡→낭비라는 인식이 이번 작업을
계기로 불식되었으면 한다.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과정은
필요할 것이며 이후의 관계정립을 위해서



단독주택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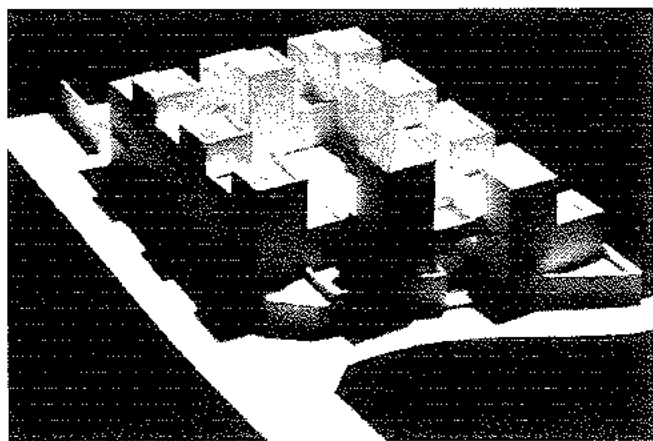
장세양 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단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인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대규모는 곧 사치라고 하는 일반론에 대하여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족제도와 앞으로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규모의 내용에 상관없이 외적인 것으로만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흑백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행위자나 관찰자 모두 좀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일의 성패는 결국 수요자인 일반인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대중적 인식수준을 위로 아꼈면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진 막대한 에너지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종래와 진부한 방법론에 약간의 손질만 한 것이 된다면 역시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것이며 획기적인 처리와 전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당치도 없다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 역시 실패한 것이 될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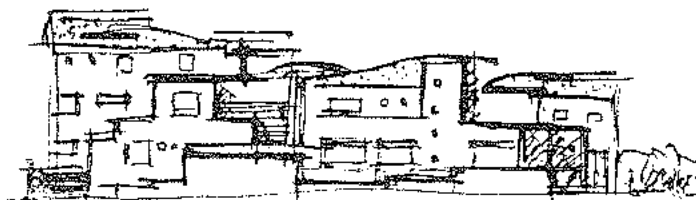
일반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난해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분양 카타로그와 투시도에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개념도와 추상적 표현들이 제대로 읽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축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의 문제, 다시말하면 제시된 도면으로 실제의 크기와 상황을 상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도 어지간히 힘든 것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처음부터 무리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시회의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인이었다는 것이 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최종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실제의 경험이 가능한 현장에서의 전람회로 미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집주인이 정하여졌던 기왕의 방식에 익숙하여 있어서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완성된 실물을 앞에 두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과 수요의 관계일 것이다. 이번 계획의 목적이 주거공간의 『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한번더 강조한다면 그것은 더욱 확실하여 진다. 우리는 완공전의 선분양방식 대신 완공후의 분양을 희망하고 있으나 또한번 관례를 깨뜨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주거공간을 실수요자가 두루 살펴본 뒤 자신의 가족구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요자인 일반인과 건축가 사이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제시된 디자인을 두고 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효과에 의하여 일반인과 건축가 사이에 교감이 형성되는 최종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축에서의 문화란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건너편의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과의 거리단축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러한 가능성이 예견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참여한 건축가 뿐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번 기획의 성과에 따라 뒤따르게 될 효과를 생각했을 때 일회적인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한 곳에 모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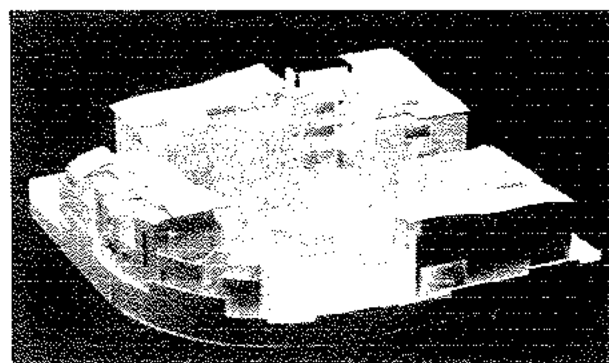


공동주택 모형도

김 원 작



입면스케치



공동주택 모형도

도창환 작

"P"빌딩 구조설계에 얹힌 이야기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李昌男/연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 - Nam

4. 구조체는 변질하지 않는다.

무시 못할 인물이 실적을 했다.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없을 때 그를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흔히 본다. ○○정책연구소장, ○○문제연구소장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때로는 성과도 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구조재료나 구조방식은 사람과 달라서 융통성이 없다. 분명히 횡력 지향에 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배열하고 이름도 붙여 놓았는데, 그래서 외력이 작용했을 때 끝까지 버티줄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다르다. 별로 저항하는 기색이 없이 항복해 버린다. 약속이 틀리다. 하지만 그 약속이란게 구조장이의 일방적인 작사방식의 기대에 불과했으며 구조체는 자기 능력에 맞게 힘을 쓰다가 주저앉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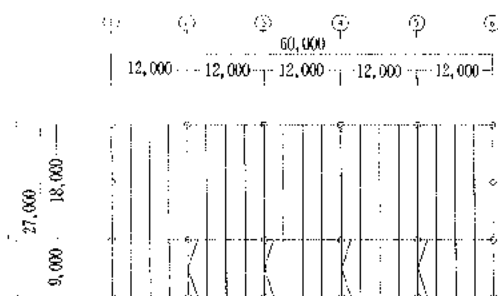


그림 5 P 빌딩 골조 평면도

그림 5(P 빌딩 골조 평면)에서 알핏 보기에 2,3,4,5열 9m Span 기둥열에 배열한 K-Truss(그림 6 참조)는 부난히 지진과 바람에 견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쉽다.

그같은 생각은 Elevator 나 계단실, 화장실 등으로 둘러 쌓인 벽체를 콘크리트 Shear Wall로 설계 시공했던 수많은 경험, 그것도 지상 층수가 기껏해야 20여층의 고만고만한 높이의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콘크리트 Shear Wall 이나 철골조 K-Truss 라면 내횡력 구조로는 만사 O.K.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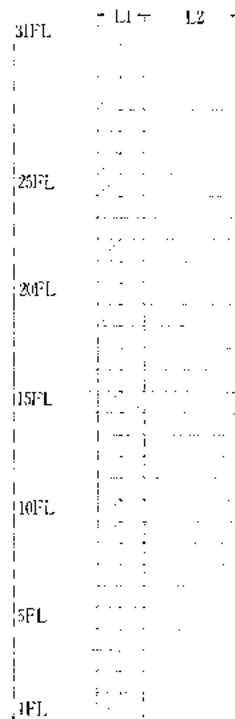


그림 6 30층 K-TRU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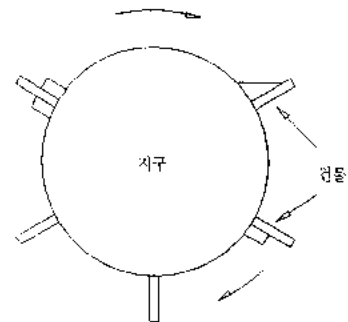


그림 7 건물은 지구에 고정된 CANTILEVER

다층아파트가 예외없이 콘크리트 Shear Wall로 설계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숫자놀이이나 적용방법을 오용(誤用)하여 억지 합리화를 조작한 구조계산서였음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른바 라멘구조(Rigid Frame)는 횡력에 별 불일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처음부터 "내횡력구조를 K-Bracing"등으로 지정해 버리기도 한다. (필자는 이 같은 행위를 구조체에 이름 붙여주고 계급장 달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무리 단단한 Shear Wall 이라도, 그럴듯하게 생긴 K-Truss 라도 높이(H)에 비하여 폭(L1)이 너무 좁으면 휘청거리서 횡력을 지지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다소 억지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아마도 동해안 절벽에다 그림 6의 건물을 얹혀서 붙여 놓았다고 가정해 보라고 하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나무랄 독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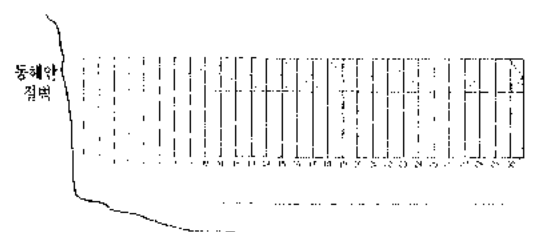


그림 8 30층 K-TRUSS

지구상의 모든 지상 건물은 지구에 Cantilever로 붙어 있으며, 지구가 자전 공전을 쉬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 조금도 이상한 생각이 아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림 8은 앞에 말한대로 그림 6을 동해안 절벽에다 붙여 놓은 그림이다.

눈대중으로 보아서 4~5층 짜리였다면 그런대로 붙어 있을 것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층수가 점점 많아져서 10층, 20층, 30층이 되면 K-Bracing이 배열되어 있다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구조상이지 아니라도 쉽게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P 빌딩에서는 실제로 그림 9와 같이 효율성이 없는 K-Bracing을 삭제 설계하였다.

K-Truss가 위 건물의 횡력 전부를 부담한다는 뜻은 위 그림 8을 더 간략화하여 그림 10과 같게 표현한다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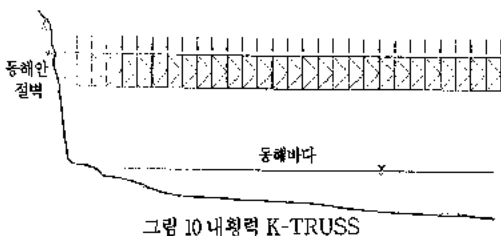


그림 10 내횡력 K-TRUSS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의도 63빌딩처럼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구조가 유행하며 이집트의 피라미트는 그 형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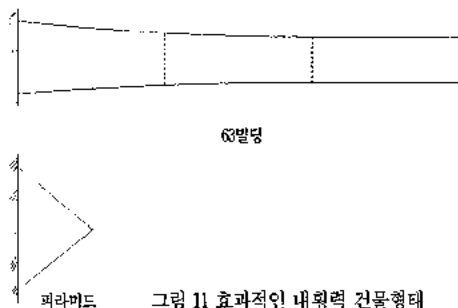


그림 11 효과적인 내횡력 건물형태

건물이 땅에서 있는 것과 동해안 절벽에 가로 방향으로 붙여 놓은 것의 구조상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건물 무게가 실제의 1/10~1/15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면 절벽에 가로 방향으로 붙여 놓는 것과 비슷한 응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같은 기본 개념에 익숙해지면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헛갈리게 하는 즉 Super-Structure, Mega-Structure, Belt Truss, Hat Truss 등의 구조방식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림 12에서 Truss로 짠 거대한 기둥과 보를 힘의 고속도로로 삼고 거기에서 작은 도로(작은 기둥 또는 보)들을 연계시키는 수법이다. 즉 작은 부재들로 엮어서 만든 큰 기둥과 보를 단일부재로 간주한 거대한 라멘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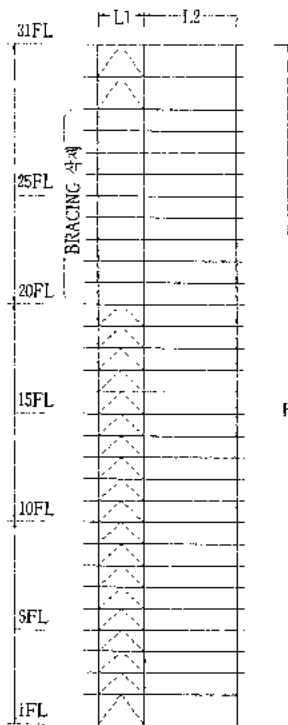


그림 9 K-BRACING 중 효과없는 부재의 삭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P 빌딩의 경우는 앞에 언급한대로 K-Truss 만의 효과로는 미흡하며, 특히 상부 몇개층에서는 K-Bracing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감히 속아내고 대신 건물 외벽에 면한 기둥과 보를 의도적으로 키워서 협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대수롭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서 소홀히 다루는 외부력의 기둥, 보를 내횡력구조부재로 활용했다는 뜻이다.

다시 그림 5로 돌아가서 4개조의 K-Truss 만으로는 X방향 횡하중을 전부 부담하기에 부족하므로 활용하게 된 것이 ①열과 ⑥열의 외벽 Frame이다.

이들 Frame을 역시 동해안 절벽에다 붙여 놓은 것이 그림 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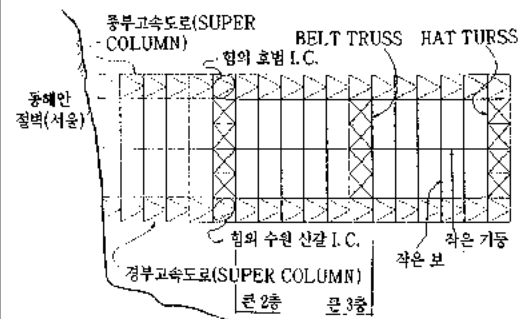


그림 12 힘의 고속도로 (SUPER STRUCTURE)

즉 연직하중만을 걱정한다면 ①, ⑥열에도 ②~⑤열처럼 18m Span 가운데다 별도의 기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그것을 추가하고 기둥, 보 단면을 다소 크게 하여 정부, 중부고속도로는 못되더라도 힘의 산업도로나, 고속화도로로 삼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같은 과정에서 건축설계 담당자와 합의만 된다면 매층 보 크기를 갈게 할 것이 아니라 2~3개 층마다에 큰 보를 설치하고 기타는 연직하중에만 견디게 하는 요령을 부려서 힘의 흐름 경로를 간략화 할 수 있다. 그같은 기법은 필자가 다층 철골조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Skip Floor Frame System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몇개의 주상복합건물들에 이 구조방식을 적용하여 곧 시공될 것임을 밝혀둔다.

이같은 복합적인 힘의 효율적 흐름방향 파악 및 대응책의 개발은 서울시 교통상황실 Computer 앞에 앉아 도로교통사정을 분석하는 전문가처럼 고도로 훈련된 구조기술자라야 가능하며 제 아무리 잘 된 Computer Program 이라도 알아서 답을 내 주지는 못함이 유감스럽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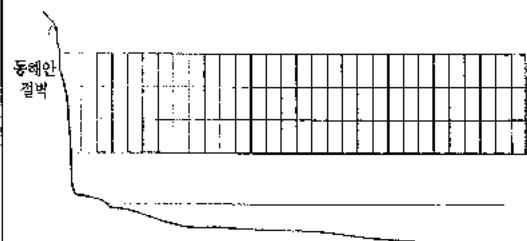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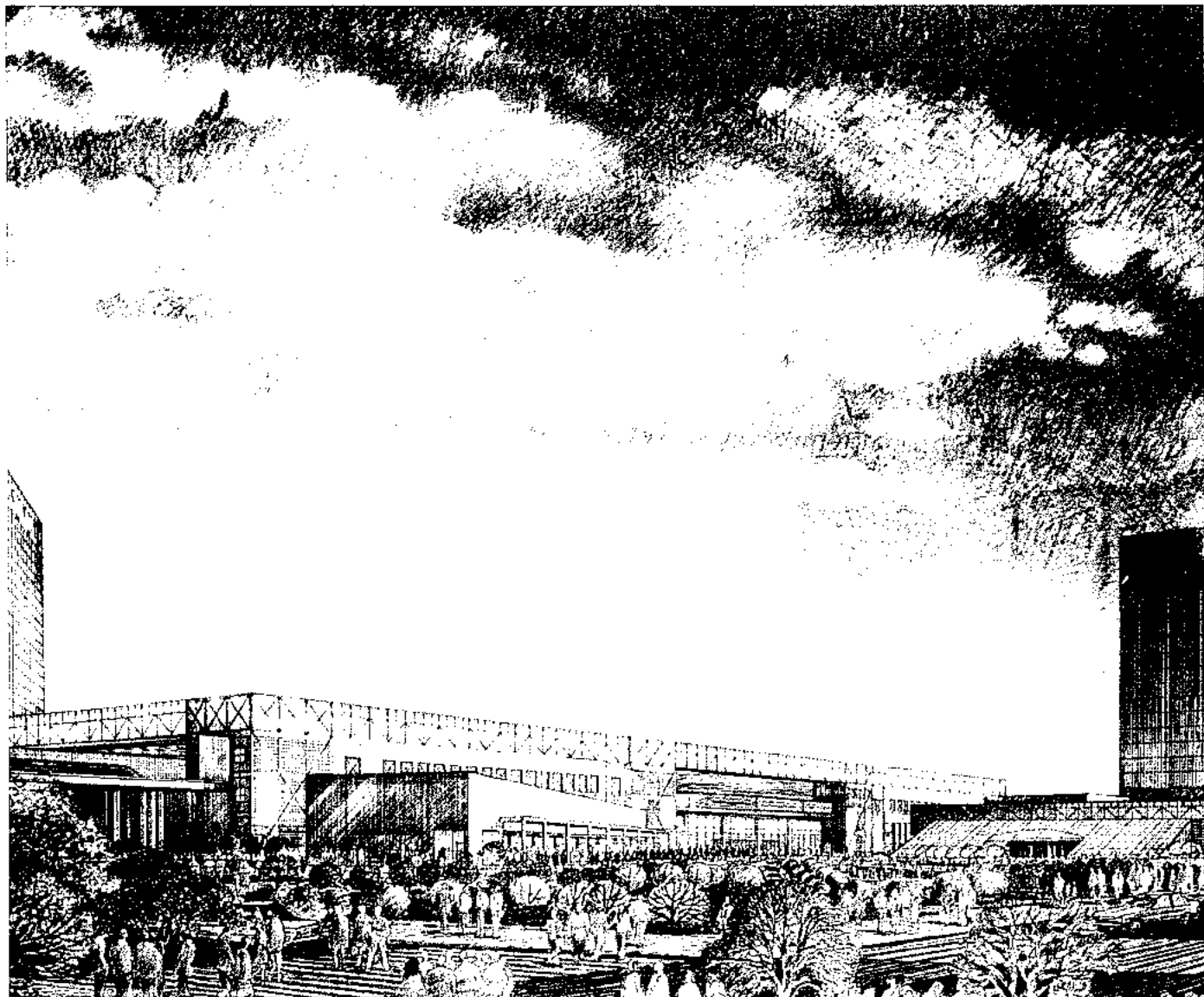
그림 13 외벽 내횡력 FRAME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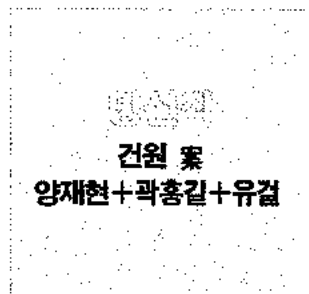
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21세기 철도여객 수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에 대한 국내 현상설계를 시행하였다. 총 5개 사무소가 응모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주)건원건축(안)이, 우수작으로는 (주)창조건축(안)이, 그리고 가작으로

(주)정일엔지니어링(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는 지난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역앞 대우빌딩 1층 로비에서 이에 따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이의 깊은 관심을 보였다.



투시도



대지위치 /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제리
지역·지구 / 천안 신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예정
대지면적 / 287,051㎡
건축면적 / 60,195.0㎡
연면적 / 263,974㎡
건폐율 / 21.1%
용적률 / 92.1%

건물규모 / 고속전철역사-지하
1층, 지상 5층
강행신 철도역사-지하 1층
지상 5층
극장가-지상 2층
호텔-지하 1층, 지상 27층

주요건축자재 / 콘크리트,
재물타감, 바닥용 유리블럭,
화강석, 메탈쉬트(금속판
자재), 단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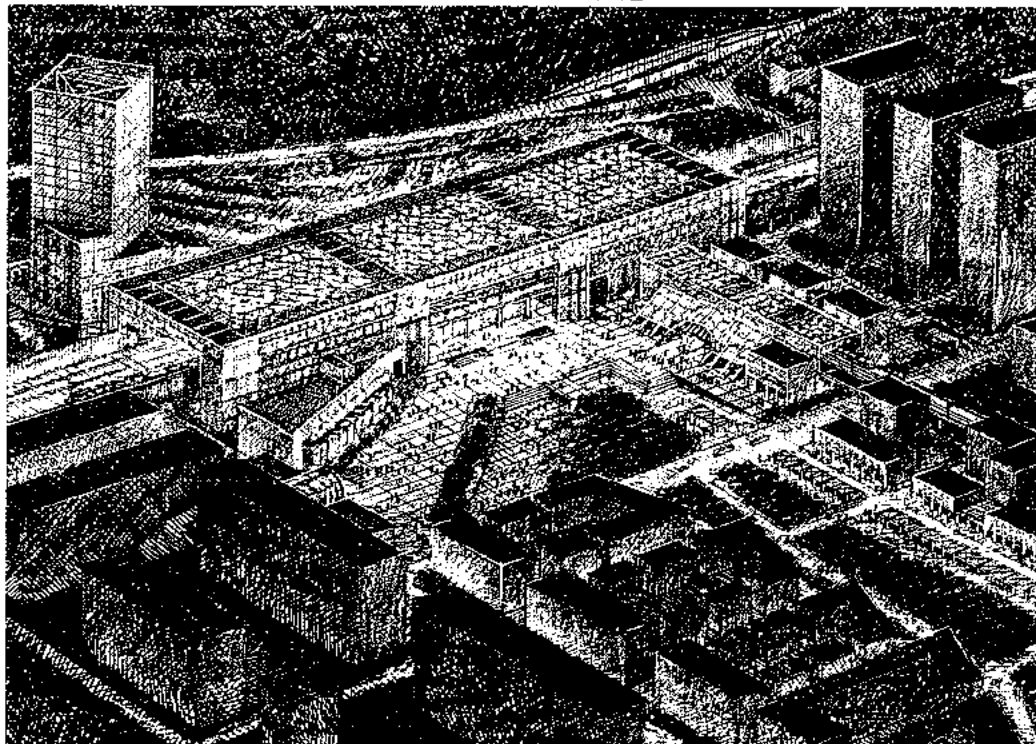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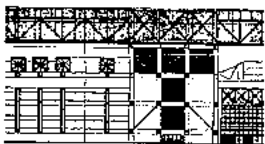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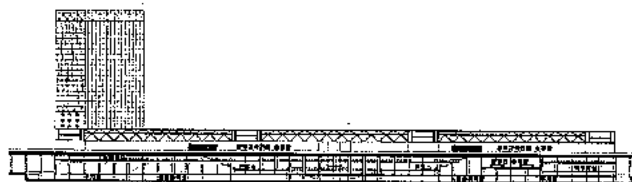
입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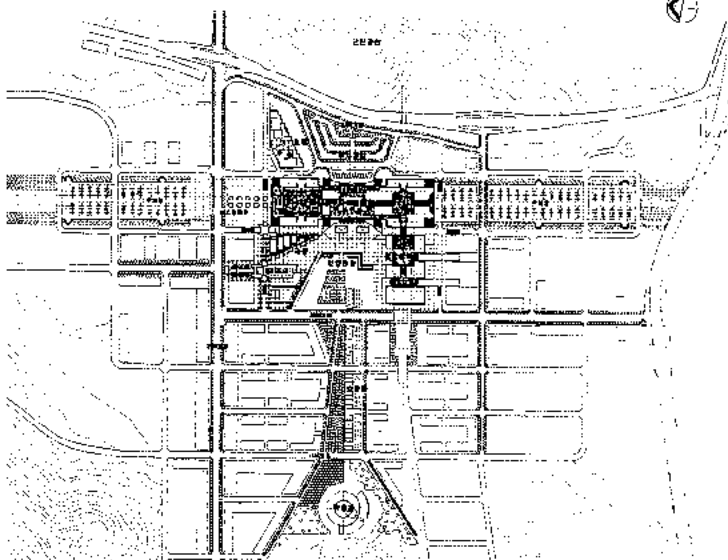
우측면도



조감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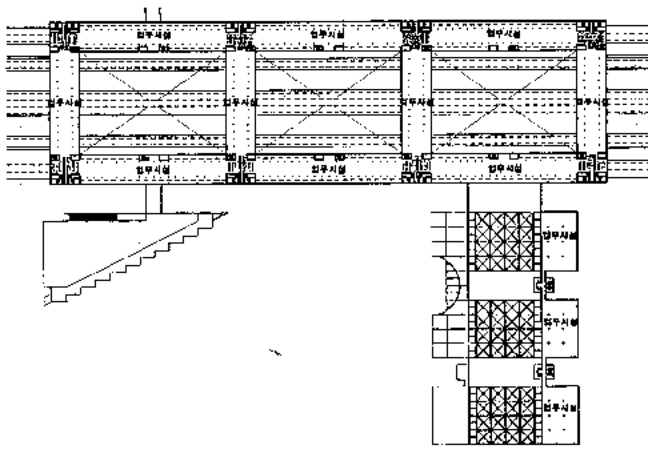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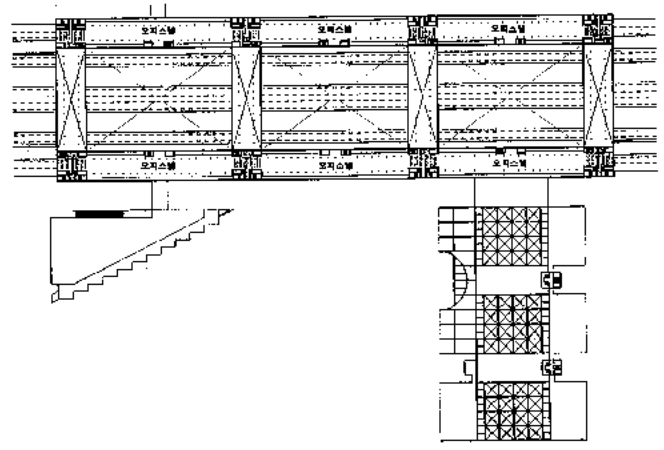
■ 역사설계의 기본목표

- 승객을 위하여
 - 편리성 : 최단의 동선거리,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
 - 안전성 : 안전사고나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
 - 쾌적성 : 안락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필요하며 승객이 필요로하는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
- 관리 및 운영자를 위하여
 - 경제성 : 초기투자 및 관리 운영 비용의 최소화
 - 부대사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수입보장
 - 가변성 : 공간이용 및 운영상 최대한의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평상시와 첨두시간에 대한 효율적 대비책이 사전 강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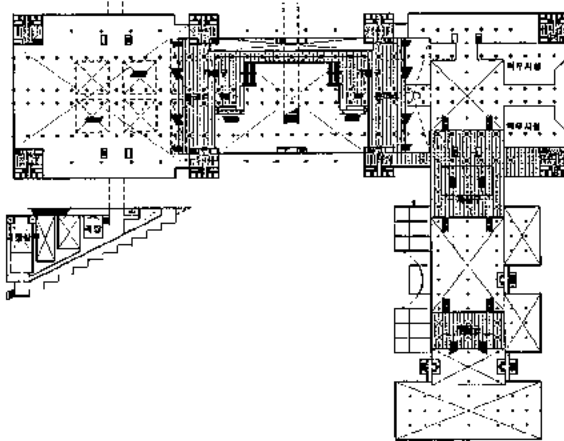
- 지역사회 및 시민을 위하여
 - 공지를 줄 수 있는 공공장소 : 시민모두에게 '나의 것'으로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함
 - 재정확보의 수단 : 역사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재정은 시정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됨
 -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성 : 중세기 교회건축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구현토록 함.
- 건취적 건축이미지와 상징성 추구
 - 토목 구조물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공간을 구성함에 따른 스케일, 대공간화, 팽창, 진동의 문제점을 각기별도의 방법으로 극복
 -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물로서의 고속전철역사에 대한 초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건축이미지의 표현
 - 등간격의 교각이 이루는 모듈을 건축적 공간구성과 표현의 기본적 단위(20m)로한 모듈과 개념의 완성
- 역동적인 공간구조의 달성
 - 외부공간이 이루는 축을 단지의부로 연장하여 단지주변의 자연적 요소(봉우리)에 결합시키고
 - 고속전철 역사가 이루는 축을 건물내부축으로 하여, 이 두축의 교차점에 콘코오스를 형성 이용자의 결절점이 되도록 하고
 - 이 두개의 축과 콘코오스로부터 모든 역세권의 시설을 연결시키면서
 - 도시가구(Urban Grid)의 패턴으로 처리된 단지외곽블럭과 기능적으로 결합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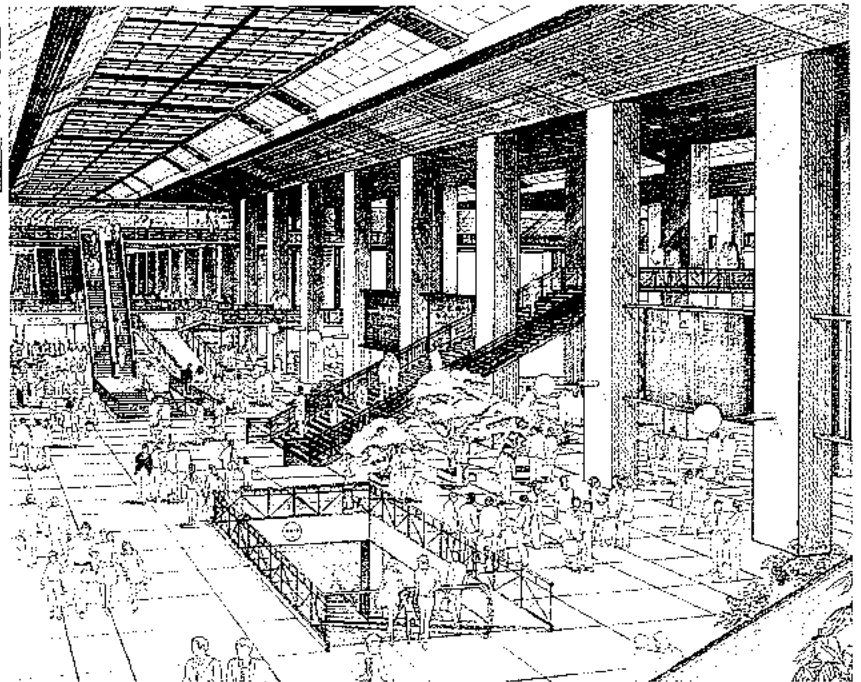
기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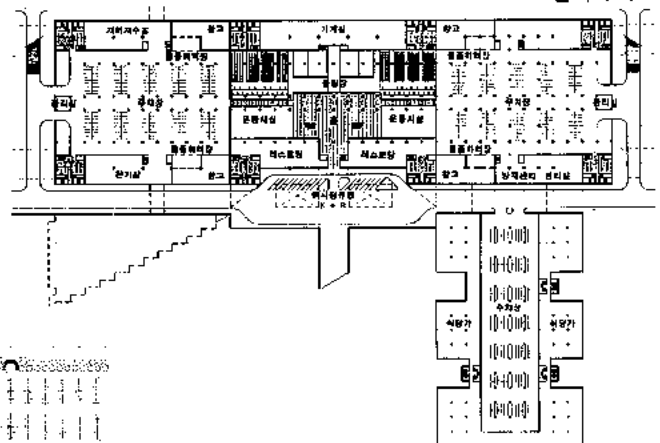
기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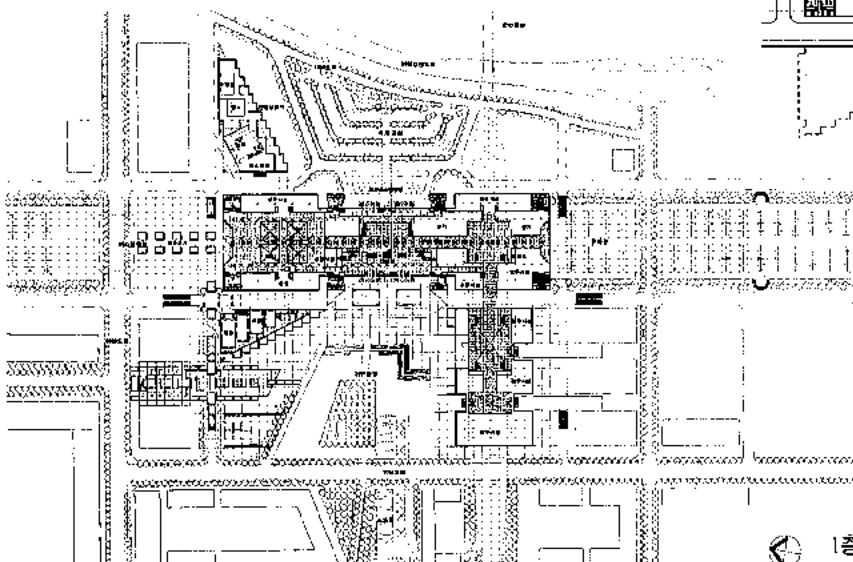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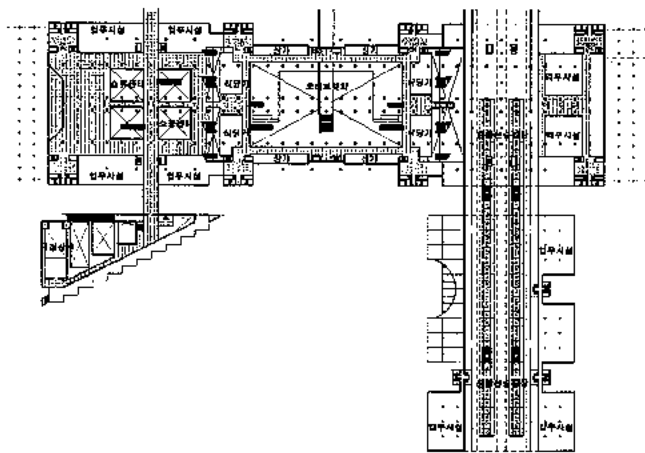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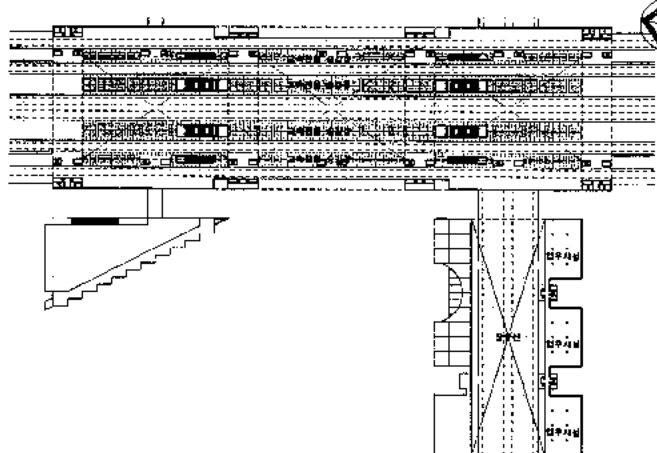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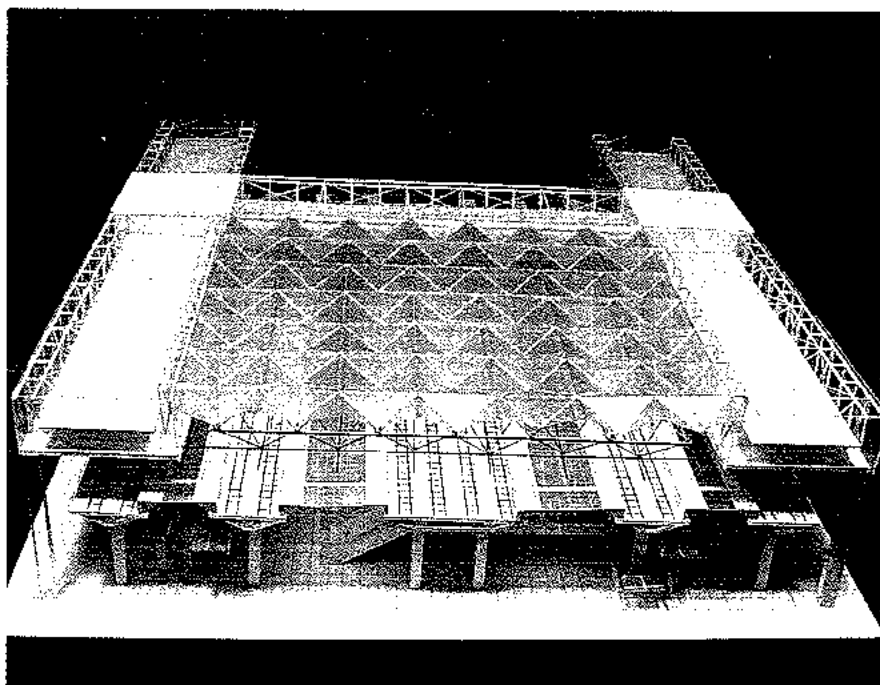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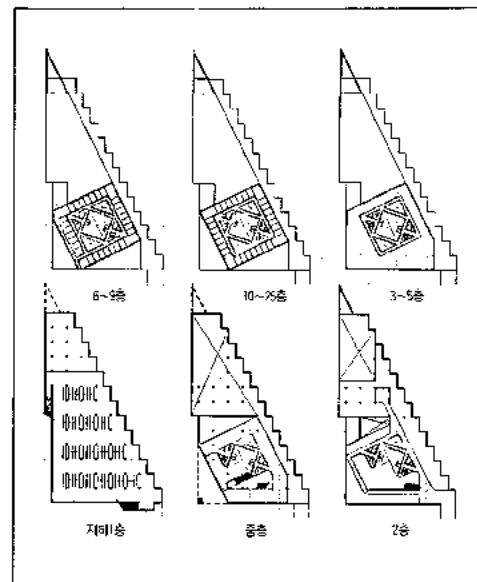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모형사진



호otel층 평면도

록 하였음

- 역사(토목구조)개발여건 극복
 - 폭 110m 길이 380m 높이 14m의 대형구조물로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도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 14m와 22m×10m로 계획된 콘크리트 기둥은 그것을 건물내부공간화 시킴에 있어서 시각적, 기능적, 건물구조나 성능에 있어서 많은 건축계획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를 극복하여야 하겠다.

■ 설계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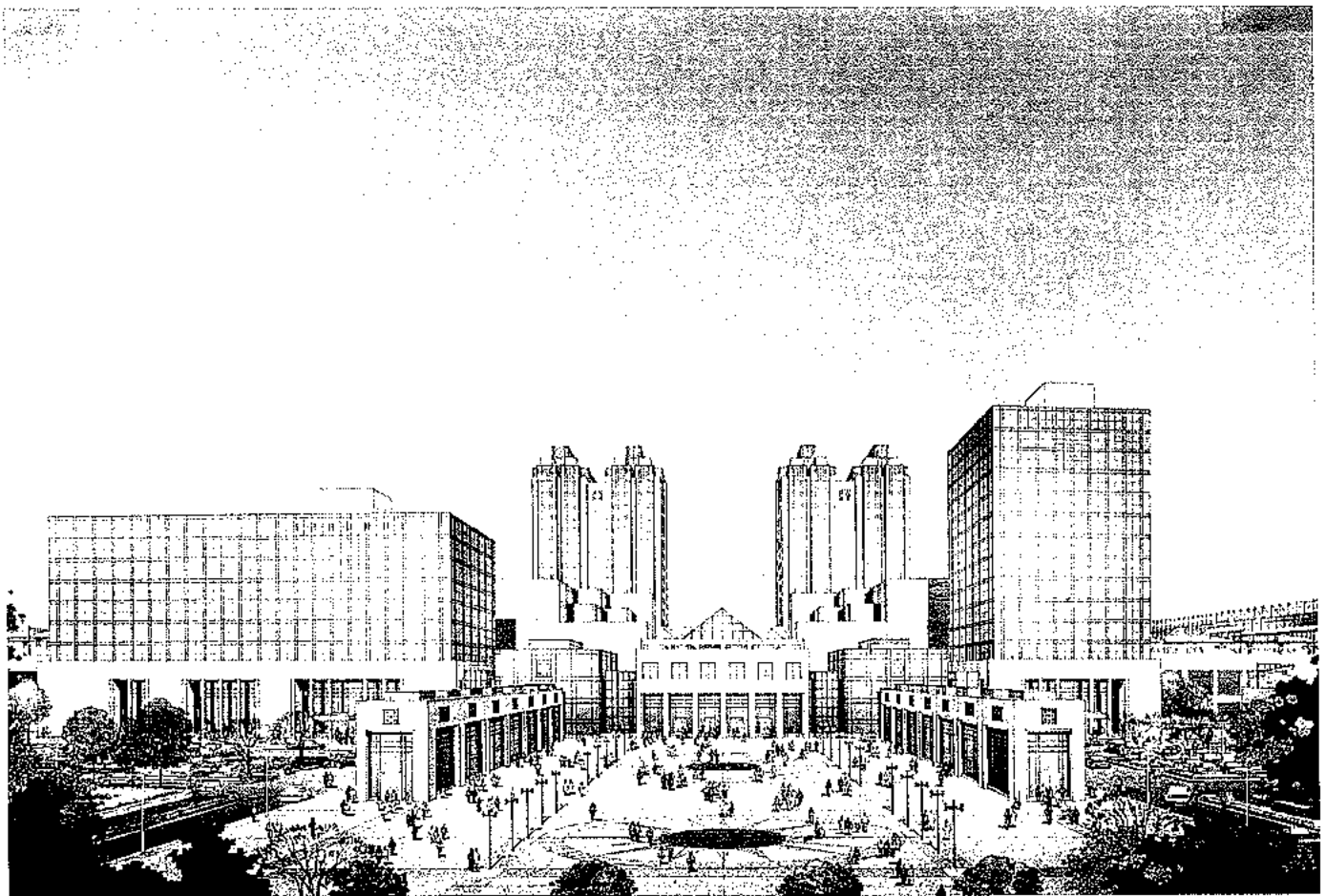
- 도시구조와의 적합성 구현
 - 주변의 도시적 상황 수용
 - 교통 및 도로망 체계상의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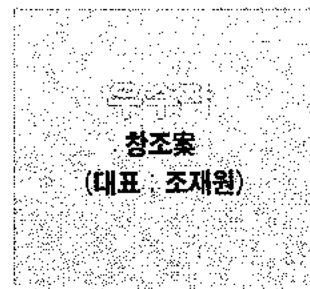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상의 연속성 부여(바람직하지 못한 변(Edge)발생 방지)
 - 강력한 오픈스페이스 축을 설정 도시적 성격과 유기성을 부여
-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
 - 장항선 이용자간의 환승객에게 공간적 편의성
 - 시내버스 이용자는 보행자와 결합처리
 - 시외버스, 택시, 평승차(K+P), 자가운전자(P+R)에게 별도의 접근성 부여
 - 리무진 서비스는 시외버스와 결합처리
- 현실적 시설 도입 및 민간자본 유치 계획

- 신속, 대량의 지역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업적 경제적 기회요소를 시설도입 계획에 반영
- 충분한 상업적 가능성을 도시 조직을 통하여 현실화 시킴으로서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하고
- 이에 따라 역사건설 및 개발을 위한 투자유인이 최대한 회수토록함.
- 단계별 개발 계획의 수립
 - 역사 이용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도 되는 시설인 동시에 교각구조 이용가능 시설위주의 1차적 시설로 하여 1단계 개발(~1998)로하고
 - 1단계 개발에서 유도되면서 도시발전에서 따라 필요한 시

- 설을 2단계 개발(1999~2008 호남선 개통시기)로 한다.
- 단, 역사의 원활한 운영과 자금의 비효율적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전철 노선은 후에 설치하더라도 호남선 노선의 토목구조물중 역사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1차 공사때 완성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장기적으로 도시 기능의 완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3단계 개발(2009~2018)로하여
- 개발여건의 성숙에 따라 점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도모함.



조감도



창조案
(대표 조재원)

대지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래리 일대
대지면적 / 약 195,750m²
건축면적 / 23,090m²
연면적 / 132,038m²
건폐율 / 11.7%
용적률 / 63.6%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20층
주차대수 / 1,528대

■ 설계목표

- 국가 간선 교통시설로의 역할 수행
 - 중·서부지역 개발의 선두적·중추적 역할
 - 전국적 공동 집배송지 기능 추구
 - 지역간의 환승기능
-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역시설 마련
 - 교통, 업무, 유통,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복합시설의 유기적 연관개발로 천안권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도모
 - 지역주민의 안전한 소비생활 주도와 양질의 상품 대량 공급
 - 복합시설의 운영을 통한 고용증대 도모
- 고속철도 역의 상징성 부여
 - 복합기능의 미래지향적 역사 건립
 - 쾌적하고 편리한 역무시설의 확보
 - 주변 환경개선 및 지역의 Landmark 역할
- 개발과 관리의 합리성

- 국가의 정책직 사업에 민간 개발 참여로 예산의 절감 및 수익성 증대
- 기업홍보와 이미지 개선 및 사회 기여
- 신도시 형성의 거점으로 개발의 선두적, 중추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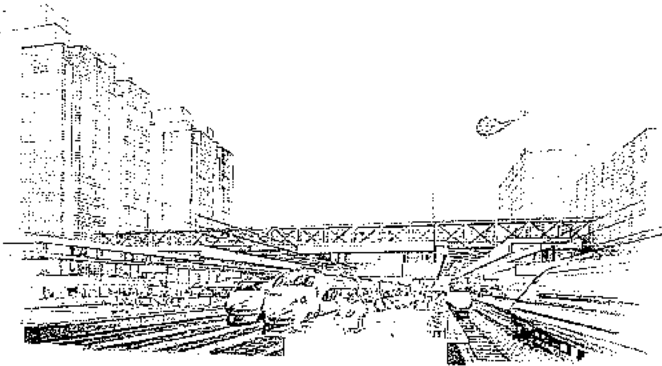
■ 설계개념

- 미래지향적 이미지
 - 고속철도의 High Tech한 기술, Speed의 표현
- 변화에 대한 융통성
 - 교통량, 새로운 건축적, 기술적 개념의 수용
- 시설 및 기능의 합리적 연계
 - 역사시설의 현대화, 여객의 편의를 우선한 공간 확보
- 경제적, 효율적 시스템의 적용
 - Module화, Pre-fab화, 단순화, 반복, 에너지 절감 계획
- 주변환경과 내부환경과의 조화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 휴식처의 제공, Landmark화

■ 주변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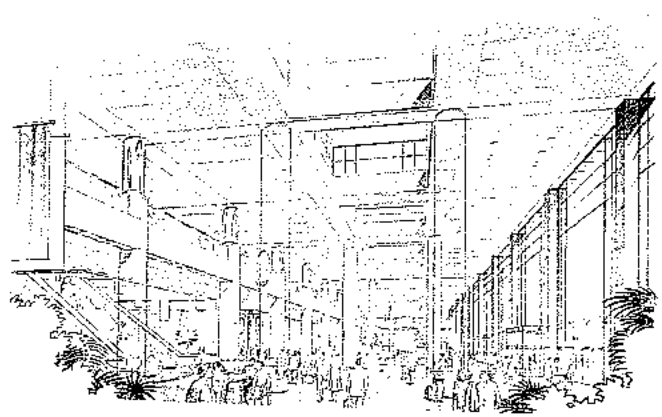
- 지리적 특성
 - 천안시의 남서쪽 경계부분으로 천안과 온양을 연결하는 국도 21호선이 통과하며, 천안과 장항간을 연결하는 장항선이 국도 21호선에 인접하여 통과하고 있다.
 - 대지주변에는 일부 취락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농경지로서 비개발상태이며 대규모의 국제방직이 국도 21호선변에, 연화여중학교가 국제방직에 인접해 있다.
- 자연적 특성
 - 대지동쪽의 월봉산 구릉지와 북서쪽의 낮은 구릉지 사이로 평탄하고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 인접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천안천의 지류가 남북방향으로 분지의 한가운데로 관통하고 있다.

CR



실외 투시도

CR



실내 투시도



동면도



정면도



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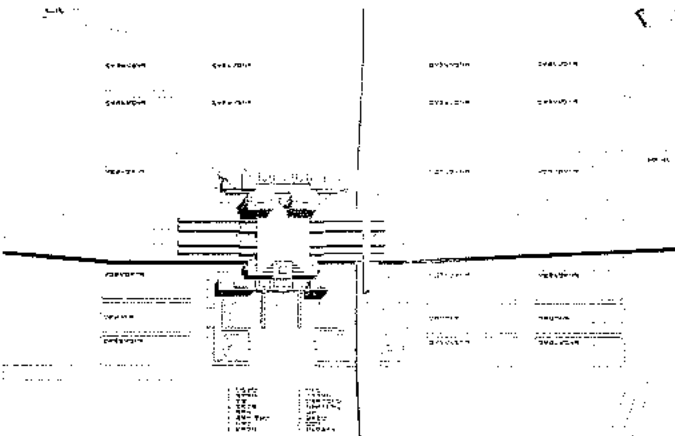


배면도

경부고속철도 전안역사 현상설계

단면도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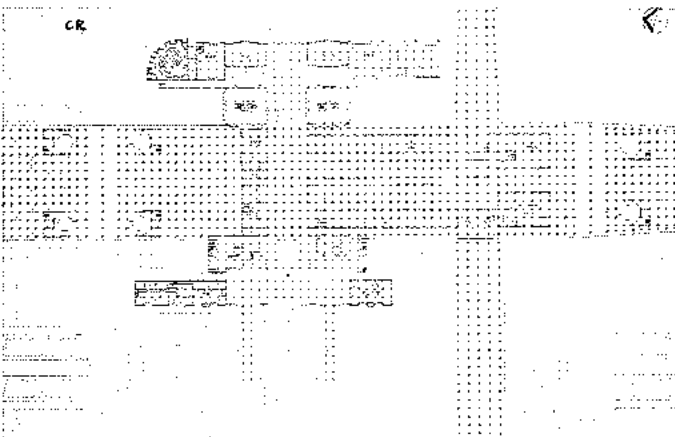
07 단면도



경부고속철도 전안역사 현상설계

배치도 1/1800

0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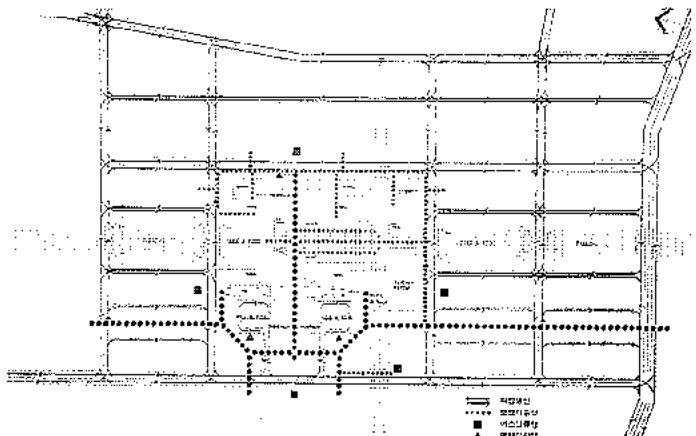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경부고속철도 전안역사 현상설계

입면도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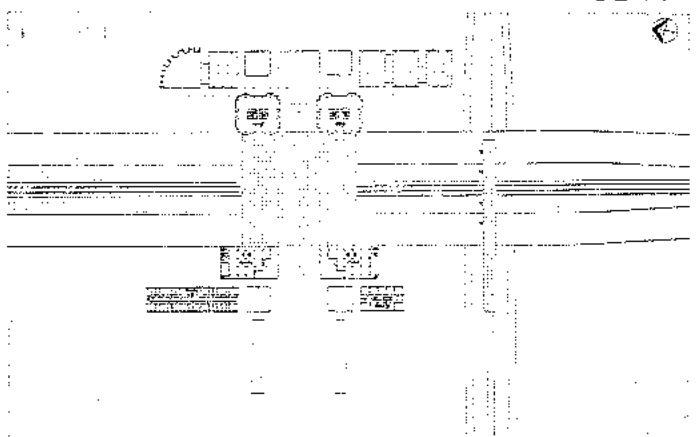
06 입면도



경부고속철도 전안역사 현상설계

동선체계도 1/1800

08 동선체계도



기준층 평면도

(주)정일엔지니어링 案
(대표 : 송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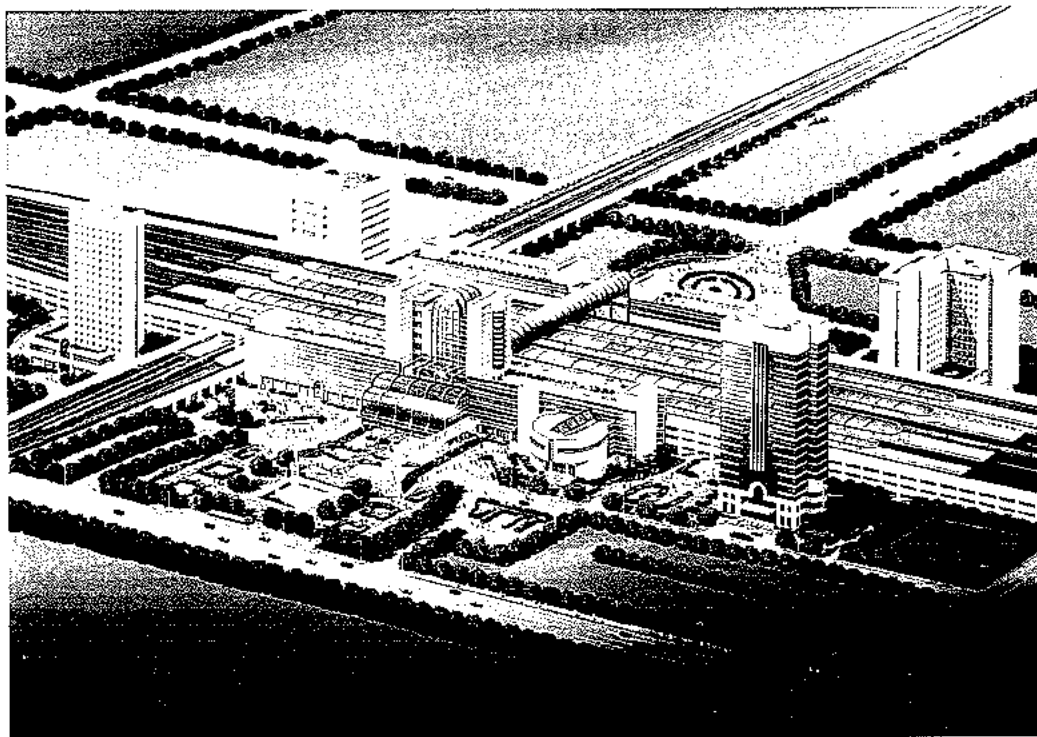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일대

대지사용면적 / 243,906㎡
정차장 부지-188,610㎡ +
동측 27,648㎡ + 서측 27,648㎡

연면적 / 301,457㎡(목표기준년도,
선상주차면적 포함시)
226,961㎡(목표기준년도,
선상주차면적 불포함시)

시설내용 / 역사시설, 전무상가,
백화점, 오피스, 운동시설,
호텔, 오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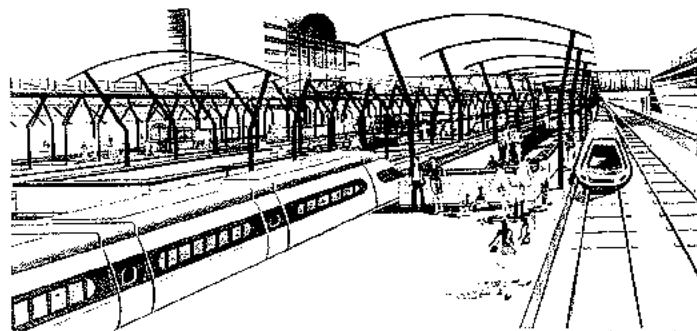
주차시설 / 3,450대(지하-820대,
육외-300대, 선상-2,3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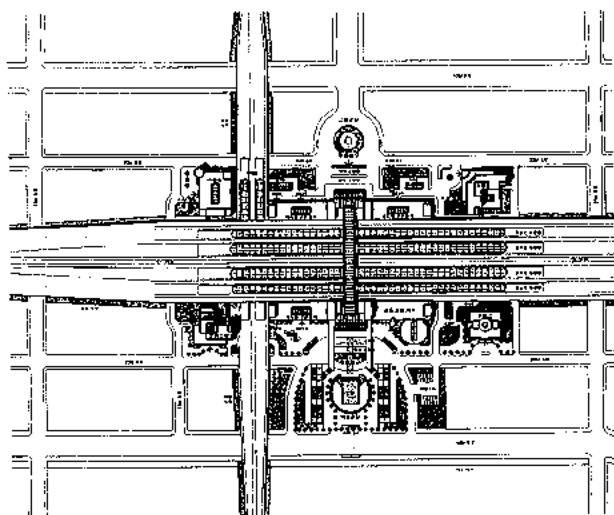
조감도

■ 배치 개념

- 역사 중심 시설 배치
- 단계별 이용객에 따른 적정 시설 분산배치
- 장차 형성될 신도시의 중심 역세권으로서의 동서축에 대한 배려
- 선로축을 기준으로 한 축 설정 및 기존 천안시에 대한 도시축 배려
- 유입인원에 대한 완충공간으로서 동측 미관광장 및 서측



승강장 투시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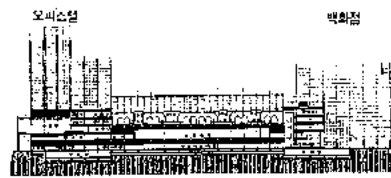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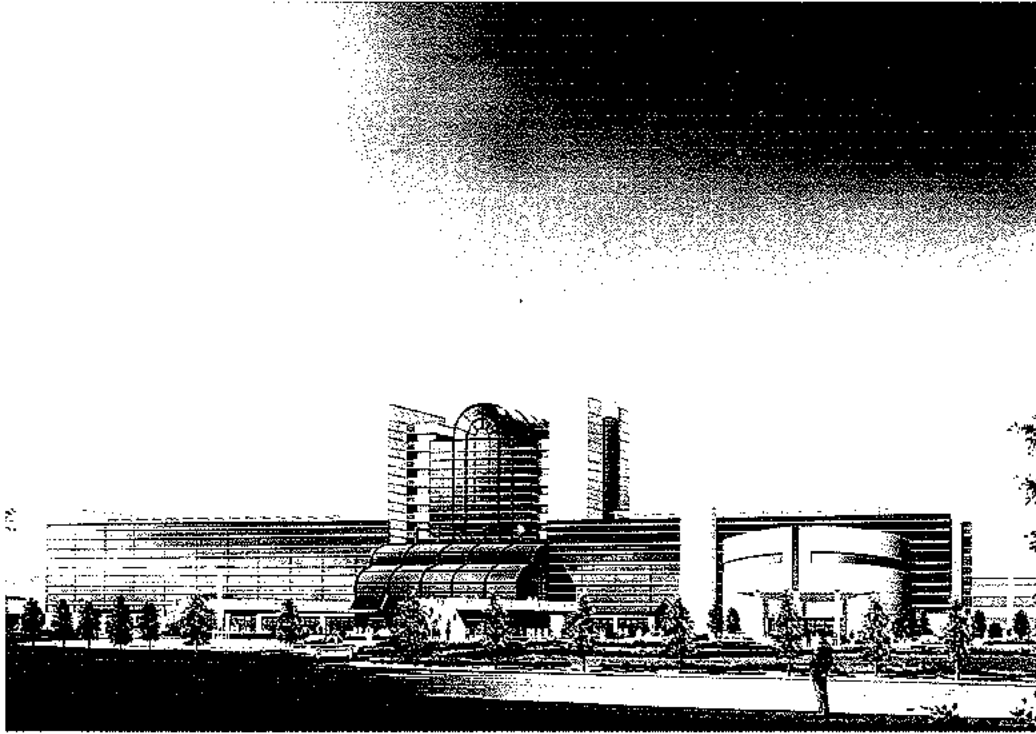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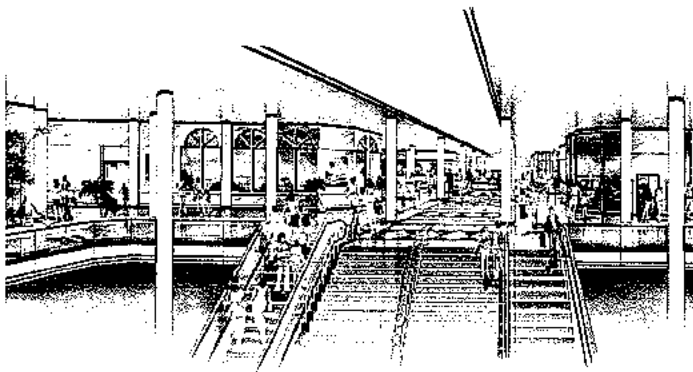
중단면도(중앙 콘코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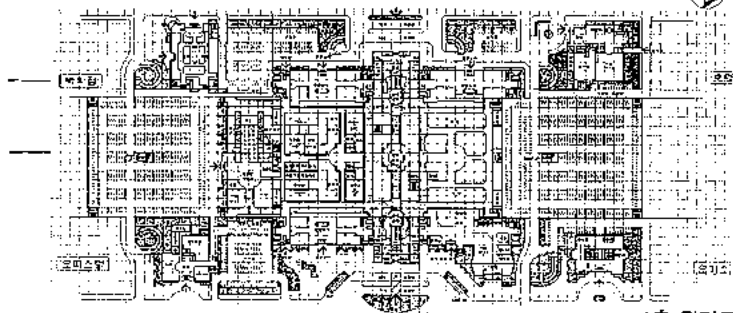
중단면도(판매, 운동, 관람시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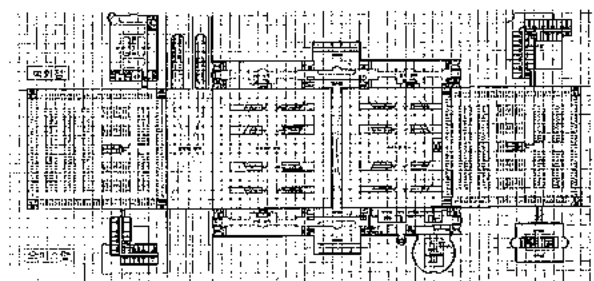
미관 광장 부분 투시도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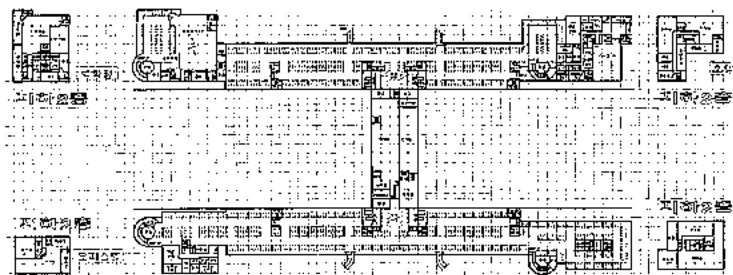
중앙 콘코스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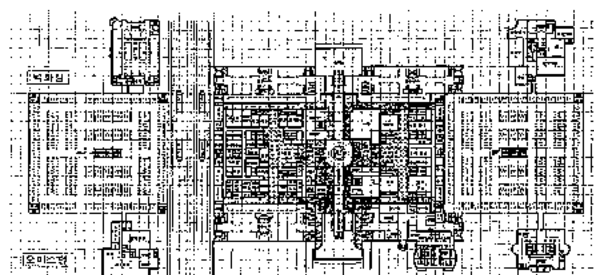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모듈 시스템에 의한 실의 융
통성(단계별 계획 고려) 및
공간의 균일성 확보
- 용도별 이용객을 기준으로한
분류계획

■ 입면 개념

- 현대화된 역사로서의 이미지
부여
- 단순화된 Mass, 주건물의
저층화로 시각적 안정 및
Human Scale에 접근
- GATE로서의 상징성부여
- 동서측 동일한 이미지로서
아트리움 설치
- 외벽 주조색을 청색으로 처
리 역사 단지에 대한 시각적
상징성 부여
- 기능별 Identity부여
- 단계별 각 공간 고유성 부여
- 최종 개발후 단지내 각 건물
간 통일감 부여
- 통일된 외장 요소로서의 수
평 요소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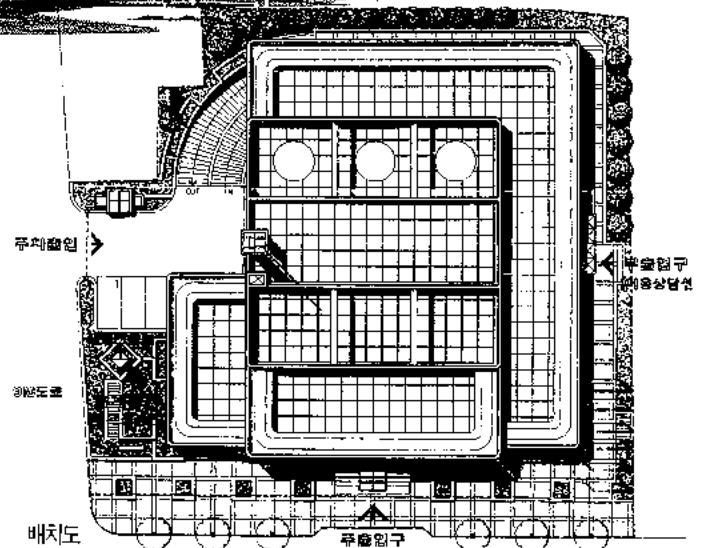
■ 평면 개념

- 여객 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 동선의 편의성 확보
- 용도별 Block化로 동선의
단순화 추구 및 설비 시스템
의 효율성 확보
- 개발 완료 시점(2018년)을 기
준 각 단계별 시설 배치에 따
른 연계성 확보

■ 단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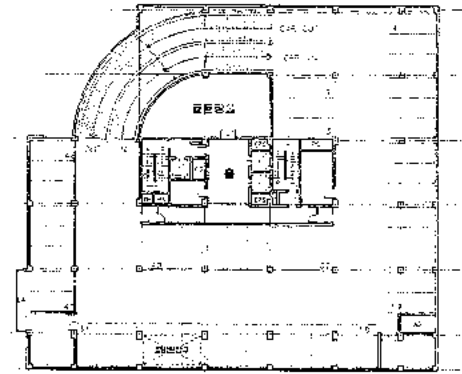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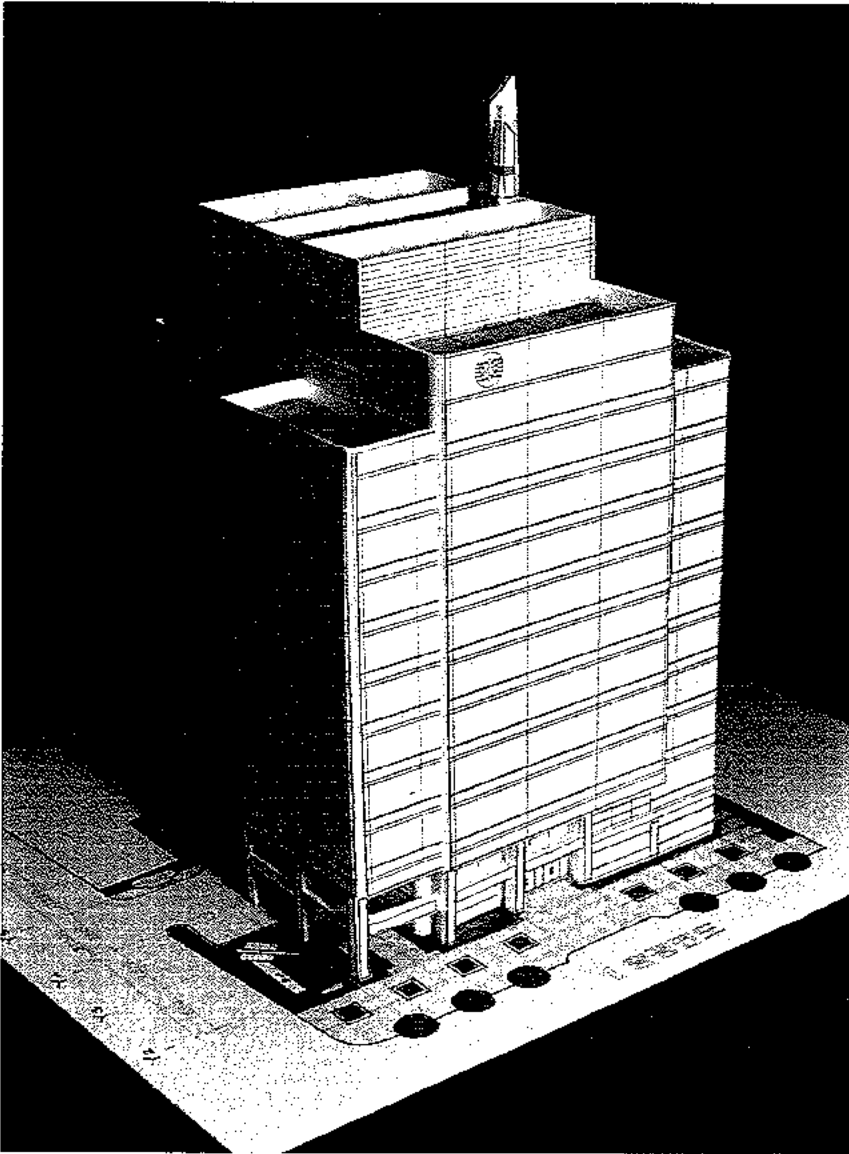
- 고속 전철과 장항선과 원활한
환승체계
- 수직동선을 이용한 최단거리
동선 계획
- 외부공간(아트리움, 보행자
공간)에서 역사 및 연관시설
에 대한 원활한 진입

총 12개 사무소가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엄이건축
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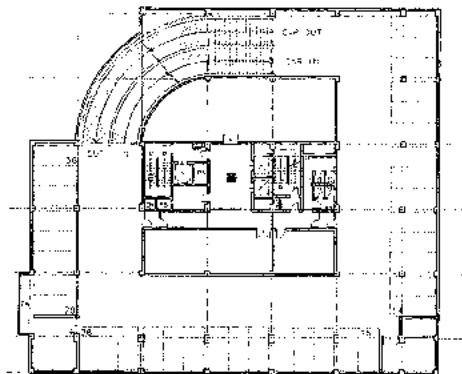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2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1종 미관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2,267㎡
 건축면적 / 1,338.8㎡
 연면적 / 20,514.2㎡

건폐율 / 50.06%
 용적률 / 593.63%
 규모 / 지하 4층, 지상 11층, 옥탑 1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AL복합패널+24mm Low-E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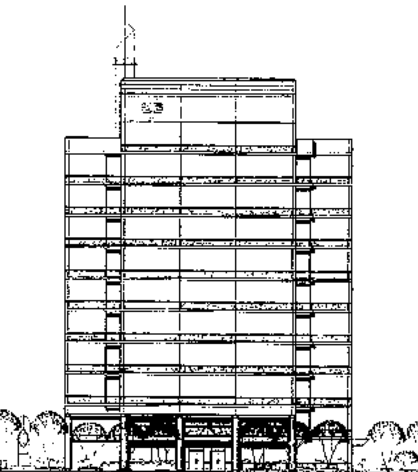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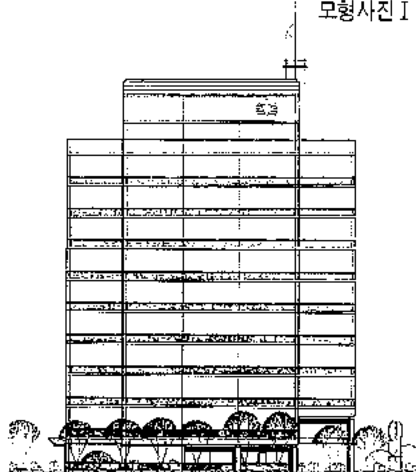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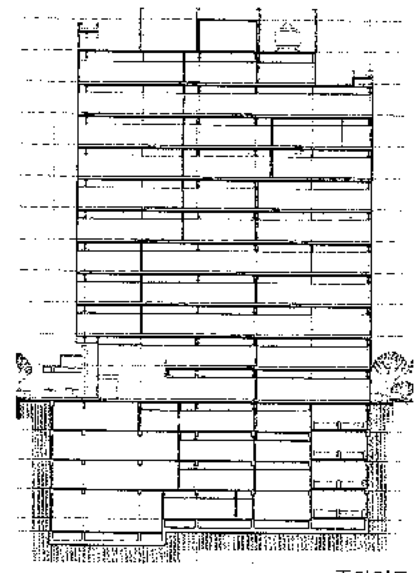
모형사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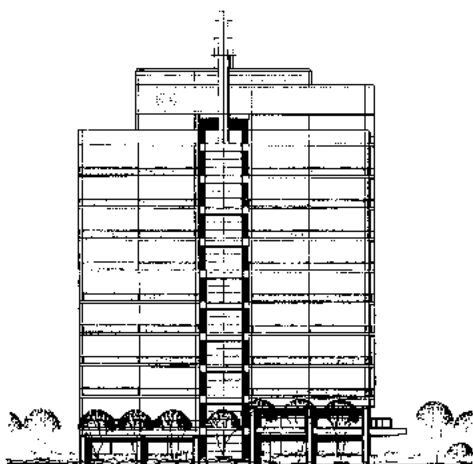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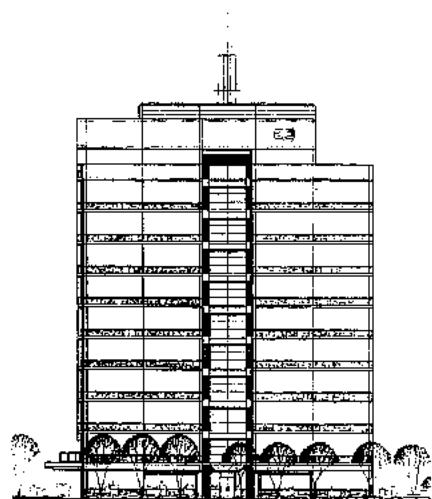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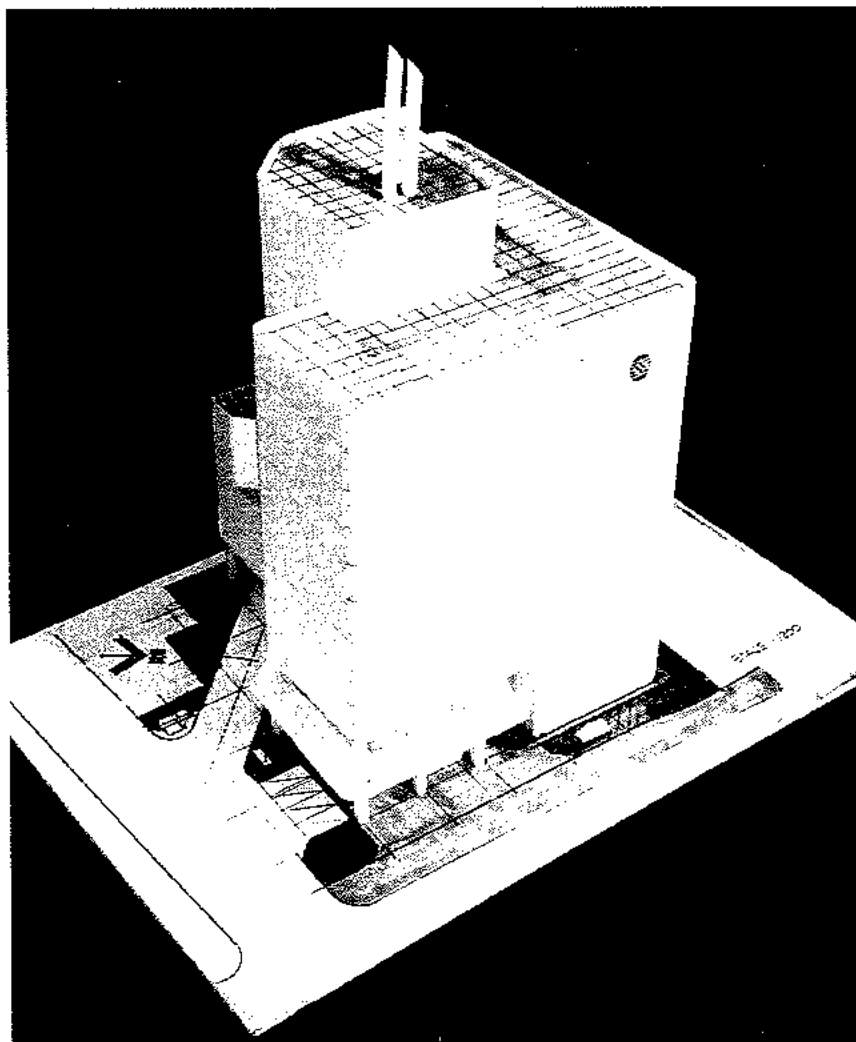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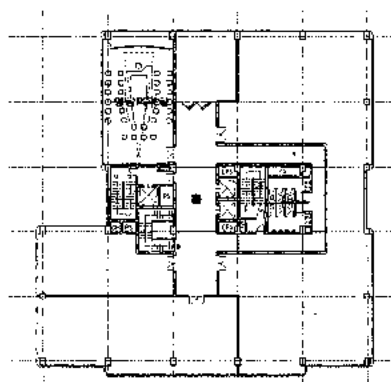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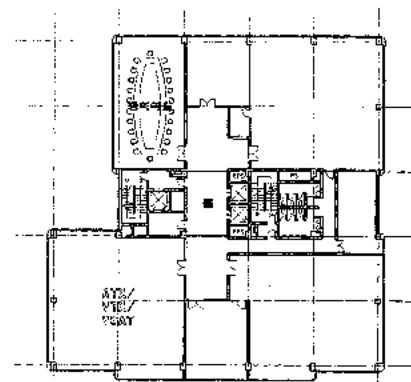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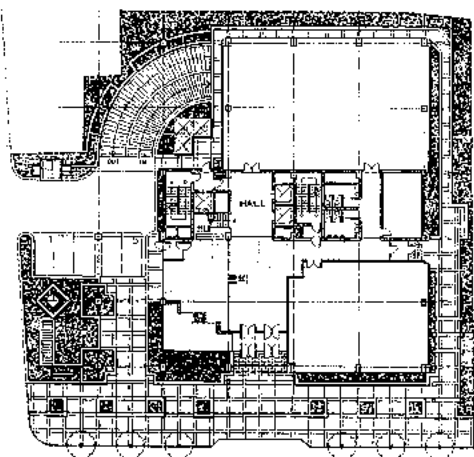
모형신진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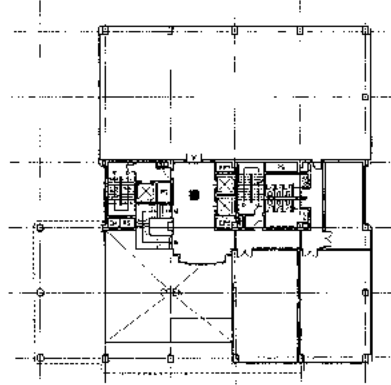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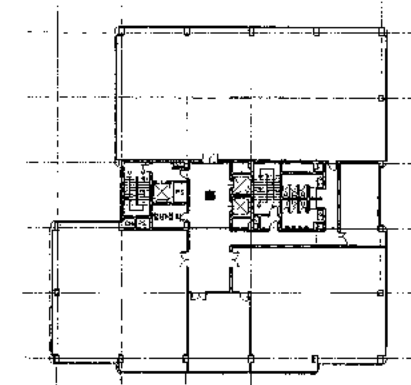
5.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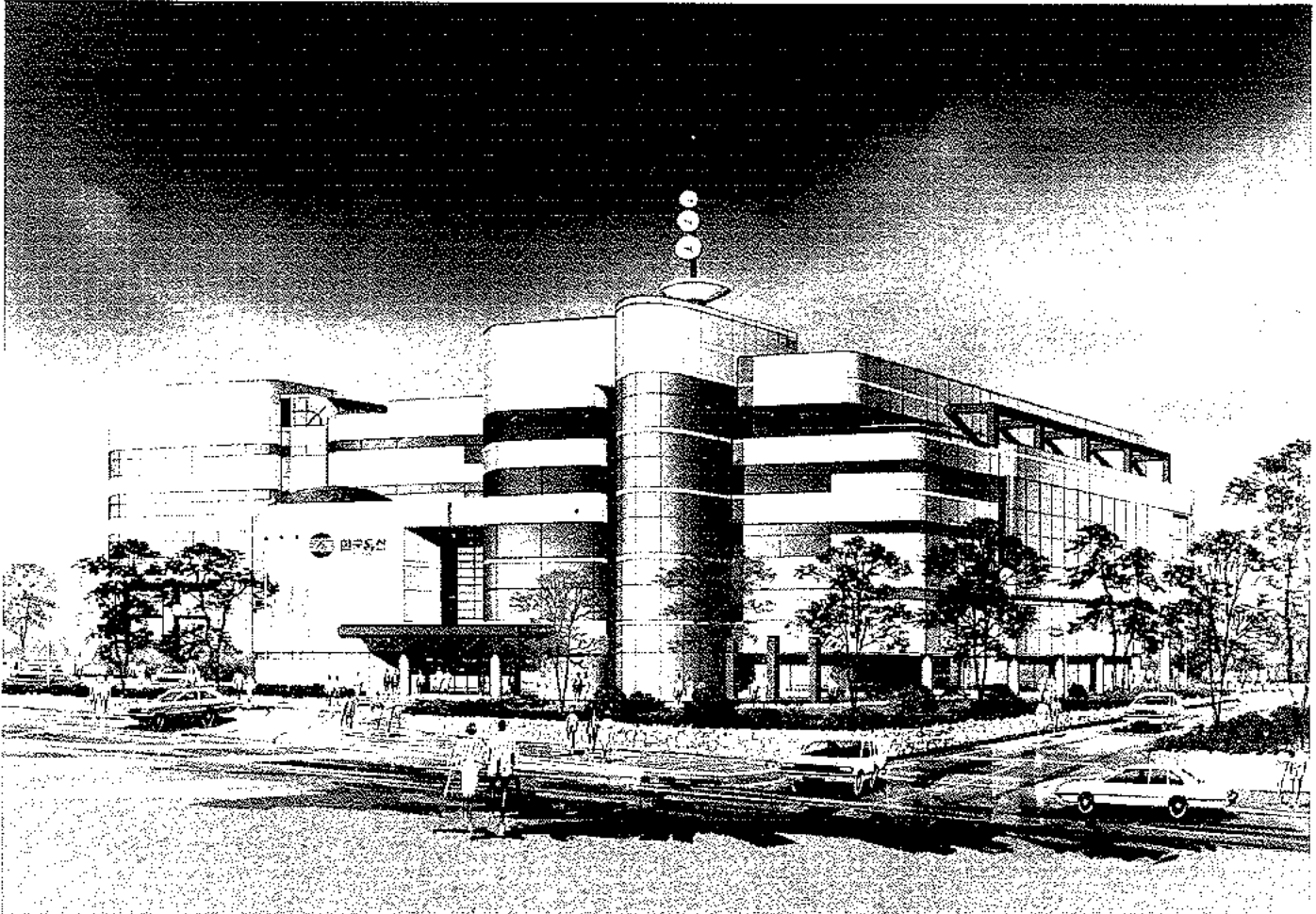


4층 평면도

한국통신 제주 전화국

한국통신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통신 제주전화국 증·개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업무종합건축을 비롯한 총 6개 팀을 지명하여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는 업무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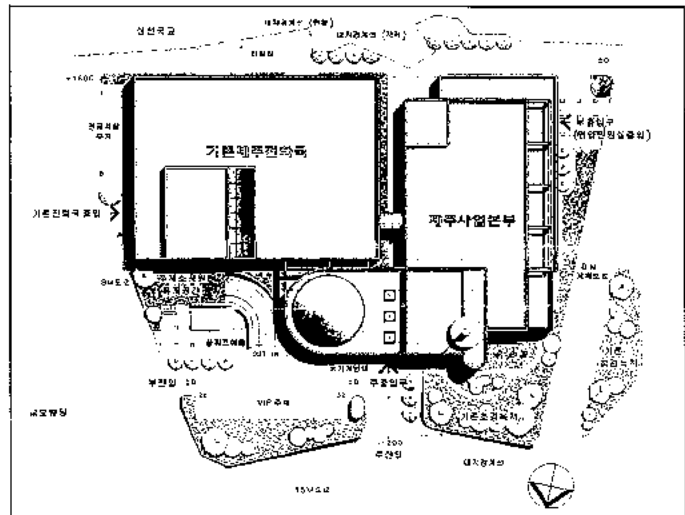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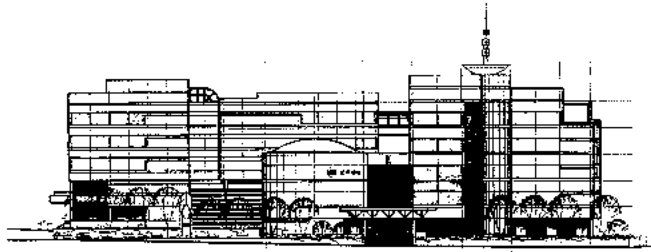
업무종합건축案 (대표 : 이각표)

대지위치 / 제주도 이도 1동
1643-1번지외 4필지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고도지구(20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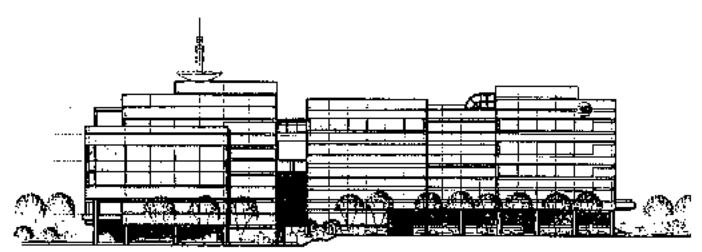
대지면적 / 7,840㎡
건축면적 / 3,658.9㎡
연면적 / 18,833.3㎡
건폐율 / 46.7%
용적률 / 169.1%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옥탑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AL복합패널+16mm
복층유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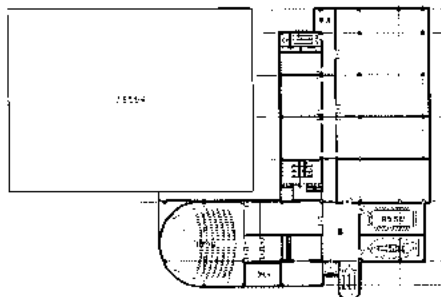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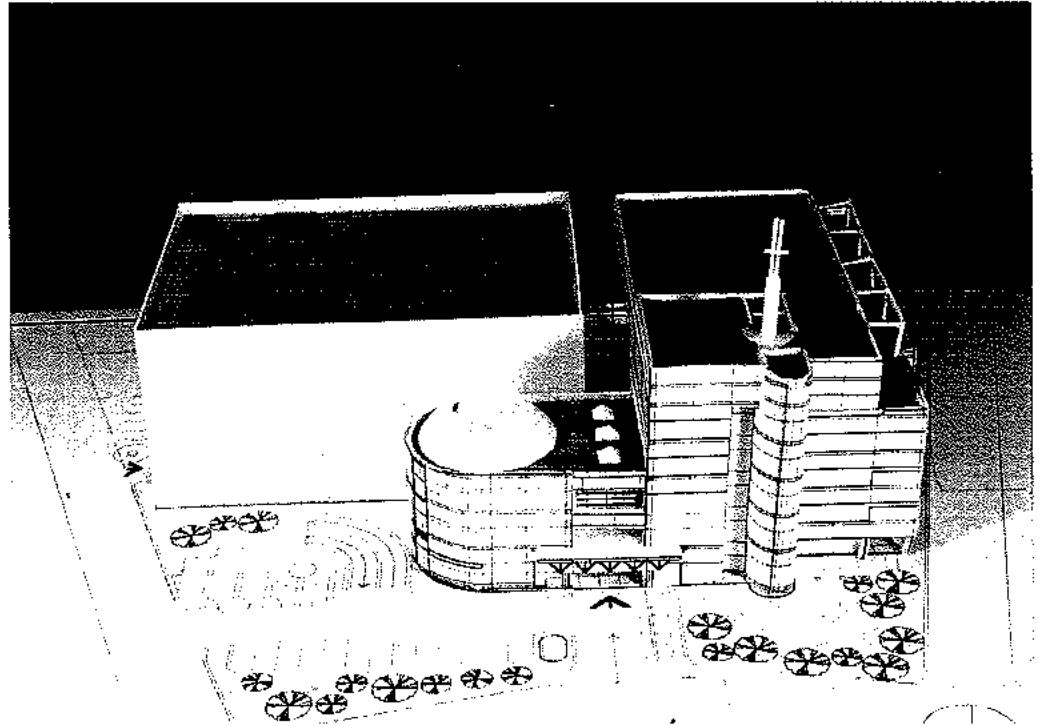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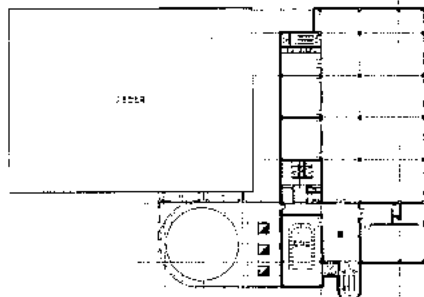
배면도

■ 계획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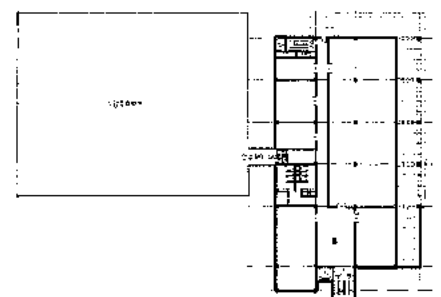
- 상징성
 - 한국통신 고유의 이미지를 조형화/강한 상징성을 부여
 - 미래지향적 첨단성격이 부각되는 진취적 디자인 추구
- 합리성
 - I·B에 적극 대응하는 공간체계 확립
 - 발전적 기능 수용 가능한 공간 계획 및 건물성능 최적화
 - 부지이용의 극대화
- 편의성
 - 사용자 위주의 최적 공간환경 부여
 - 시민을 위한 Service 시설 및 주세 소공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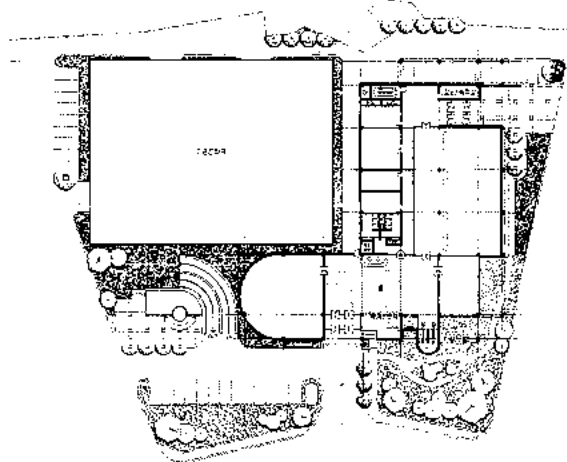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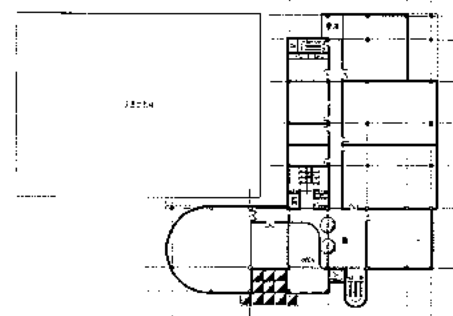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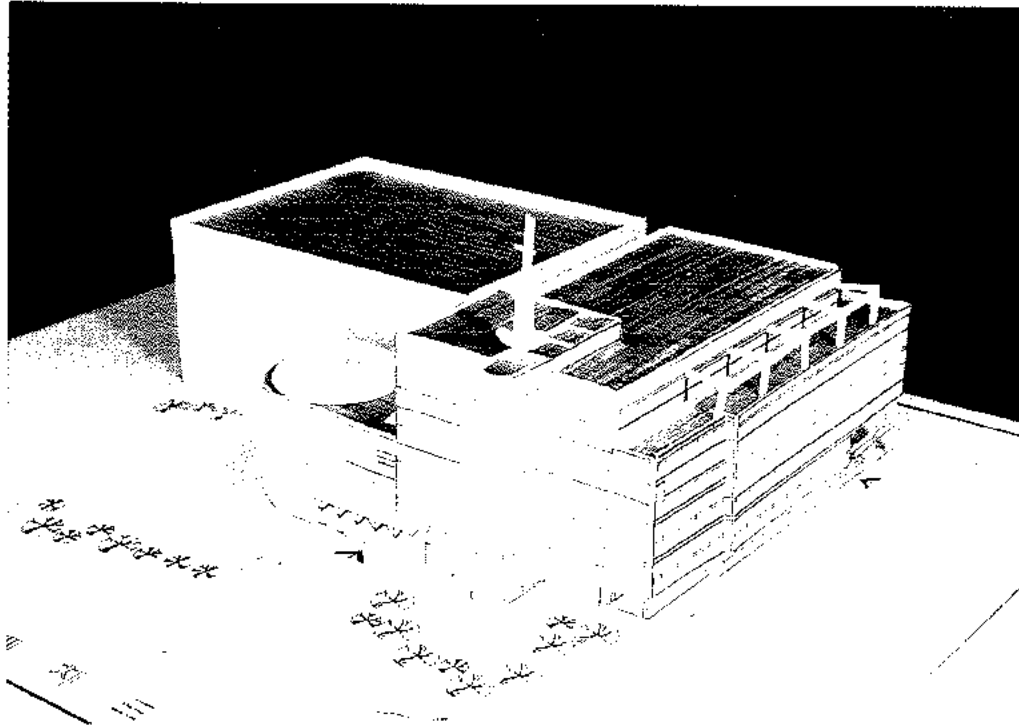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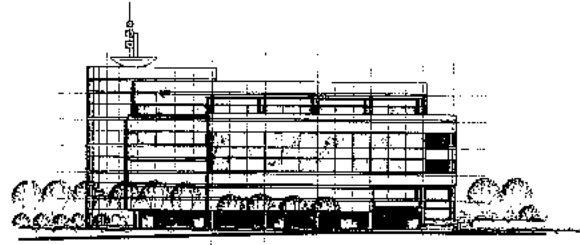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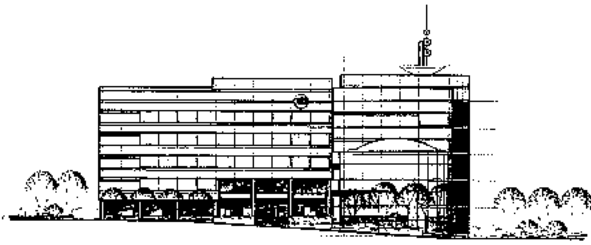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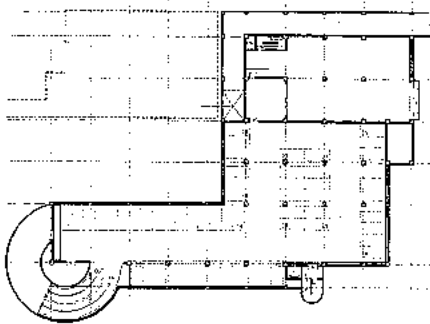


■ 조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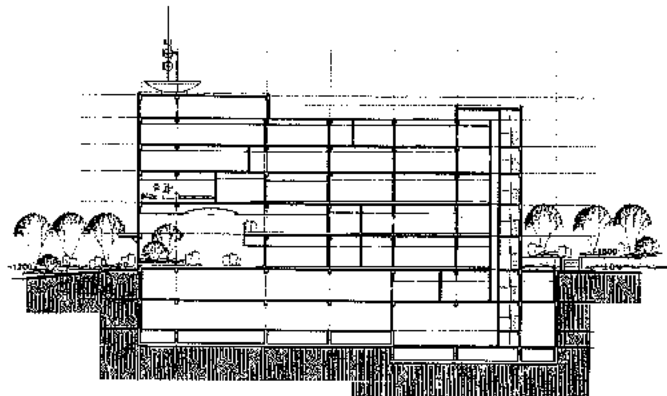
- 제주시업본부의 기능수용
- 대외적 Identity 부여
- 매스의 기능적 분절
- 휴먼 스케일에 의한 매스감 완화

■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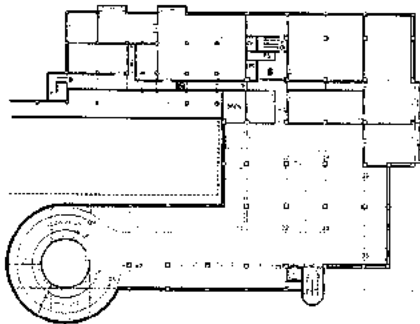
- Land Mark로서의 역할
 - 상징적 역동성
- 지역정보통신 중심 이미지 강조
 - 전면도로에서의 흡입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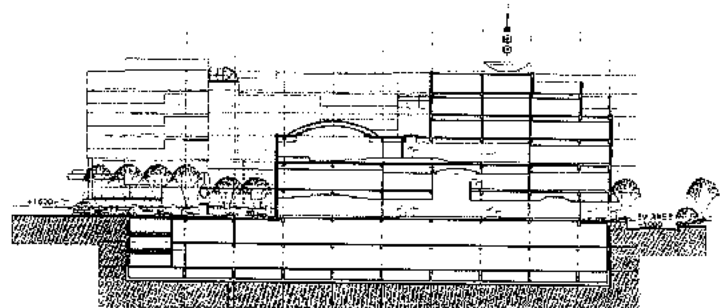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우측면도



지하 1층 평면도



횡단면도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제획과

▶ 질의

상업지역내 건축물을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경우 그 경우에 망입유리로 된 개구부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가능시 개구부 갯수 제한 여부(질의자: 전북 군산 정팔현)

▶ 질의

가. 지상 6층, 연면적 3,000㎡의 건축물에 7층으로 25㎡를 증축하여 건축물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는 면적을 산정할 때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존건축물과 증축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다.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500㎡)에서 대학입시계 학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와 업무시설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성남 장영진)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서의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을 건축할 대지에 도로, 하천, 도로가 연이어 접해있는 때에 위의 규정을 적용시 도로중심선은 어디로 보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마산 이영수)

▶ 회신(건축 58070-891, '93. 3. 24)

건축법 제6조 제1항은 상업지역등에서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인접건축물간의 화재연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토록 한 것임. 그러나 방화벽을 축조하는 경우, 그 구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취지상 화재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동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등으로 화재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구부의 갯수는 별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82, '93. 3. 18)

질의 "가"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건축신고는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하나, 당해 시·도의 실정에 따라 처리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허가관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동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 별표1 제11호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동 용도변경 허가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68, '93. 3. 22)

이 질의의 경우 건축조례가 정해져 시행중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도로중심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와 하천 및 도로를 합한 거리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다가구주택이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기준은?(질의자: 경기 수원 최중경)

▶ 질의

개정건축법시행이전('92.5.30)에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없이 건축하여 '93.3월중에 고발된 경우 이행강제금 규정 적용여부(질의자: 전주 완산 안병식)

▶ 질의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9)의 규정에 의한 예능계 학원이라 함은?
나. 기존 복합건축물(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부분을 근린 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창원 진장일)

▶ 질의

1층인 기존건축물(주택)에 종교시설의 용도로 2층을 증축허가받아 시공중에 부속용도인 화장실을 주 용도인 종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여부(종교시설부분의 화장실을 1층이 주택부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장차 별도로 화장실 증축예정)(질의자: 경남 남해 김만철)

▶ 질의

지하층으로 통하는 지하외부계단에 대한 인접대지경계선에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적용여부(질의자: 경기 안양 박영부)

▶ 질의

가. 부속용도의 면적이 주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하층을 주차시설 및 대피시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기 안양 송해준)

▶ 질의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설비 확인서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서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질의자: 서울 서초 조동영)

▶ 회신(건축 58070-845, '93. 3. 18)

이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15, '93. 3. 24)

이 질의의 경우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11, '93. 3. 24)

가. 질의의 예능계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능계학원을 말하며,
나.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95, '93. 3. 24)

동일 건축물내의 부속용도를 주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변경하므로 인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주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데 따른 관련규정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93, '93. 3. 24)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동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바,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지상에 노출되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지표하의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50, '93. 3. 12)

질의 "가"에 대하여

부속용도라함은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별도의 주용도로서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건축법상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지하층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224, '93. 3.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체설비확인서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

'92.5.15일에 건축허가받아 착공한 건축물과 '92.5.25일에 건축허가신청하여 '92.6.10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현행법에 의하는지 또는 종전법령에 의하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남구 김동수)

▶ 질의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최하층 부분이 반지하식(지하층)으로 주차전용공간으로 사용할 때(3면은 개방되고, 1면은 막혀있음) 이를 피로티구조로 보아 바닥면적 및 층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동 건축물의 용도는?(질의자: 경남 김해 김희성)

▶ 질의

읍·면지역(도시계획외지역)에서 기존 도자기공장 660m²를 건구공장으로 업종변경할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광주 황호현)

▶ 질의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연면적 200m²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의 규정중 연면적이라 함은?

나.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지역외의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착공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기 광주 임운식)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띄는 거리는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띄는지 아니면 부속용도인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도 띄어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고양 이재제)

▶ 질의

상업지역에서 신고로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여부와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 및 증축은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함안 유덕춘)

▶ 질의

1.5m 고저차가 있는 동일대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인동간 띄는거리 규정의 적용여부(질의자: 충북 청주 김세진)

▶ 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돌출장이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 회신(건축 58070-792, '93. 3.17)

질의와 같이 종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의 시행중에 도래한 중간검사는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20, '93. 3.2)

피로티 구조라함은 건축물의 1층부분이 독립기둥으로만 되어있고 벽이없이 개방되어 지반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구조는 피로티구조라 할 수 없으며, 동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고, 질의의 구조가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78, '93. 3.5)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각목간의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한 업종변경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국토 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69, '93. 3.5)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면적 200m²"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합계 즉, 동일대지안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동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지역외의 구역에서 연면적 200m²미만, 2층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05, '93. 3.9)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는 거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는 바,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동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질의외 경우 주용도 및 부속용도인 사무실, 화장실 등의 외벽 각부분에서도 대지안의 풍지확보를 위한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이나, 연면적 10m²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담장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84, '93. 3.6)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m²이내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가능하며, 건축법령상 이러한 건축물을 사용검사 후에 개축 및 증축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신(건축 58070-775, '93. 3.16)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만큼 띄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74, '93. 3.16)

건축물의 각부분은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지축되는 경우 돌출창 설치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기 광명 박진일)

▶ 질의

가. 중간검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양식은?

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산정시 치마부분의 산정방법은?

다. 건축물을 50㎡ 이하로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라. 대지의 내각이 120° 이하일 경우 건폐율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 산정시 건축법상 완화규정이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창원 남세현)

▶ 질의

19세대 미만의 아파트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도파하여 소재불명일 때 사실상 동 건축물을 분양받은자인 19명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남 진주 윤경만)

▶ 질의

소요너비에 미달된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동 막다른 도로변에 접한 인접대지에서 소요너비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바, 건축가능여부(질의자: 경기 안양 허진석)

▶ 질의

한약도매업(기준면적 66㎡ 이상)시설이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성남 전수경)

▶ 질의

면지역에서 농가주택을 99.0㎡, 축사 165㎡, 창고 60.0㎡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질의자: 경기 광주 김상수)

▶ 질의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하인 건축물”의 규정중 연면적이라 함은?

나.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지역외의 구역에서 건축물이 건축시 착공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북 영천 김한나)

다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사항이 모두 적용되어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59, '93. 3. 22)

가. 건축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신청시 첨부하는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는 그 양식을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나. 질의의 치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다.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바닥면적합계가 50㎡ 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로서 가능하며,

라. 대지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대지의 형상에 따라 완화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신(건축 58070-860, '93. 3. 22)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관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 구 건축주가 소재불명상태이므로 민법 등 관련법에 의한 관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30, '93. 3. 18)

질의의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고, 동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가 2m 이상 접한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변에 접한 인접대지에서 소요너비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05, '93. 3. 17)

질의의 한약도매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97, '93. 3. 17)

읍.면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면적합계 100㎡미만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 제배사는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바, 이는 기존건축물과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 및 축사, 창고의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69, '93. 3. 5)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면적 200㎡”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합계, 즉, 동일대지안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동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지역외의 구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2층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가.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할 때 당해 건축물의 1층부분에서만 위의 규정에 의한 통로를 확보하면 되는지 아니면, 2층이상의 층에도 확보해야 되는지 여부.

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미금 김천수)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닥면적합계 50㎡”라 함은 건축허가때의 바닥면적과 설계변경되어 증감되는 면적과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진해 구삼덕)

▶ 질의

자동차학원 이전부지내 도시계획 도로의 일부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물의 건축없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부천 윤석홍)

▶ 질의

종전('92.5.30)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현재 시행되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회원 정영태)

▶ 질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농지전용 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2m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안양 권영방)

▶ 회신(건축 58070-746, '93. 3. 12)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너비 3m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당해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의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건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직접 접한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여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의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56, '93. 3. 4)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부분만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58, '93. 3. 4)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은 증축과 기존 건축물을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이 없고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지장이 없으며,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부천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648, '93. 3.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바, 위의 규정도 종전 건축법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2호의 규정은 개정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규정사항이 아니고 삭제된 규정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회신(건축 58070-1008, '93. 3. 3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확보를 하여야 하나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바,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정북방향으로 수평거리 2m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경지지역내에 교육연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인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를 띄어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구리 서경덕)

▶ 질의

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건축물이 건축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나, 건축물의 외부 및 실내 마감재료가 허가도서에 표기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주 임의로 완료하였을 경우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나.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층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질의자: 경남 창원 흥근수)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자주식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안양 함찬중)

▶ 질의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질의자: 대한건축사협회장)

▶ 질의

공중목욕탕을 '92.2.11 건축허가되어, 공정이 45%인 상태에서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등 용도로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발견한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질의자: 전라남도지사)

▶ 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도록 되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영할 경우 이러한 위법사항을 감리건축사가 위법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질의자: 건설부 건축행정과장)

▶ 질의

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일부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부분만 산정하는지 여부.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토지분할 이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발행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경기 평택 최용호)

▶ 회신(건축 58070-988, '93. 3. 30)

질의의 기숙사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60, '93. 3. 29)

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가능한 것이나,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검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03, '93. 3. 31)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방식과 관계없이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550-871, '93. 3. 22)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550-927, '93. 3. 27)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에 위반된 경우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건축의 허용여부를 정하는 법령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영업허가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기준에 위반된 때 건축허가의 취소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법한 용도로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12110-1002, '93. 3. 31)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예는 건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58070-621, '93. 3. 2)

질의의 대지면적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된 부분을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분할 하고 동 부분의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가. 1976년 신축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일반호텔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방법은?

나. 상기의 건축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여부는?(부산 부산진 김태봉)

▶ 질의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연장함으로 인하여 전체의 길이가 36m가 되어 그 소요너비가 6m이어야 하는 바, 동 도로의 길이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대전 중구 김송식)

▶ 질의

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적용하는 기준은?

나. 너비 3m의 막다른 도로에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지안의 회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양천 선순희)

▶ 질의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층공사중 공사시공자가 건축주의 도급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이에 응하고 관할 판서에 착공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주는 후임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아 채권자들에 의해 동 부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된 상태일 때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는(질의자: 서울 종로 정천일)

▶ 질의

질의의 그림과 같이 너비 2m, 길이 11m인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인의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사하 윤순호)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시설녹지와 이미 개설된 도로에 접하나 직접 면하는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사용을 위해 녹지의 일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건축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대구 달서 김윤동)

▶ 질의

질의의 그림과 같은 구조(V.U, -, -자 변형등)의 건축물이

▶ 회신(건축 58070-793, '93. 3.17)

가. 질의의 건축물이 관광숙박업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착오인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정등재가 가능할 것이니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90.8.8)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건축 58070-1000, '93. 3.31)

시장 등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질의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연장된 사유 및 경의 등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95, '93. 3.31)

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부설주차장의 진입도로의 너비에 관하여는 주차장 법령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주차장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차장 이용차량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주차구획만 갖추어도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토록하고 있고, 또한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78, '93. 3.30)

공사시공자는 토지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시공자는 착공포기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주가 후임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주(그 승계인 포함)에게 현장관리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58070-921, '93. 3.24)

길이 11m인 막다른 도로의 소요너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m이상이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달되는 질의와 같은 경우의 증축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사항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25)

시설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지상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시설녹지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설녹지상의 도로설치는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25)

탑상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2)의 규정에

중전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2)의 탑상형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강남 한남수)

▶ 질의

건축법령상 대지가 지적법령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는지 여부 및 자연녹지 지역안의 한 필지의 일부분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받아 건축하고자 할 때 동 형질변경 허가받은 부분만을 대지로 보아 이의 면적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부산 서구 강석진)

▶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주거를 허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성동 동선건축사사무소)

▶ 질의

10-20층의 기존건축물중 일부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강서 유재부)

▶ 질의

건축허가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정한 경우 사용검사신청시 이를 도로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부산 부산진 이상만)

▶ 질의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구 건축주의 인감증명 및 명의변경 동의서만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광주 서구 김연신)

▶ 질의

골프연습장은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 인천 북구 남원일)

▶ 질의

공유지분인 대지의 소유자 등이 나뉘대로 대지를 가 분할하여 신청인 소유의 대지 부분에는 부허가 건축물이 없고 다른 사람소유의 부분에 부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증·개축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건설부 녹지공원과장)

▶ 질의

1968년도에 장류제조업의 공장을 건축하여 영업중 1972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 바, 동 공장을 과자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성북 김대성)

의하여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 단변, 가장 긴 부분이 장변이 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25)

건축법령상 대지와 합은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적법에 의해 분할된 각 필지의 토지를 말하므로 지적법령에 의한 지목과 관계없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하나의 필지를 부분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받아 건축할 경우 동 토지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을 건축법령상의 대지면적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경면적등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23, '93. 3. 24)

질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대하여 그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신(건축 58070-920, '93. 3. 24)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는 현행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10, '93. 3. 24)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령에서는 이를 분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적법령 등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07, '93. 3. 24)

건축물의 명의 변경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908, '93. 3. 24)

동일 건축물안에서 질의의 골프연습장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4)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기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에 해당합니다.

▶ 회신(건축 58070-848, '93. 3. 19)

질의와 같은 대지의 경우 지적법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토지가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1014, '93. 3. 31)

공장의 업종변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의 과자제조업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용도변경가능여부도 검토될 사항입니다.

▶ 질의

다세대주택의 옥내주차장의 면적이 다세대주택의 규모를 결정하는 연면적 660㎡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관악 김기석)

▶ 질의

가. 길이가 22m 너비 3m인 현황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가능한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서울 강남 이홍옥)

▶ 질의

하나의 대지에 지상 10층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공사중 인접대지를 추가 매입하여 지상4층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 시공하였는 바, 이의 추인절차 등은?(질의자 : 대구 달서 김미숙)

▶ 질의

주유소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또는 위험물저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 서울 종로 이영호)

▶ 질의

도로면보다 1.4m 높은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가. 3면은 지하에 2분의 1이상이 묻히나 1면은 완전노출된 경우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는 부분이 층수 산정에도 제외되는지 여부(질의자 : 인천 서구 신태범)

▶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단독주택을 20호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받아 건축하고자 할 때,
가. 피로티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동 피로티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지 여부(질의자 : 광주 북구 정호림)

▶ 질의

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후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형질변경공사와 함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50평이상의 시공건설업자가 공사중 부도로 회사가 없어졌을 때 준공시 시공회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준공이 되는지 여부

▶ 회신(건축 58070-799, '93. 3. 17)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다세대주택의 옥내주차장의 구조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라면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므로 동 주차부분은 다세대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을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23)

가.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인 경우라면 동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의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부설주차장의 진입도로 너비에 관하여는 주차장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주차장 이용차량은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18)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무허가 증축행위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건축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새로운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절차 등은 일반증축의 허가절차와 같습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22)

질의의 주유소는 위험물제조소나 위험물저장소와 같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나 세분류상으로 주유소는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22)

가.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 것인 바, 이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81, '93. 3. 23)

가. 질의의 피로티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피로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나. 단독주택의 단위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건축허가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98, '93. 3. 17)

가. 토지의 형질변경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은 토지에서 하는 경우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준공에 대하여는 각각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나.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시에는 공사시공자의 날인을

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4층은 연면적이 660㎡ 미만으로서 다가구주택일 때 건축허가 가능여부(질의자: 부산 부산진 정성생)

▶ 질의

가. 신축건축물의 기초 철근배근의 중간검사 신청서 검사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 중간검사 신청을 반려시키면서 건물구조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는 바, 구조기술사가 아닌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확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나. 지상 8층의 건축물중 6-8층을 5기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부산 부산진 정성생)

▶ 질의

도시설계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3필지의 토지에 걸쳐 공동개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공동개발코자 할 때 인접대지 및 당해 대지(3필지에 걸쳐 공동개발하는 토지)의 전면도로가 너비 20m의 전면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조권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서울 마포 김원배)

▶ 질의

가. 강북 일반주거지역내에 4층 규모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때 인접 주민들과의 사전 조정회의를 하여야 한는데 그 법적인 근거와 또한 하여야 한다면 조정회의시 참석하여야 하는 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나. 일반주거지역내에 4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4층에 4세대 규모의 주택으로 할 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층이상에 있는 주택부분 외벽까지 뛰어야 하는 거리와 건물용도상 전체 연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택보다 더 클 때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질의자: 서울 강남 가우건축)

▶ 질의

가. 옥상부분 계단실과 승강기 기계실 옆에 조그마한 창고의 바닥면적이 1/8 이하이고 높이 12m 이하일 경우 층수 및 높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합계가 1,000㎡인 대지에 A동 82㎡, B동 80㎡, 연면적 162.0㎡ 주택으로서 동당 85㎡ 미만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옥상바닥에서 12m 이하인 옥상 콘크리트 물탱크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질의자: 부산 부산진 김훈진)

▶ 질의

브라질에 거주하는 교민인 외국인이 국내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락받아 건축물의 건축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광주 북구 권홍구)

외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 다가구주택은 당해건축물의 규모가 660㎡ 이하이고 3층(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층)이하인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회신(건축 58070- , '93. 3. 18)

가. 질의와 같은 당해건축허가권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람,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로서 3층(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층)이하인 규모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64, '93. 3. 15)

질의와 같이 3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대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동법시행령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외적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768, '93. 3. 15)

가. 질의의 조정회의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으며, 그리하시기 바람,

나.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용도가 각각 주용도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로 판단됩니다.

▶ 회신(건축 58070-801, '93. 3. 17)

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질의의 경우 승강기탑과 계단탑은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나 창고는 바닥면적에 산입되고, 높이 및 층수에는 모두 산입되는 것이며,

나. 질의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와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후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다. 질의의 옥상 콘크리트 물탱크는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건축 58070-808, '93. 3. 17)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건축허가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서의 제한 규정이 있다면 동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2994호

1993. 4. 10

■ 주요골자

○용도지역안의 건축기준완화

- 일반주거지역 : 소규모 업무시설, 판매시설 허용
 - 업무시설 : 너비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3천 제곱미터이하의 건축허용.
 - 판매시설 :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는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허용.
- 준 공업지역 : 공장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거용 건축은 허용하되, 숙박시설 건축은 금지함.
- 자연녹지지역 : 농·축·수산물물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건축을 허용.

○일조권 규정의 단순화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피어야 하는 거리를 1층에서는 1미터, 2층에서는 2미터, 3층이상에서는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단순화함.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 기준의 완화

-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면 건축가능하고,
 - 2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을 접한 경우에 건축허용.

○기준미달대지의 건축기준완화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내의 건축기준완화
 - 대지안의 공지 : 종전에는 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 0.5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벽개발을 허용함.
 - 점도폭의 완화 : 대지는 도로에 2미터이상을 접하여야 건축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5미터이상만 접하여도 건축가능함.

○공개공지의 확보

- 도심지에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 판매·업무·관광숙박·종교·관광점회·전시·위락·운동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 벤취·파고라·미술 장식품·분수 등의 시설을 하도록 함.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 토지이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을 다소 완화하며,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북의 건폐율·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 도심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4대문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일부 차등적용함.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계축의 범위는 종전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물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하는 범위까지로 한다.

1.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가.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나.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배수=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당해 대지면적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4. 대지안의 공지 :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이상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14일이상 공람을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설치]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5.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심의
6. 11층이상이거나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경관심의
7. 기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신청대상 건축물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목이 "대"인 토지인 경우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은 당해건축물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천제곱미터미만	6미터이상	6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8미터이상	8미터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10미터이상	10미터이상

제5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
2.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민학교
4.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5.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제17조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너비 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8.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너비 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9. 공장(너비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립현상·자동차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제조업 및 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
10.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에 한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저장탱크용량 20톤이하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13.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14.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5. 방송·통신시설
16. 군사시설
17.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제18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5.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6.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7.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8. 공장(도시형공장중 제재업·연탄제조업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500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총포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2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식물관련시설
1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군사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청소년시설

제19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3. 기숙사
4. 노유자시설
5.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운동시설
7.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9. 운수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제20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공장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준도축장의 중·개축에 한한다)
11.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2. 군사시설
13. 관광휴게시설
14. 청소년시설

제21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10.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경

우에는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11. 공장(도시형공장중 제재업·연탄제조업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충포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2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6.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17.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8. 방송·통신시설
19. 군사시설
20. 청소년시설

제22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1. 군사시설
12. 청소년시설
13. 방송·통신시설

제23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관람집회시설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10. 전시시설
1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설 및 이전에 한한다)
12. 운수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군사시설
15. 청소년시설
16. 동물관련시설
17. 의료시설
18. 묘지관련시설
19. 장례식장

제24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5.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 이하인 동·식물원에 한한다)
7.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 이하인 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9. 묘지관련시설
10. 장례식장
11.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12. 의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8.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에 한한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
10. 창고시설(농·축·수산물 보관창고에 한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

소를 제외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6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6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8.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
9.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10.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11.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1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② 강북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33이하로 한다.

제2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제1종 : 200퍼센트
제2종 : 300%
제3종 : 400%
3. 준주거지역 : 6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단, 4대문내 : 8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단, 4대문내 : 8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단, 4대문내 : 7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천퍼센트 (단, 4대문내 : 800퍼센트)
8.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9.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0.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11.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12.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300퍼센트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지구정비지구·도시설계지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율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1천2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1천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00퍼센트이하로 한다.

④ 강북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6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29조 [높이제한 완화기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2. 대지둘레의 2분의 1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 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제3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4미터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나.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8미터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 3층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되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 중심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이하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

3. 영 제86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슈트·계단 및 굴뚝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너비가 측벽 너비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4. 영 제86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측단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측벽너비이하 만큼 겹치는 위치에 인접하여 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당해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이 겹치는 수평거리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상인 경우

(2)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 (3)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면적 0.2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인 경우
- (4)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 (5)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면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 (6)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다.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면벽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5. 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20미터이상으로 한다.

제7장 도시설계등

제31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 법 제62조의 규정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용도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판매·업무·관광숙박·종교·관람집회·전시·위락·운동·운수시설 및 장례식장
2. 공개공지면적 :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용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 : $[1 + (\text{공개공지면적} \div \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기준건폐율 또는 용적율}$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1 + (\text{공개공지면적} \div \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높이제한기준}$

제8장 보칙

제33조 [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수도권경비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2호가목의 규정중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1993.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법 개정('91.5.31, 법률 제4381호)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자치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주택국관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에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현행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현행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시설계의 용어정의(제31조 관련)

1. “도시설계구역”이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6.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7.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 "1층 전면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9. "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 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10.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1. "공동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2. "차량출입금지구간"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4.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 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21. "공동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

- 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원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거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23. "공동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를

-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4. "합벽건축"이라 함은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을 연결하여 각각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도시설계의 규제도 표시기호(제31조 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시설계지구	(굵은 이점쇄선)
가구 또는 브릭경계	(굵은 일점쇄선)
대지경계선	(가는 실선)
대지분할 가능선	(가는 점선)
건축물 층수제한	최고 최저
건축물 용도제한	UI
대지면적제한	A1
건축물 형태제한	(가는 일점쇄선)
건축한계선	(가는 이점쇄선)
건축지정선	(가는 이점쇄선)
벽면선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 ○ ○
보행자 우선도로	○ ● ○ ● ○ ● ○ ● ○ ●
공동주차통로	/ / / / / / / / / /
공동주차장	공 동 주 차 장
공공공지	
공동건축	○ — ○ — ○ — ○ — ○ — ○ —
합벽건축	○ — ○ — ○ — ○ — ○ — ○ —
차량출입금지 구간	(가는 실선)
특별설계구역	□ □ □ □ □ □ □ □ □ □

首都圈整備計画法 施行令中 改正令

대통령령 제13,813호

1992. 12. 31.

◇개정이유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내 변두리지역에서의 공장설치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권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축산비료공장 및 축축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당해 권역안의 기존공장은 참고 및 사무실을 연면적 500제곱미터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호 및 별표).

나.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안에서는 교육정책상 필요하여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의2제4호 및 제18조의2제5호).

다. 개발유보권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은 6만제곱미터까지 허용하던 것을 1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18조의2제1호).

라. 수도권에서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조성·공유수면매립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령 제20조제2호).

마.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에 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5종의 첨단산업 업종을 추가함(령 별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식당·휴게실·목욕실 등 종업원의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 위한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외의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6호·제9항제5호 또는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6)·제9호나목 또는 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13항 또는 제14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1) 내지(3), 동호나목(1) 및 (2), 제13호(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가목중 “또는 보건위생”을

“정보처리(서비스분야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보건위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본문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과 기존공장으로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내에서의 참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단서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장”으로 하여 동호를 동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도계장·간이도계장 및 도토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용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도축용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

3.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3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과 기존공장으로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내에서의 참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하고, 동호나목중 “자연보전권역안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을 “자연보전권역안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및 동 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증설”로 하며, 동호나목중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철강보강 제품제조업 공장”을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공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동호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 시설로서 도축용 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

바.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중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

의 공장"을 "제1호가목·다목·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장"으로 하고, "신설·증설되는 공장"을 "신설·증설된 공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동항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및 운동시설(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에 한한다)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17조제2의3호중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공장"을 "콘크리트조립 구조제 및 기타 도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공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대학의 신설과 동 학교시설의 신축 등의 경우
6.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제18조 본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 전단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 및 기존공장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이내에서의 창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한다.

제18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동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가목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1호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 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시설로서 도축용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

- 라.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8조의2제1호중 "6만제곱미터이하"를 "15만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5호를 동조제7호로 하며, 동조제4호를 동조제5호로 하되, 동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별표〕

자연보전권역등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 관련)

개발유도권역·개발유보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 곡물도정업 · 곡물제분업 ·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 빵 제조업 · 떡 제조업 · 얼음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일반 제제업 ·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종이라벨 제조업 ·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레미콘 제조업 ·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 착색가공석재 생산업 · 왕겨탄 제조업 · 과일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천연조미제품 제조업(농민·생산자 단체의사업에 한함) · 장류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 · 식물성유지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 ·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	· 곡물도정업 · 곡물제분업 ·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 빵 제조업 · 떡 제조업 · 얼음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탁주 및 약주제조업 · 일반 제제업 ·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종이라벨 제조업 ·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레미콘 제조업 ·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 착색가공석재 생산업 · 왕겨탄 제조업 · 과일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천연조미제품 제조업(농민·생산자 단체의사업에 한함) · 장류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 ·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 · 컴퓨터 제조업 ·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의 제조업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 ·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전자 집적회로제조업 · 축전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 변성기 제조업

개발유도권역·개발유보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촬영기 및 영상기용 대물렌즈 제조업을 포함함) · 복사기 제조업 · 전자기측정·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판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제조업 ·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청사의 신축 등의 경우
5.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대학의 신설과 동학교시설의 신축 등의 경우

6. 제17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4중“당해 연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2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택지 조성·공유수면매립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중“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부터”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 1천83만2천7백37㎡ 보다 15.70%(1백70만2백38㎡)
증가한 1천2백53만2천9백75㎡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2월 누계 1천6백77만8천6백39㎡보다 3.26%(54만7천1백14

㎡)증가한 1천7백32만5천7백53㎡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월분 4백79만2천7백78㎡보다 161.50%(7백74만1백97㎡)
증가한 1천2백53만2천9백75㎡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358,571	3,020,356	1,661,785	122.32%
	부산	565,549	883,781	318,232	56.27%
	대구	401,816	1,244,570	842,754	209.74%
	인천	336,452	503,492	167,040	49.65%
	광주	176,401	550,266	373,865	211.94%
	강원	324,429	354,495	30,066	9.27%
	충북	347,679	691,746	344,067	98.96%
	충남	248,169	419,197	171,028	68.92%
	전북	187,513	213,910	26,397	14.08%
감소지역	제주	40,683	90,241	49,558	121.82%
	대전	1,121,531	379,556	(741,975)	-66.16%
	경기	3,409,709	2,558,516	(851,193)	-24.96%
	전남	306,459	268,949	(37,510)	-12.24%
	경북	817,213	546,045	(271,168)	-33.18%
	경남	1,190,563	807,855	(382,708)	-32.15%
합 계	10,832,737	12,532,975	1,700,238	15.70%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1월분	2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534,386	1,476,219	941,833	176.25%
다 세 대 주 택	274,207	733,971	459,764	167.67%
연 립 주 택	38,848	75,381	36,533	94.04%
아 파 트	1,536,935	5,199,942	3,663,007	238.33%
근린생활시설	864,399	1,806,256	941,857	108.96%
중 고 시 설	52,807	188,129	135,322	256.26%
의 료 시 설	31,455	33,851	2,396	7.62%
교육연구시설	120,905	283,587	162,682	134.55%
업 무 시 설	271,799	659,780	387,981	142.75%
숙 박 시 설	90,006	161,806	71,800	79.77%
공 장	486,201	915,676	429,475	88.33%
기 타	490,830	998,377	507,547	103.41%
합 계	4,792,778	12,532,975	7,740,197	161.50%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2月分)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574	1,711	1,358,571	4,569	4,790	3,020,356	2,995	3,079	1,661,785	122%	
부산	994	1,185	565,549	895	1,708	883,781	(99)	523	318,232	56%	
대구	660	716	401,816	1,447	1,664	1,244,570	787	948	842,754	210%	
인천	353	401	336,452	787	800	503,492	434	399	167,040	50%	
광주	306	335	176,401	496	566	550,266	190	231	373,865	212%	
대전	360	558	1,121,531	343	400	379,556	(17)	(158)	(741,975)	-66%	
경기	1,392	2,213	3,409,709	2,457	2,825	2,558,516	1,065	612	(851,193)	-25%	
강원	445	525	324,429	518	605	354,495	73	80	30,066	9%	
충북	547	700	347,679	671	879	691,746	124	179	344,067	99%	
충남	408	472	248,169	430	448	419,197	22	(24)	171,028	69%	
전북	291	340	187,513	297	383	213,910	6	43	26,397	14%	
전남	436	586	306,459	453	566	268,949	17	(20)	(37,510)	-12%	
경북	675	853	817,213	692	977	546,045	17	124	(271,168)	-33%	
경남	1,053	1,382	1,190,563	932	1,168	807,855	(121)	(214)	(382,708)	-32%	
제주	213	236	40,683	127	182	90,241	(86)	(54)	49,558	122%	
합 계	9,707	12,213	10,832,737	15,114	17,961	12,532,975	5,407	5,748	1,700,238	16%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2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2,314	2,538	1,812,499	6,445	6,705	3,917,150	4,131	4,167	2,104,651	116%	
부 산	2,148	2,895	1,507,410	1,454	2,457	1,276,992	(694)	(438)	(230,418)	-15%	
대 구	993	1,093	656,397	2,045	2,304	1,476,075	1,052	1,211	819,678	125%	
인 천	601	719	578,909	1,049	1,075	653,678	448	356	74,769	13%	
광 주	482	534	229,199	652	784	901,784	170	250	672,585	293%	
대 전	527	734	1,315,296	551	627	585,451	24	(107)	(729,845)	-55%	
경 기	2,476	3,660	4,681,374	3,621	4,123	3,377,644	1,145	463	(1,303,730)	-28%	
강 원	706	869	498,068	733	837	427,723	27	(32)	(70,345)	-14%	
충 북	1,025	1,248	489,007	1,049	1,351	943,435	24	103	454,428	93%	
충 남	751	846	510,444	753	776	833,402	2	(70)	322,958	63%	
전 북	454	530	302,528	382	503	355,626	(72)	(27)	53,098	18%	
전 남	910	1,166	557,407	700	865	389,575	(210)	(301)	(167,832)	-30%	
경 북	1,119	1,412	1,252,221	1,009	1,409	788,876	(110)	(3)	(463,345)	-37%	
경 남	1,776	2,473	2,219,362	1,469	1,854	1,285,484	(307)	(619)	(933,878)	-42%	
제 주	316	375	168,518	169	225	112,858	(147)	(150)	(55,660)	-33%	
합 계	16,598	21,092	16,778,639	22,081	25,895	17,325,753	5,483	4,803	547,114	3%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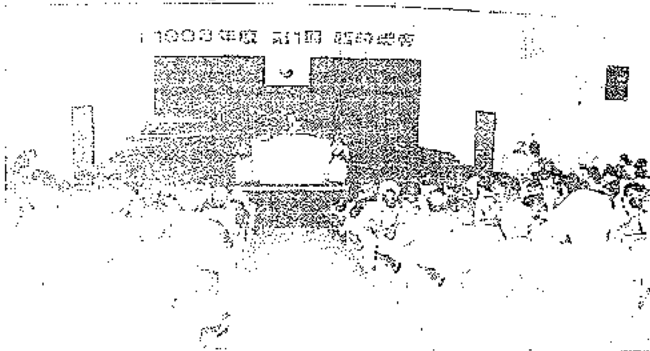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2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898	4,060	548,187	6,823	7,072	1,476,219	2,925	3,012	928,032	169%	
다 세 대 주 택	273	310	124,556	1,538	1,630	733,971	1,265	1,320	609,415	489%	
연 립 주 택	49	66	68,722	58	61	75,381	9	(5)	6,659	10%	
아 파 트	172	1,449	6,552,303	197	1,115	5,199,942	25	(334)	(1,352,361)	-21%	
근린생활시설	3,413	3,581	1,365,042	4,203	4,797	1,806,256	790	1,216	441,214	32%	
종 교 시 설	80	96	40,602	132	162	188,129	52	66	147,527	363%	
의 료 시 설	5	6	2,837	18	20	33,851	13	14	31,014	1093%	
교육연구시설	85	111	159,100	82	143	283,587	(3)	32	124,487	78%	
업 무 시 설	182	196	492,047	129	141	659,780	(53)	(55)	167,733	34%	
숙 박 시 설	39	42	62,376	154	154	161,806	115	112	99,430	159%	
공 장	493	925	674,555	638	1,133	915,676	145	208	241,121	36%	
기 타	1,018	1,371	742,410	1,142	1,533	998,377	124	162	255,967	34%	
합 계	9,707	12,213	10,832,737	15,114	17,961	12,532,975	5,407	5,748	1,700,238	16%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2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6,215	6,951	1,022,655	9,639	9,946	2,010,605	3,424	2,995	987,950	97%	
다 세 대 주 택	558	654	251,906	2,117	2,259	1,008,178	1,559	1,605	756,272	300%	
연 립 주 택	90	153	238,533	93	101	114,229	3	(52)	(124,304)	-52%	
아 파 트	316	2,098	9,081,096	272	1,518	6,736,877	(44)	(580)	(2,344,219)	-26%	
근린생활시설	5,828	6,116	2,244,734	6,339	6,978	2,670,655	511	862	425,921	19%	
종 교 시 설	156	189	78,161	191	243	240,936	35	54	162,775	208%	
의 료 시 설	19	24	51,556	30	32	65,306	11	8	13,750	27%	
교육연구시설	191	228	367,231	140	212	404,492	(51)	(16)	37,261	10%	
업 무 시 설	271	297	721,006	205	228	931,579	(66)	(69)	210,573	29%	
숙 박 시 설	70	75	117,088	225	227	251,812	155	152	134,724	115%	
공 장	994	1,754	1,324,099	1,025	1,779	1,401,877	31	25	77,778	6%	
기 타	1,890	2,553	1,280,574	1,805	2,372	1,489,207	(85)	(181)	208,633	16%	
합 계	16,598	21,092	16,778,639	22,081	25,895	17,325,753	5,483	4,803	547,114	3%	()=마이너스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 개최



임시총회 속개회의 광경

지난 3월 17일 '93전국 건축사 대회를 앞두고 개최되었던 본 협회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현재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시안에 대다수 회원의 의견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건설부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속개회의를 개최한다는 조건부로 휴회된 바, 지난 4월 9일(금) 오후 2시 총 대의원 422명중 38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 대강당에서 속개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날 이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번 임시총회와 '93전국 건축사대회가 건축사법 개정문제로 인한 진통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모두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란이 조장된다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냉정한 이성으로 사법 개정문제를 처리해 가자」고 강조하고, 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의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회순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보고를 한 다음, 부의안전처리에 앞서 사법개정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이사진이 일괄 사퇴하고, 이영희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거론, 상정되어 총 대의원수 422명중 280명이 투

표에 참가 선임 108표, 불신임 171표, 무효 1표로서 불신임 결의하고, 이규복 전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추대, 부의안전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뒤 자문위원과 각시·도건축사회장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에서 이영희 회장 후임으로 본 협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오웅석((주)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을 추천, 대의원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되었다.

신임 오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전회원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 집행부 이사진 구성은 신임회장에 일임하기로 하고, 만세삼창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처리된 부의안전은 다음과 같다.

- 제1회의 안 : 1992회계년도 일반 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회의 안 : 1992회계년도 특별 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회의 안 : 1992회계년도 건축 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4회의 안 : 1992회계년도 건축 사업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5회의 안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제6회의 안 : 1993회계년도 일반

- 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일부수정통과)
- 제7회의 안 : 1993회계년도 특별 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회의 안 : 1994회계년도 실적

- 회비 전국징수를 결정의 건 (0.5%로 승인통과)
- 제9회의 안 : 임원선출의 건(회장 : 오웅석, 감사 : 유임(강우식, 김춘배), 이사 : 회장에게 일임)

현장조사 및 감사업무 확대 시행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15일(목) 본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4층이하 2천㎡이하까지 확대되는 조사·감사업무의 시행절차에 대한 협의 결과, 현행 건축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된 건축사대행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본회회원이 조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는 조사·감사업무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에서 30%(상한선 1백5십만원)를 조사·감사업무 대행 수수료로 지급키로 협의했다.

이날 협의된 시행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감리비 수납 및 시행방법
 - 1. 감리비 수납 22개분회(강구일원화)
 - 2. 조사 감사자
 - 가. 건축허가전 : 설계자
 - 나. 건축허가후 : 건축물 발생지역 회원
 - 3. 감리비 수납장구 : 건축물 발생지역의 분회
 - 4. 감리비 수납시기
 - 가. 착공신고 접수시 : 30%

- 나. 중간감사(단열재)신청시 : 50%
- 나. 준공(사용)감사 신청시 : 20%
- 5. 감리비 수납확인 : 착공 및 중간감사 사용감사 신청사 건축물 발생지역의 분회 경유
- 6. 감리자에게 감리비 지급시기 : 매달 5일과 20일로 2회 감리자 개인에게 송금
- 7. 조사·감사 확인업무자의 보수 및 지불방법
 - 가. 보수 : 조정 감리비의 30%로 하되, 최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지불방법 : 분회에서 해당업무 담당건축사에 게 지급
- 시행시기 : 9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며, 93년 4월 2일 이후 허가분까지 소급적용
- 지도감독 : 본회의 회원업무 지도위원회를 임원으로 구성하여 동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지도 및 감독
- 기 타 : 현장 조사·감사 및 확인업무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함(건축사보 불가)



서울건축사회 간사회

표준소득률 조정

본협회는 건축사 표준소득률 표상의 업종분류가 타공학분야와 분리되어 있으며, 표준소득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개선을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분위기가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난 3월에 있는 국세청 표준소득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10~30%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건축사 표준소득률은 과거 27~37.2%로 차등적용되던 것이 수입금액이 관계없이 29.7%의 단일률로 적용되게 되어 다수회원은 상대적으로 인화효과를 보게되었으며, 업종분류 역시 타공학분야와의 통합이 이루어져 향후 표준소득률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정된 표준소득률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석철 베니스 건축전 개최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김석철((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회원이 지난 2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동 대학 트론궁에서 '서울, 건축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건축인으로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대대적인 관심과 호응속에서 우리의 건축을 세계무대에 당당히 펼쳐 보여 한국건축의 위상을 정립하

는 계기 마련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석철씨는 오는 6월14일부터 7월24일(현지시간)까지 크로아티아 공화국 자그레브 시 중앙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와 연합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경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때 이번 베니스 건축전에 발표된 것을 보완, 전시할 계획으로 있다.

건축학회 특별강연회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3월18일(목) 오후 3시 학회 회의실에서 일본 건축학회 부회장 오지마 토시오(尾島俊雄, 와세다 대학 교수)씨를 초청, '도시의 새로운 규범'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오지마 교수는 점점 고층화되어가는 도시의 규모와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시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인류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21세기 도시 미래상에 대해 고층화와 지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도시건축연구원 첫 정기포럼 종합토론회 개최

범건축계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도시건축 연구원의 첫 정기포럼 종합토론회가 지난 3월 13일(토)오후 3시부터 서울대 호암 생활관 새마나룸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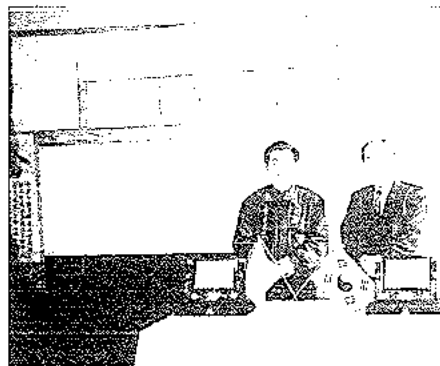
이 정기포럼은 「건축사 제도 개선」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난 1월 13일부터 2월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건축사의 업무, 사무소 제도의 개선, 면허 및 시험제도, 건축사협회의 기능의 소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사무소 제도와 건축사협회의 기능 증대공제조합의 설치 여부에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도시건축연구원의 이번 첫 정기포럼은 시의성의 적절함과 참석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상설연구단체로서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포럼은 개방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어질 포럼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차포럼(4~6월 예정) : 건축행정제도개선
- 3차포럼(7~9월 예정) : 건축물 설계발주제도
- 4차포럼(10~12월 예정) : 도시설계와 상생 계획

윤봉원회원 중국 연길시 고문에 추대



윤봉원 회원
자매결연식

(주)우성건축사사무소(대표 윤봉원)는 지난 2월 중국 길림성 연변 건축설계 연구원(원장 尹泳煥)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한·중 건축기술교류 차원에서 맺어진 이 행사에서 쌍방은 앞으로 상호 건축관련 기술자 파견 연수와 기술교류 협약을 조인했다.

그리고 10일에는 연길시에서 윤봉원 회원을 연길시 건축·도

시계획 고문으로 위촉하여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상호 교류 발전이 구축되어 양국 건축교류가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우성건축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관련 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자문과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다.

※문의 : 454-4678

「한국의 주거문화」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광경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최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 분당 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9일(금)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국토개발연구원 안전혁박사의 사회로 서예관 4층 강당에서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자의 주제설명과 발표자 및 토론자의 소개에 이어, 김 원소장(광장건축), 강홍빈박사(서울시 시정연구관), 김광현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다음,

이필원 건설부 건축기획관의 4명의 토론자와 참석자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주거문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건축과 주택에 관련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번 전람회가 비록 미흡한 출발이지만 건축계의 공유된 목소리로 주택설계에 많은 건축인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실성이 결여되고 건축적 문제인식이 미약한 우리 주거문화의 실재를 반성해 보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

CARY Show 개최

1992년에 시카고에서 3명의 젊은 여성건축사(Carol Crandall, Kay Janis & Sally Levine)들이 주축이 되어 그룹 CARY (Chicks in Architecture Refuse to Yield : 양보를 싫어하는 여성건축가)가 구성되었다.

유일한 여성건축가들의 건축 전시회인 CARY Show는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1993년도 UIA 세계대회와 총회 그리고 AIA 연례총회를 계기로 마련되어, 오는 6월16일부터 7월2일까지 시카고 Randolph St.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모든 전문사회 특히 건축사회에 버쳐지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건축적인 표현 방법 즉 3차원에 의한 표현방법으로 전시회를 갖게되었다.

주축이 되고 있는 3명의 여성 건축가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시카고 미술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관심있는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UIA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에 오는 많은 분들의 관람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관광민속관 건립 설계현상공모

제주시 신산공원에 제주관광민속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설계(안)을 현상공모한다.

- ◆범 위 : 제주관광민속관 기본설계
- ◆응모자격 : 건축시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 ◆작품제출 : 1993년 5월 31일 한

◆제출장소 :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전화 : 064-50-7583)

◆당선작발표 : 93년 7월1일(개별통보)

◆당선작에 대한 특전 : 당선작(1작품)출품 건축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수의 계약

건축가협회 4월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지난해 중국 태해화원 국제지명 설계에 당선된 류춘수(이공건축)회원이 「868 Tower 중국 태해화원 국제지명

설계경기당선안」을 가지고 4월 23일(금) 오후 3시 동송동 소재 홍사단 강당에서 슬라이드쇼와 강연을 겸한 4월 금요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조경상 제정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시 조경상」을 제정, 시행한다. 최근 도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대규모 건축물을 비롯한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공원식 조경이 늘어남에 따라, 시내에 조성된 우수한 조경을 발굴,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에게 이 상을 시상함으로써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

토록 유도하는데 그 제정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상은 아파트 조경과 일반건축물 주변 조경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금상 1작품, 은상 2작품, 동상 3작품 그리고 장려상 1작품을 선정·시상하며, 올해는 8월경 작품공모에 이어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처 : 서울시 조경과(전화 : 750-8601~4)

경기대 건축 특별 강연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93년도 1학기에 수원 및 서울 캠퍼스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

한다.

강의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 사	제 목	수원 캠퍼스	서울 캠퍼스
김진에	도시, 건축, 탐구	5월 7일(금)오후5:30	5월12일(수)오후4:30
김종규	Projects & Theory	5월21일(금)오후5:30	5월26일(수)오후4:30